
2025년 경기아트센터 CP등급평가 실적보고서

2025. 3.

자율준수관리자	박민제
---------	-----

재단법인 경기아트센터

목 차

I 회사의 개요[일반현황]	1
II 실적보고서	5
C1. CP의 도입 및 운영방침의 수립	6
C1.1 최고경영자의 CP도입 및 자율준수 실천의지의 천명	6
C1.2 CP 운영의 기준과 절차의 수립	17
C1.3 CP운영에 관한 사항의 회사 내·외부 공시·공표	26
C2. 최고경영진의 지원	32
C2.1 자율준수관리자의 임명	32
C2.2 예산과 인력의 지원	37
D1. 자율준수편람	43
D1.1 내용의 충실성	43
D1.2 활용 편의성	51
D1.3 지속적 개선 여부	54
D2. 교육훈련프로그램	57
D2.1 정기 CP 교육	57
D2.2 범위반 가능성이 큰 부서나 관련자에 대한 집중교육	66
D2.3 최고경영자 및 임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	70
D2.4 CP교육·훈련의 효과성평가	73
O1. 사전감시체계	77
O1.1 위험평가(Risk Assessment)	77
O1.2 사전업무 협의제도	83
O1.3 직접보고체계	90
O1.4 내부고발시스템	92
O2. 제재 및 인센티브 시스템	100
O2.1 인사제재 시스템	100
O2.2 인센티브 시스템	103
E1. 프로그램 효과성평가와 개선	106
E1.1 CP운영의 효과성평가(정기 감사)	106
E1.2 프로그램의 지속적 개선 및 경영에의 반영	113
III 가점사항	119

I

회사의 개요
[일반현황]

I 회사의 개요[일반현황]

01 기업현황

- 경기아트센터는 「경기도 경기아트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제1조에 따라 문화예술의 진흥, 도민의 문화욕구 충족, 문화예술 공간 운영, 경기도예술단 운영 등을 위한 사업 수행의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입니다.
- 아울러, 경기아트센터는 “경기도민의 문화예술 기회를 확대하고, 경기도의 문화예술 진흥에 공헌” 하는 미션과 “경기도의 품격과 변화를 선도하는 문화예술의 중심, 경기아트센터” 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ESG경영을 실현하기 위해 문화예술로 만들어가는 ‘N-EXT’ GGAC’ 로의 성장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환 경(E)	사 회(S)	지배구조(G)
환경을 지키는 GGAC	경기 문화예술 정체성 확보 및 강화	함께 참여하는 GGAC

○ 주요현황

구 분	내 용
기 업 명	재단법인 경기아트센터
기업구분	공공기관
설립일자	2004. 6. 1.
대 표 자	김 상 회
주요사업	「경기도 경기아트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제3조 ① 도가 설립한 문화예술시설의 운영 ② 경기도예술단 운영 ③ 공연 및 작품전시 활동과 보급 ④ 문화예술의 국내·외 교류사업 ⑤ 제1조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⑥ 그 밖에 도지사, 시장·군수가 위탁하는 사업
본사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307번길 20, 경기아트센터
홈페이지	www.ggac.or.kr

02 주요연혁

연 도	내 용	비 고
1990. 07.	경기도립극단 창단	-
1991. 06.	경기도문화예술회관 개관	-
1993. 05.	경기도립무용단 창단	-
1996. 08.	경기도립국악단 창단	-
1997. 07.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 창단	-
2004. 04.	재단법인 경기도문화의전당 설립 등기	-
2004. 06.	재단법인 경기도문화의전당 출범	-
2004. 07.	경기도국악당 개관	-
2009. 11.	경기도립예술단 경기도문화의전당(법인) 소속화	-
2020. 03.	재단법인 경기아트센터 기관 명칭 및 CI 변경 경기도예술단 명칭 및 CI 변경	-

03 주요사업

- 경기아트센터는 기획공연사업, 예술단공연사업, 대관사업, 문화예술교육사업, 문화예술향유사업 등을 운영하며 경기도민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기회를 제공하고 경기도 문화예술 진흥에 공헌하고 있습니다.

○ 영업현황

(단위: 천원)

구 분	2024년 (당기)	2023년 (전기)
계	49,157,837	47,915,795
본부사업수익	2,467,371	2,126,350
예술단사업수익	1,197,014	1,496,684
출연금수익	39,810,441	40,149,053
기부금수익	83,011	40,000
보조금수익	5,600,000	4,103,708

○ 재무정보

- 재무상태표

(단위: 천원)

구 분	2024년 (당기)	2023년 (전기)
자 산	19,635,412	18,923,578
부 채	8,509,259	7,516,128
순 자 산	11,126,153	11,407,450

- 운영성과표

(단위: 천원)

구 분	2024년 (당기)	2023년 (전기)
사업수익	49,157,837	47,915,795
사업비용	49,774,855	47,700,889
사업이익	(617,018)	214,906

04 조직 및 인원현황

○ 조직현황: 1처 2실 3본부 13팀 4예술단 (2024. 12. 31. 기준)

○ 인원현황

(단위: 명, 2024. 12. 31. 기준)

구분	계	사장	본부	공무직	극단		무용단		시나위		경기필	
					감독	단원	감독	단원	감독	단원	감독	단원
정원	443	1	98	58	1	32	1	59	1	79	1	112
현원	410	1	94	57	1	24	1	55	1	71	1	104

○ CP 전담현황

(2024. 12. 31. 기준)

구 분	소속	직위	성명	임명(담당)일
자율준수관리자	경영기획실	실장	박민제	2024. 12. 30.
주관부서 총괄	재무회계팀	팀장	이O왕	2023. 11. 14.
주관부서 담당자	재무회계팀	주임	문O한	2023. 11. 14.

II

실적보고서

II

C1. CP의 도입 및 운영방침의 수립

평가 지표	C1.1 최고경영자의 CP 도입 및 자율준수 실천의지의 천명	항목별 국지가중치	0.135
		지표별 국지가중치	0.674
세부 측정 지표	C1.1.1 최고경영자가 CP행동강령, CP 방침선언, CP 도입 선포식, 또는 이와 유사한 취지의 내용을 활용하여 확고한 CP 실천의지를 공개적으로 표명하였는가? C1.1.2 최고경영자가 조직의 CP 운영현황 및 성과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예: 분기, 반기] 검토하였으며, 조직의 CP 실천의지를 CP 관련 사업목표(예: 핵심성과지표(Key Performance Index))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시하였는가? C1.1.3 최고경영자가 조직의 CP 문화 촉진을 위한 활동(예: 캠페인, 행사, 선포식, 표창 등)에 직접 참여하였는가?		
지표 관리 목표	C1.1.1 최고경영자의 CP 실천의지를 다양한 방식을 활용하여 대내외 공개적으로 표명한다. C1.1.2 최고경영자 CP 운영현황 및 성과에 대하여 정기적(반기 1회)으로 검토하고 CP 실천의지를 CP 관련 사업목표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시한다. C1.1.3 최고경영자가 CP 문화 촉진을 위한 활동에 연 3회 이상 직접 참여한다.		
주요 실적	24.01.19	2023년 공정거래 CP 운영결과 사장 보고	
	24.09.30	청렴윤리경영 기관장 CP 선포식 개최	
	24.10.22	2024년 공정거래 CP 운영계획 사장 보고	
	24.12.03	2024년 기관장 자율준수 선언식 개최	
	24.12.03	2024년 CP 관리자 특별교육 시행 [사장 참석]	
	24.12.11	조직성과평가(KPI) 연계 “청렴 마일리지” 제도 신설	
	24.12.27	홈페이지 “공정거래” 메뉴 신설 및 공시	
	24.12.30	CP 도입에 기여한 담당자 적극행정 사장 표창 수여	

평가
지표

C1.1 최고경영자의 CP도입 및 자율준수 실천의지의 천명

세부
측정
지표

C1.1.1 최고경영자가 CP행동강령, CP 방침선언, CP 도입 선포식, 또는 이와 유사한 취지의 내용을 활용하여 확고한 CP 실천의지를 공개적으로 표명하였는가?

01 2024년 기관장 자율준수 선언식 개최

- 경기아트센터는 불공정행위를 사전에 관리하고 협력사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2024. 12. 3.(화) 경기아트센터 사장 및 부서장 이상이 참석한 자리에서 기관장 선언식을 개최하였습니다.
- 아울러, 경기아트센터는 협력사에 공정거래의 기회를 부여하고, 상호존중 문화를 바탕으로 협력사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임직원 모두는 공정거래 자율준수를 선언하여 경기도를 대표하는 공연예술 기관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4년 기관장 공정거래 자율준수 선언식]

2024년 경기아트센터 공정거래 자율준수 선언문

경기아트센터는 기관의 공정거래 내부준법시스템을 강화하고
임직원의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를 확립하고자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 하나. 우리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질서를 확립한다.
- 하나. 우리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 확립을 위해
경영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한다.
- 하나. 우리는 협력사와의 상생발전을 위해 노력하며,
공정거래 실천을 위해 지속해서 협력한다.
- 하나. 우리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처하며,
재발되지 않도록 한다.
- 하나. 우리는 공정거래CP 제도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자율준수관리자에 적극 협조한다.

- 경기아트센터 임직원 일동 -

[2024년 공정거래 자율준수 선언문]

- 또한, 경기아트센터는 홈페이지에 “공정거래” 메뉴를 신설하고 최고경영자의 공정거래 CP 관련 활동을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시하여 기관의 CP 대외 영향력을 지속해서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공시주소: www.ggac.or.kr/?p=289)

○ 홈페이지 CP 공시 현황

연번	공시일자	공시제목
1	2023. 12. 15.	경기아트센터 공정거래 CP 운영지침 제정
2	2023. 12. 19.	기관장 공정거래 CP 도입 선포식 개최
3	2024. 12. 03.	공정거래 CP 관리자 특별교육 진행
4	2024. 12. 03.	기관장 공정거래 자율준수 선언식 개최
5	2024. 12. 05.	경기아트센터 공정거래 CP 운영내규 제정
6	2024. 12. 26.	경기아트센터 공정거래 CP 운영내규 개정
7	2024. 12. 30.	2024년 경기아트센터 공정거래 CP 편람



[홈페이지 “공정거래” 메뉴 신설]

번호	제목	일부	등록일자	조회수
7	2024년 경기아트센터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편람	☐	2024-12-30	31
6	경기아트센터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운영내규 개정(2024. 12. 26.)	☐	2024-12-26	55
5	경기아트센터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운영내규 제정(2024. 12. 5.)	☐	2024-12-05	40
4	2024년 경기아트센터 공정거래 자율준수 기관장 선언식 개최	☐	2024-12-03	48
3	2024년 경기아트센터 공정거래 CP 관리자 특별교육 진행		2024-12-03	29
2	2023년 경기아트센터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도입 기관장 선포식 개최	☐	2023-12-19	50
1	경기아트센터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운영지침 제정(2023. 12. 15.)	☐	2023-12-15	49

[홈페이지 공정거래 공시]

평가
지표

C1.1 최고경영자의 CP도입 및 자율준수 실천의지의 천명

세부
측정
지표

C1.1.2 최고경영자가 조직의 CP 운영현황 및 성과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예: 분기, 반기] 검토하였으며, 조직의 CP 실천의지를 CP 관련 사업목표[예: 핵심성과지표(Key Performance Index)]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시하였는가?

01 CP 운영현황 및 성과 보고

- 경기아트센터는 정기적(반기 1회)으로 최고경영자에게 CP 운영현황 및 성과를 보고하여 CP 제도의 점진적인 발전방향을 지속해서 모색하고 있습니다.
- 상반기에는 전년도 주요 실적 및 개선과제를 정리하여 최고경영자에게 보고하고 하반기에는 주요 운영현황 및 당해 핵심과제를 최고경영자에게 보고하여 CP 관련 사업목표를 지속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CP 운영보고 현황

연번	결재일자	문 서 명
1	2023. 11. 14.	2023년 경기아트센터 공정거래 CP 운영계획 보고
2	2024. 01. 19.	2023년 경기아트센터 공정거래 CP 운영 결과보고
3	2024. 10. 22.	2024년 경기아트센터 공정거래 CP 운영계획 보고
4	2025. 01. 23.	2024년 경기아트센터 공정거래 CP 운영 결과보고



재무회계팀

[공정거래CP 운영계획]



재무회계팀

[공정거래CP 결과보고]

02 CP 8대과제 도입현황 및 주요성과

- 경기아트센터는 2023년에 CP 제도를 최초 도입하여 2024년에 경기아트센터에 적합한 CP 제도를 새롭게 설계함으로써 8대과제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2025년에는 CP 등급평가를 통해 CP 제도를 지속해서 보완하고자 합니다.

○ CP 8대과제 도입현황

CP 8대과제	2023년	2024년	2025년
1 CP 기준과 절차 마련	완료	8대과제 도입완료	CP 등급평가 도입
2 최고경영자 자율준수 의지 천명	완료		
3 자율준수관리자 임명	-		
4 자율준수편람 제작·활용	-		
5 자율준수교육 실시	완료		
6 내부감시체계 구축	-		
7 공정거래 법규위반 임직원 제재	완료		
8 CP 효과성 평가	-		

○ 2024년 CP 8대과제 주요성과

CP 8대과제	2024년 주요성과
1 CP 기준과 절차 마련	1-①. 공정거래CP 운영내규 제·개정
2 최고경영자 자율준수 의지 천명	2-①. 기관장 자율준수 선언식 개최 2-②. 홈페이지 “공정거래” 신설
3 자율준수관리자 임명	3-①. 자율준수관리자 임명 및 공표 3-②. 홈페이지 자율준수관리자 인사말 신설
4 자율준수편람 제작·활용	4-①. 경기아트센터 자율준수편람 제작 4-②. 자율준수편람 및 운영내규 내부공유
5 자율준수교육 실시	5-①. (사무직원 대상) CP 교육 실시(3회) 5-②. (관리자 대상) CP 특별교육 실시(1회)
6 내부감시체계 구축	6-①. 공정거래 자율준수협의체 신설 6-②. 익명신고 “공정거래” 신설 6-③. 부서별 공정거래리스크 자율진단 시행
7 공정거래 법규위반 임직원 제재	7-①. 운영내규 제23조(직원 제재) 신설
8 CP 효과성평가	8-①. 운영내규 제25조(효과성 평가) 신설 8-②. 부서별 CP 효과성평가 설문 실시

03 CP 실천의지의 사업목표 반영

- 조직성과평가(KPI)와 연계하여 “GGAC 청렴 마일리지” 제도를 신설하고 처음 시행하였습니다. 이 제도는 청렴실천과 자율준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부서에 플러스 마일리를 부여하고, 청렴의무 위반 시 마이너스 마일리를 부여하여 부서별로 자율적인 개선의지를 고양하고자 했습니다.

문서번호	협조문	결재(발신)	결재(수신)	일시
GGAC-2260	(내선 432 / (내선 2) 2)	김기	한길	12/11
시행일자	2024.12.11.	김기	한길	12/11
수신	수신자 김기	김기	한길	12/11
발신	김기	김기	한길	12/11
제 목	조직성과평가 연계 GGAC 청렴마일리지 시행 및 자율사상 안내			

김사실-552호(2024.04.23) "GGAC 청렴마일리지 도입 계획(안)", 김영지총합-3878호(2024.08.19) "2024년 경기아트센터 조직성과평가 종합계획", 김영지총합-4300호(2024.09.12) "2024년 조직평가 시행 및 개인평가자료(실제장 본부장회) 제출 안내" 및 김사실-1746호(2024.09.20) "2024년 경기아트센터 청렴윤리경영 CP 도입계획"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청렴마일리지 제도 시행 관련 안내 드립니다.

1. 건 명: 조직성과평가 연계 GGAC 청렴마일리지 시행 및 자율사상 안내
2. 추진 배경
 - 청렴윤리경영 자율준수 실현의 일환으로 각 부서의 자율적인 개선 의지 고양
3. 제도 개요
 - 청렴 실천 및 자율준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부서에 플러스 마일리지 부여
 - 청렴 의무 위반 시, 마이너스 마일리지 부여
4. 운영 목표
 - 부서별 교육 업무 특성을 반영, 부서별 연간 성과목표와 연계한 자율적 청렴 실천 프로그램 계획 수립,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 도모
 - 기존 형식적인 청렴 실천 프로그램에서 탈피, 청렴도향상 결과 발굴된 각 사업 및 정책별 취약부분과의 연계를 통해 창의적이고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 발굴

도입	시행	발행	청탁	자율 개선
24. 9 ~ 12	25. 1 ~ 12	26. 1 ~ 12	27. 1 ~ 8	27. 9 ~
청렴도향상 부패리스크 예방 부패리스크 예방 및 관리 윤리경영 및 개선				

[청렴 마일리지 제도 시행 및 안내 협조문]

- 주관부서는 조직성과평가(KPI)에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도입 및 운영” 과 “제도개선” 항목을 신설하여 CP 8대과제를 연내에 모두 도입하고 CP 제도를 지속해서 고도화할 수 있도록 독려하였습니다.

연번	지 표 명	가중치(%)	실행과제	비고
1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도입 및 운영	20	공정거래자율준수 요건 시행	8대과제 도입요건 충족
2	제도개선 노력	20	제도개선 (규정, 내규 등)	제도 현행화를 위한 기준 마련

5. 2025년(24년 실적) 조직성과평가 연계 청렴마일리지 지표 개요

평가영역	평가지표	배점(점)
Plan (1점)	부서장 주관 반부패 청렴 회의 시행(붙임1 서식 참고)	+1.0
Do (2.5점)	부서 주요업무 관련 부패위험분야 자율개선과제 수립(붙임2 서식 참고)	+1.5
	개인 주요업무 관련 자율적 행위규범 수립(붙임3 서식 참고)	+1.0
	부서원 반부패 청렴교육 이수율(붙임4 형 교육 이수 현황집계 참고)	-1.5
Check /Act (1.5점)	소관 업무 지침에 대한 부패영향 체크리스트 자율 점검(붙임5 서식 참고)	+1.5
합 계		5.0

6. 세부평가지표 정의서

가. (Plan) 부서장 주관 반부패 청렴 회의 시행

지표구분	Plan	평가방법	정량 +1.0점
지표명	부서의 청렴 실천 환경조성 노력도		
지표정의	부서장 주관 반부패 청렴 회의 시행 여부 (플러스 마일리지)		
세부 평가 내용	• 부서장 주관 전 부서원이 참여한 반부패 청렴 회의를 1회 이상 개최하였는가?		
	1회 이상 개최 후 회의 결과 보고 제출		미제출
	+1.0점		0점
※ 붙임1 서식 참조로 제출. 감사팀으로 12. 24까지(1일 지연 시마다 -0.1점/최대 -0.5점)			

나. (Do) 부서 부패위험분야 개선과제 수립, 개인 행위규범 수립, 청렴교육 이수

지표구분	Do	평가방법	정량 +2.5점		
지표명	부패위험분야 자율 개선 정책 마련 및 이행 노력도				
지표정의	1) 부서 주요업무 중 부패위험분야 자율개선과제 수립 여부 (플러스 마일리지) 2) 부서주요업무 관련 자율적 행위규범 수립 이행률 (플러스 마일리지) 3) 부서원 반부패 청렴교육 이수율 (마이너스 마일리지)				
세부 평가 내용	● 부서 주요업무 관련 부패위험분야 자율개선과제를 1건 이상 수립하였는가?				
	자율개선과제 1건 이상 수립 및 제출		미제출		
	+1.5점		0점		
	※ 붙임2 서식 참조로 제출. 감사팀으로 12. 24까지(1일 지연 시마다 -0.1점/최대 -0.5점)				
	● 부서원(12.24. 현원 기준) 각 개인이 담당 주요 업무 관련 자율적 행위규범을 수립하였는가?				
	전원 제출		75%~100%미만	50%~75%미만	50% 미만 제출
+1.0점		+0.6점	+0.6점	+0.5점	0점
※ 붙임3 서식 참조로 제출. 감사팀으로 12. 24까지(1일 지연 시마다 -0.1점/최대 -0.5점)					

○ 또한, 경기아트센터는 “청람계약 이행서약서”와 “인권존중의무 이행서약서”를 계약과정에 필수서류로 지정하여 근로자와 협력사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청람계약이행서약서

□ 공사(용역물품)인 명
: 0

당사(본인)는 제단법인 경기아트센터(이하 '경기아트센터')가 발주하는 상기 공사·용역·물품의 계약 체결 및 이행·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본인)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의 업무를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와 같이 서약합니다.

1. 입찰·계약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계약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작하여 입찰·계약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고 다음과 같은 사항을 숙지 하겠습니까.

이를 위반하여 특정인의 낙찰·계약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경기아트센터에서 발주하는 입찰·계약에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하고,

입찰·계약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계약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계약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경기아트센터에서 발주하는 입찰·계약에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하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특검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경기아트센터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를 제기하지 않겠습니까.

2. 입찰·낙찰·계약·납품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경기아트센터 임직원 및 그 관련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진인적 등에 대한 취급 제공 포함)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경기아트센터 통해서 시행하는 입찰·계약에 참가하지 않겠습니까.

가. 1천만원 이상의 뇌물 등을 준 자는 입찰·계약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계약에 참가하지 못한다.

나. 1천만원 미만의 뇌물 등을 준 자는 입찰·계약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계약에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의 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경기아트센터 임직원과 그 관련자에게

뇌물, 취업제공, 진학, 그 밖의 편의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계약체결 이전 어떤 낙찰·계약자 결정의 취소, 공사작금(납품, 용역의 제공) 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작금(납품, 용역의 제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까.

4. 본건 관련 하도급을 주거나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까.

5.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압선·정박을 통하여 입찰·계약과 관련된 정보를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까.

6. 경기아트센터 임직원과 사적 관계(친인척, 권력, 동문)가 성립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고지하겠습니까.

경기아트센터 임직원 명	관계

7. 입찰·계약, 계약의 체결·이행 관련하여 경기아트센터 임직원 및 그 관련자로부터 금품·향응·편의제공 등을 요구받은 경우, 입체간 담합이나 경기아트센터 임직원 및 그 관련자와 업체간 부당거래 정황을 인지한 경우 이를 즉시 경기아트센터에 신고하겠습니다.

경기아트센터 감사실 직통전화	031-230-3431 fax)031-230-3435
경기아트센터 홈페이지 발표관리	www.gaac.or.kr/?p=275 상담 고객센터>익명신고>하단 발표관리 바로가기

당사(본인)가 낙찰·계약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이를 위반하여 입찰·계약 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경기아트센터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경기아트센터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본인)을 배제하는 입찰·계약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1900년 1월 0일

대표자 : 0 (서명 또는 날인)

[청람계약 이행서약서]

인권존중의무 이행서약서

계약명 : 0

당사는 「기업 활동과 관련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보호」가 인권경영 및 ESG경영의 중요한 요소를 같이 인식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고 보호하는 경영활동에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귀 기관에서 발주하는 위 계약 참여에 있어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제1조(자별금지) 종업원을 고용함에 있어 인종, 종교, 장애, 성별, 출신지,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겠습니다.

제2조(노동권존중) 근로자의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하고 존중하겠습니다.

제3조(강제노동금지)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도 이용하지 않겠습니다.

제4조(아동노동금지) 15세 이하 아동의 고용과 노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법적으로 연소자에게 노동시킬 경우에는 교육기회의 보장과 안전에 대한 배려를 하겠습니다.

제5조(안전권존중) 근로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환경을 제공하고 위험한 작업환경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안전장구와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제6조(사고시조치) 작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나 질병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제7조(지역주민보호) 기업활동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현지주민의 생명권, 거주자의 자유, 안전에 대한 권리, 재산소유권 등을 존중하고 보호하겠습니다.

제8조(환경보호) 심각한 환경훼손과 환경재해를 방지, 완화, 통제할 수 있도록 적절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제9조(이해관계자보호)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보건과 안전에 위해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10조(징벌 및 시정조치 시 협조의무) 기관에서 당사의 인권보호 준수여부를 점검할 때 적극 협조하고, 점검결과 인권침해 사실이 드러나거나 인권침해로 인하여 중단과 업무수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 기관의 시정조치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위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켜겠습니다.

1900년 1월 0일

서약자 : 0
대표자 : 0 (인)

경기아트센터 귀하

협력회사 인권존중 자율점검표

제단법인 경기아트센터(이하 아트센터)는 아트센터의 지속가능성향에 있어 사회적 책임경영의 원칙과 이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트센터는 협력회사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존중하며, 협력회사가 아트센터의 사회적 책임경영 원칙과 이념에 부합할 수 있도록 인권존중의무 이행서약서를 성실히 이행하고 준수사항을 공고드립니다.

본 점검표는 각 협력회사가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적절히 준수하고 있는지 스스로 진단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각 항목의 준수 여부에 대해서 예, 아니오로 표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항목	주요 내용	준수여부
차별금지	우리회사는 종업원을 고용함에 있어, 인종, 종교, 장애, 성별, 출신지,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습니다.	[] 예 [] 아니오
노동권 존중	우리회사는 근로자의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하고 존중한다.	[] 예 [] 아니오
강제노동금지	우리회사는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도 이용하지 않는다.	[] 예 [] 아니오
아동노동금지	우리회사는 관련 적용 법규에 따라 15세 미만인 자의 고용과 노동을 금지한다.	[] 예 [] 아니오
안전권 존중	우리회사는 근로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환경을 제공하고 위험한 작업환경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안전장구 제공 및 교육을 실시한다.	[] 예 [] 아니오
사고시 조치	우리회사는 산업재해 및 질병을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제도와 절차를 갖추고 있다.	[] 예 [] 아니오
환경보호	우리회사는 환경관련 적용법규를 성실히 준수한다.	[] 예 [] 아니오

1900년 1월 0일

서약자 : 0
대표자 : 0 (인)

경기아트센터 귀하

[인권존중의무 이행서약서]

평가
지표

C1.1 최고경영자의 CP도입 및 자율준수 실천의지의 천명

세부
측정
지표

C1.1.3 최고경영자가 조직의 CP 문화 촉진을 위한 활동(예: 캠페인, 행사, 선포식, 표창 등)에 직접 참여하였는가?

01 청렴윤리경영 기관장 CP 선포식 개최

- 임직원의 공정한 업무수행과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이 되기 위해 기관장 주도로 청렴윤리경영 CP 선포식을 개최하였습니다. (개최일: 2024. 9. 30.)



[청렴윤리경영 기관장 CP 선포식]

02 공정거래 기관장 자율준수 선언식 개최

- 불공정행위 사전관리 및 협력사 권익 보호를 위해 경기아트센터 사장 및 부서장이상이 참석하여 기관장 자율준수 선언식을 개최하였습니다. (개최일: 2024. 12. 3.)



[공정거래 기관장 자율준수 선언식]

03 공정거래 CP 관리자 특별교육 기관장 참여

- 공정거래 CP 제도에 대한 관리자 이해 제고 및 공정거래 문화 확산을 위해 부서장 이상의 관리자 특별교육에 기관장이 함께 참여하여 기관의 CP 활성화 의지를 표명하였습니다. (교육일: 2024. 12. 3.)
- 관리자 특별교육 개요

구 분	내 용	비 고
1 교육일시	2024. 12. 3.(화) 10:00~11:30 (1시간 30분)	-
2 교육장소	경기아트센터 회의실	-
3 교육강사	이O길 (길버트 컴플라이언스 파트너)	-
4 교육내용	공정거래 CP 제도 설명 및 도입 필요성 등	-
5 이수현황	21 / 25명 (84%)	공석제외



[공정거래 관리자 특별교육]

GGAC 경기아트센터
Gyeonggi Arts Center

2024년 공정거래CP 관리자 특별교육 이수자 명단

□ 교육일시: 2024. 12. 3.(화) 10:00~11:30(1시간 30분)
□ 교육장소: 경기아트센터 회의실
□ 교육강사: 이 O 길

연번	부서명	직책	성명	서명	비고
1	경기아트센터	사장	서 O 기	[서명]	
2	사무처	사무처장	김 O 영	[서명]	
3	감사실	실장	한 O 영	[서명]	
4	경영기획실	실장	박 O 제	[서명]	
5	공연사업본부	본부장	우 O 철	[서명]	
6	예술단본부	본부장	김 O 수	[서명]	
7	대외협력본부	본부장	박 O 찬	[서명]	
8	감사팀				
9	경영혁신TF	팀장	김 O 수	[서명]	
10	기획조정팀	팀장	임 O 미	[서명]	
11	경영지원팀	팀장	신 O 원	[서명]	
12	재무회계팀	팀장	이 O 람	[서명]	
13	안전사업팀	팀장	정 O 근	[서명]	
14	커뮤니케이션팀	팀장	이 O 정	[서명]	
15	공연기획팀	팀장	우 O 철	[서명]	
16	무대기술팀	팀장	정 O 현	[서명]	
17	공연활성화TF	팀장	조 O 주	[서명]	
18	예술단운영팀	팀장	이 O 현	[서명]	
19	국악운영팀	팀장	장 O 현	[서명]	
20	경기도국단	기획실장	김 O 장	[서명]	
21	경기도무용단	기획실장	김 O 화	[서명]	
22	경기시나위	기획실장	송 O 비	[서명]	
23	경기물하오네	기획실장	이 O 현	[서명]	
24	창예인오케스트라	팀장직대	이 O 영	[서명]	
25	대외사업팀	팀장	최 O 현	[서명]	
26	정책사업팀	팀장	신 O 호	[서명]	

[관리자 특별교육 이수자 명단]

04 CP 제도 도입 및 발전에 기여한 담당자 표창 수여

- 경기아트센터는 공정거래 CP 제도 도입 및 발전에 기여한 CP 담당자의 공로를 인정하여 2024년 적극행정 우수직원으로 선정하고 사장 표창을 수여하였습니다. (수여일: 2024. 12. 30.)

문서번호	협 조 문	결재 (발신)	주요	내용	내용		
기획조정팀-2869 6	(내선 235 / 주일길 전)	결재 (수신)	김 지	임 미	임 미		
시행일자	2024.12.09.		김 지	임 미	임 미		
수 신	수신자 검토		김 지	임 미	임 미		
발 신	기획조정팀		김 지	임 미	임 미		
제 목	2024년 적극행정 우수부서 및 직원 선정을 위한 우수사례 제출 요청		김 지	임 미	임 미		

기획조정팀-2869(2024.12.06., 2024년 적극행정 우수부서 및 직원 선정 계획(안))호에 따라,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아래와 같이 제출 요청드립니다.

1. 2024년 적극행정 우수부서 및 직원 선정 계획 개요

가. 추진 목적

- 1) 소극행정 관행을 타파하고 적극행정 우수부서 및 우수직원에 대한 보상을 수여하여 적극적으로 일하는 문화 정착 및 직원사기 진작

나. 선발 규모

- 1) 적극행정 우수부서 : 2부서(적극행정 우수부서 1, 예산운용 우수부서 1)
 - 2) 적극행정 우수직원 : 1명
- ※ 실·문부별 최소 1개 이상 우수사례 제출

다. 선발 기준

- 1) 적극성, 내·외부 고객충만도, 난이도, 확산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2) 예산운용 우수부서의 경우, 월별 예산 집행 자료를 기반으로 8월 집행계획 대비 11월 집행을 최우수부서 선정

라. 선발 대상

- 1) 제도혁신·관행타파 또는 적극적인 업무 추진으로 성과를 창출한 부서 또는 개인
- 2) 창의적·도전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성과 달성을 위해 노력한 부서 또는 개인
- 3) 업무효율 향상, 신기술 활용, 공공서비스 향상 등 새로운 정책을 발굴한 부서 또는 개인
- 4) 각종 공모사업 추진 및 경기도 위탁사업을 수행하여 성과를 창출한 부서 또는 개인
- 5) 핵심현안, 장기·집단민원 과제해결 등 고객이 공감할 수 있는 사례 우선 선발

[적극행정 우수직원 선정 협조문]



[적극행정 우수직원 표창 수여식]

II

C1. CP의 도입 및 운영방침의 수립

평가 지표	C1.2 CP 운영의 기준과 절차의 수립	항목별 국지가중치	0.135
		지표별 국지가중치	0.191
세부 측정 지표	C1.2.1 CP 운영에 관한 기준(자율준수편람 등)과 절차가 포함된 문서 [지침서, 절차서 등]가 있는가? C1.2.2 CP 운영에 관한 목표가 측정 가능하고 정량화된 지표로 관리되었는가? C1.2.3 최고경영자에게 일선관리자까지의 CP 운영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가?		
지표 관리 목표	C1.2.1 CP 운영에 관한 기준과 절차가 포함된 문서는 최고경영자의 승인을 얻어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규정한다. C1.2.2 CP 운영에 관한 목표를 측정 가능하도록 정량화된 지표로 관리한다. C1.2.3 CP 운영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최고경영자로부터 CP를 담당하는 임직원까지 정의하고, 이를 최고경영자 또는 자율준수관리자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는다.		
주요 실적	24.04.12 조직성과평가(KPI) 연계 주관부서 “CP 분야” 평가지표 신설 24.12.05 경기아트센터 공정거래 CP 운영내규 제정 24.12.11 조직성과평가(KPI) 연계 “청렴 마일리지” 제도 평가지표 신설 24.12.30 경기아트센터 공정거래 자율준수편람 제작 및 배포		

평가
지표

C1.2 CP 운영의 기준과 절차의 수립

세부
측정
지표

C1.2.1 CP 운영에 관한 기준(자율준수편람 등)과 절차가 포함된 문서
[지침서, 절차서 등]가 있는가?

01 CP 운영의 기준과 절차 수립을 위한 운영내규 제정

- 경기아트센터는 공정거래 관련 내부 규정에 대한 임직원 접근성 향상 및 CP 운영에 기준과 절차를 강화하기 위해 기존 운영지침을 폐지하고 신규 운영내규 제정을 추진였습니다. (제정일: 2024. 12. 5.)
- 신규 운영내규에는 기관의 자율준수관리자, 자율준수협의체, 내부감시체계 운영 등의 방안을 새롭게 정립하여 CP 제도의 실효성 확보하고자 했습니다.

문서번호	협조문	주요	담당	담당	사상
GGAC-CP-200-1	0.8년 25 / 25일 문 헌	공제 (발신)	문 헌	이·중	박인재
시행일자	2024.12.03.	공제 (수신)			서준기
수 선	거창도청장				
발 신	재무경제팀				
제 목	「경기아트센터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운영내규」 제정 요청				

공정거래CP 제도 활성화 및 임직원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경기아트센터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운영내규」를 다음과 같이 신규 제정하고자 합니다.

- 내 규 명: 경기아트센터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운영내규
- 추진목적
 - 가. 공정거래CP 확대를 중심으로 자율준수관리자 선임, 협의체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정비
 - 나. 공정거래 관련 규정에 대한 임직원 접근성 향상을 위해 기존 운영지침을 폐지하고 신규 운영내규 제정

3. 주요내용

- 제1조(자율준수관리자의 임명)
 - 자율준수관리자는 사장 또는 사장이 추천한 자로 이사회가 최종 선임
- 제11조(협의체의 구성), 제12조(협의체의 운영)
 - 자율준수관리자를 위원장으로 하고 사무차장, 실장, 본부장을 위원으로 하는 자율준수협의체 구성
 - 공정거래CP 제도, 정책 및 법규 위반의 판단에 필요한 사항 등 협의 진행
- 제20조(사건접수관리제도), 제22조(내부감시시스템)
 - 주관부서가 아닌 부서에서 일상감사, 익명신고 등 공정거래 관련 사건접수 협의 및 내부고발 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 그 검토결과를 자율준수관리자에게 보고하도록 함

※ 참고문헌: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 방안」 제정 규정, (경기아트센터총무과, 2024. 2. 26.)

4. 발상감사 의견

- 발상감사 검토의견: 「특혜사찰 업무」 (인사팀-216호, 2024. 11. 26.)
- 결과제견을 반영하여 아래와 같이 발부내용을 수정함

III. 내규

경기아트센터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운영내규

경기아트센터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운영내규

제정 2024. 12. 5.
개정 2024. 12. 26.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내규는 경기아트센터(이하 "아트센터"라 한다)와 소속 직원의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를 위해 각종 활동 및 절차, 운용조직 등을 정한 것으로서, 아트센터의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아트센터와 소속 직원을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개정 2024. 12. 26.>

제2조(적용범위) 이 내규는 아트센터의 모든 직원 및 그 직원이 수행하는 업무 관련 일체의 행위에 적용되며, 공정거래 관련 법규 또는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내규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24. 12. 26.>

제3조(용어의 정의) 이 내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Compliance Program, 이하 "공정거래CP"라 한다)은 아트센터가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를 위해 자체적으로 제정·운영하는 교육, 감독 등의 내부 준법시스템을 말한다.
- "공정거래 관련 법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공정거래위원회의 소관 법규를 말한다.
- "자율준수관리자"는 공정거래CP 운영을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 "공정거래CP 주관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는 공정거래CP 운영의 실무를 전담하고 자율준수관리자를 보좌하는 부서를 말한다.
- "자율준수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공정거래CP 운영과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및 예방을 위한 주요 사안을 협의하는 조직체를 말한다.

제2장 운영조직 및 역할

제1절 사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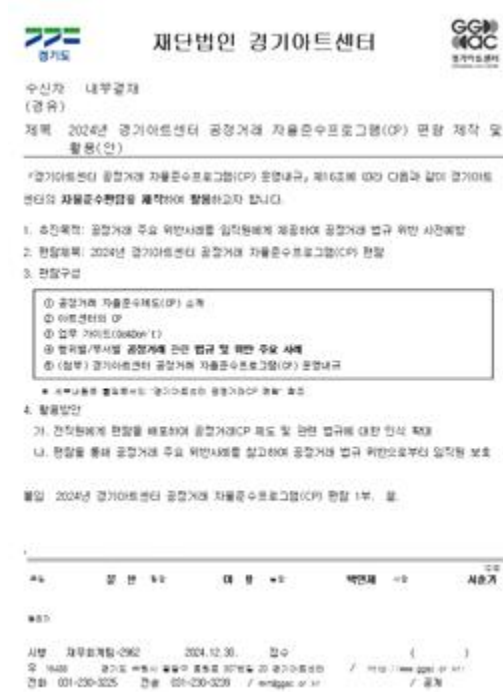
제4조(사장의 의무) ① 사장은 공정거래CP 제도가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자율준수관리자

[CP 운영내규 제정 요청 협조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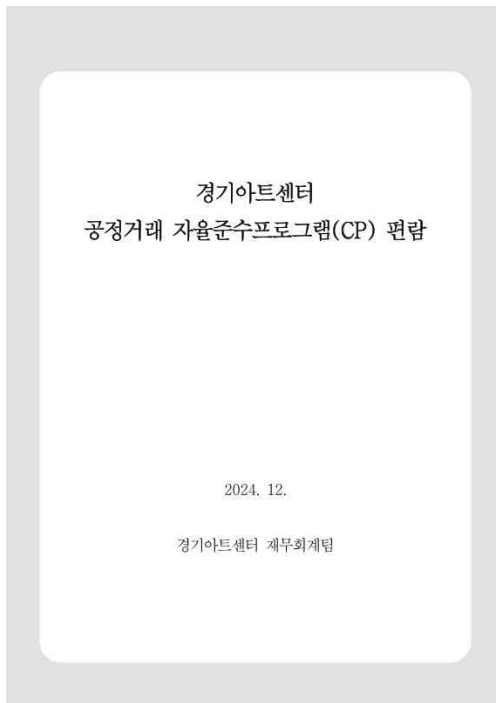
[공정거래 CP 운영내규]

02 공정거래 위반의 사전 예방을 위한 자율준수편람 제작

- 공정거래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고 임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공정거래 제도 및 운영현황, 공정거래 관련 주요 위반사례 등을 담은 편람을 제작하여 전직원에게 배포하였습니다. (제작일: 2024. 12. 30., 배포일: 2024. 12.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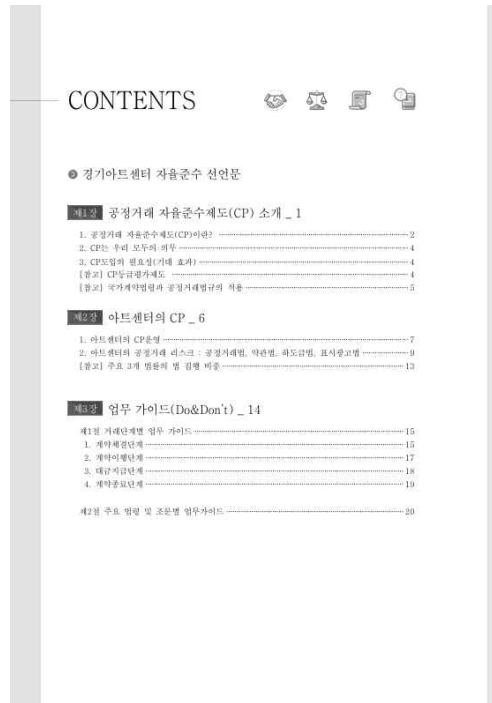
[자율준수편람 제작 및 활용]



[2024년 공정거래 자율준수편람]



[자율준수편람 배포 협조문]



평가
지표

C1.2 CP 운영의 기준과 절차의 수립

세부
측정
지표

C1.2.2 CP 운영에 관한 목표를 측정 가능하도록 정량화된 지표로 관리한다.

01 주관부서 조직성과평가(KPI) CP 분야 정량지표 신설

- CP 주관부서 조직성과평가(KPI)에 CP 분야를 신설하여 측정가능한 정량적 지표를 통해 연내 CP 8대과제를 모두 도입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 주관부서 평가지표

지표명	가중치(%)	목표점(값)	지표산식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도입 및 운영	20	0.5점 이상	• 요건별 배점 ① CP 기준과 절차마련(0.1) ② 최고경영자 자율준수 의지(0.3) ③ CP 자율준수관리자 임명(0.1) ④ 자율준수편람 제작·활용(0.1) ⑤ 임직원 자율준수교육 실시(0.1) ⑥ 내부감시체계 구축(0.1) ⑦ 공정거래 위반 임직원 제재(0.1) ⑧ 효과성평가와 개선조치(0.1)

02 리스크 진단 및 자율실천을 위한 청렴마일리지 제도 신설

- 부서별로 자율적으로 부패리스크를 진단 및 분석하고, 청렴 실천프로그램을 계획 및 운영할 수 있도록 조직성과평가(KPI)와 연계하여 “청렴마일리지” 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 청렴마일리지 제도는 청렴 실천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부서에 플러스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청렴의무 위반 부서에는 마이너스 마일리지를 부여하여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를 도모하고자 했습니다.

○ 청렴마일리지 평가지표

평가영역	평가지표	배 점
Plan (1점)	부서장 주관 반부패 청렴 회의 시행	+1.0
Do (2.5점)	부서 주요업무 관련 부패취약분야 자율개선과제 수립	+1.5
	개인 주요업무 관련 자율적 행위규범 수립 (기관 윤리헌장 및 규범 연계)	+1.0
	부서원 반부패 청렴교육 미이수 감점	-1.5
Check/Act (1.5점)	소관 업무지침에 대한 부패영향 체크리스트 자율점검	+1.5
합 계		5.0

문서번호	GGAC 청렴마일리지 도입 계획(안)
제 목	조직성과평가 연계 청렴마일리지 시행 및 제정사항 안내
시행일자	2024.12.11.
수 신	수신처 없음
발 신	감사팀
제 목	조직성과평가 연계 청렴마일리지 시행 및 제정사항 안내

감사팀-552호(2024.04.23.) "GGAC 청렴마일리지 도입 계획(안)", 경영지원팀-3878호(2024.08.19.) "2024년 경기아트센터 조직성과평가 종합계획", 경영지원팀-4300호(2024.09.12.) "2024년 조직평가 시행 및 개인평가지표(실·허조 본부장회) 제정 안내" 및 감사팀-1746호(2024.09.20.) "2024년 경기아트센터 청렴윤리경영 CP 도입계획"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청렴마일리지 제도 시행 관련 안내 드립니다.

1. 건 명: 조직성과평가 연계 GGAC 청렴마일리지 시행 및 제정사항 안내
2. 추진 배경
 - 청렴윤리경영 자율준수 실현의 일환으로 각 부서의 자율적인 개선 의지 고당
3. 제도 개요
 - 청렴 실천 및 자율준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부서에 불러스 마일리지 부여
 - 청렴 의무 위반 시, 마이너스 마일리지 부여
4. 운영 목표
 - 부서별 교육 업무 특성을 반영, 부서별 연간 성과목표와 연계한 자율적 청렴 실천 프로그램 계획을 수립,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 도모
 - 기존 형식적인 청렴 실천 프로그램에서 탈피, 청렴도평가 결과 발굴된 각 사업 및 정책별 취약부문의 연계를 통해 창의적이고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 발굴

도입	시행	발행	정책	자율 개선
24. 9 ~ 12	25. 1 ~ 12	26. 1 ~ 12	27. 1 ~ 8	27. 9 ~
환경보전	부패리스크 예방	부패리스크 예방 및 관리	포사대행 및 개선	제도 및 인센티브

5. 2025년(24년 실적) 조직성과평가 연계 청렴마일리지 지표 개요

평가영역	평가지표	배점(점)
Plan (1점)	부서장 주관 반부패 청렴 회의 시행(붙임1 서식 참고)	+1.0
Do (2.5점)	부서 주요업무 관련 부패취약분야 자율개선과제 수립(붙임2 서식 참고)	+1.5
	개인 주요업무 관련 자율적 행위규범 수립(붙임3 서식 참고)	+1.0
	부서원 반부패 청렴교육 미이수 감점(붙임4 점 교육 이수 현황집계 참고)	-1.5
Check /Act (1.5점)	소관 업무 지침에 대한 부패영향 체크리스트 자율 점검(붙임5 서식 참고)	+1.5
합 계		5.0

6. 세부평가지표 정의서

가. (Plan) 부서장 주관 반부패 청렴 회의 시행

지표구분	Plan	평가방법	정량 +1.0점
지표명	부서의 청렴 실천 환경조성 노력도		
지표정의	부서장 주관 반부패 청렴 회의 시행 여부 (붙임1 마일리지)		
세부 평가 내용	• 부서장 주관 전 부서원이 참여한 반부패 청렴 회의 1회 이상 개최하였는가?		
	1회 이상 개최 후 회의 결과 보고 제출	미제출	
	+1.0점	0점	
	※ 붙임1 서식 참조를 제출·감사함으로 12. 24까지(1일 지연 시마다 -0.1점/최대 -0.5점)		

나. (Do) 부서 부패취약분야 개선과제 수립, 개인 행위규범 수립, 청렴교육 이수

지표구분	Do	평가방법	정량 +2.5점										
지표명	부패취약분야 자율 개선 정책 마련 및 이행 노력도												
지표정의	1) 부서 주요업무 중 부패취약분야 자율개선과제 수립 여부 (붙임2 마일리지) 2) 개인 주요업무 관련 자율적 행위규범 수립 이행률 (붙임3 마일리지) 3) 부서원 반부패 청렴교육 이수율 (마이너스 마일리지)												
세부 평가 내용	• 부서 주요업무 관련 부패취약분야 자율개선과제를 1건 이상 수립하였는가?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d style="width: 50%;">자율개선과제 1건 이상 수립 및 제출</td><td style="width: 50%;">미제출</td></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1.5점</td><td style="text-align: center;">0점</td></tr> </table>			자율개선과제 1건 이상 수립 및 제출	미제출	+1.5점	0점						
	자율개선과제 1건 이상 수립 및 제출	미제출											
	+1.5점	0점											
	※ 붙임2 서식 참조를 제출·감사함으로 12. 24까지(1일 지연 시마다 -0.1점/최대 -0.5점)												
	• 부서원(12.24. 현원 기준) 각 개인이 담당 주요 업무 관련 자율적 행위규범을 수립하였는가?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d style="width: 25%;">전원 제출</td><td style="width: 25%;">75%~100%미만</td><td style="width: 25%;">50%~75%미만</td><td style="width: 25%;">50% 미만 제출</td><td style="width: 20%;">미제출</td></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1.0점</td><td style="text-align: center;">+0.8점</td><td style="text-align: center;">+0.6점</td><td style="text-align: center;">+0.5점</td><td style="text-align: center;">0점</td></tr> </table>			전원 제출	75%~100%미만	50%~75%미만	50% 미만 제출	미제출	+1.0점	+0.8점	+0.6점	+0.5점	0점
	전원 제출	75%~100%미만	50%~75%미만	50% 미만 제출	미제출								
+1.0점	+0.8점	+0.6점	+0.5점	0점									
※ 붙임3 서식 참조를 제출·감사함으로 12. 24까지(1일 지연 시마다 -0.1점/최대 -0.5점)													

[청렴 마일리지 제도 시행 및 안내 협조문]

평가
지표

C1.2 CP 운영의 기준과 절차의 수립

세부
측정
지표

C.1.2.3 CP 운영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최고경영자로부터 CP를 담당하는 임직원까지 정의하고, 이를 최고경영자 또는 자율준수관리자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는다.

01 CP 운영내규 제정을 통한 권한과 책임의 강화

- 경기아트센터는 CP 운영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사장의 승인을 받아 자율준수관리자, 주관부서, 자율준수협의체 등을 정의하고 역할과 권한을 부여하는 CP 운영내규 제정을 추진하였습니다. (제정일: 2024. 12. 5.)

문서번호	협 조 문	결재 (발신)	주요	담당	담당	사장
GGAC-CP-2024-1	(내선 225 / 주일 문)	결재 (수신)	문 !한	이 장	박인재	서준기
시행일자	2024.12.03.					12/03
수 신	기획조정팀장					
발 신	재무회계팀					
제 목	「경기아트센터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운영내규」 제정 요청					

공정거래CP 제도 활성화 및 임직원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경기아트센터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운영내규」을 다음과 같이 신규 제정하고자 합니다.

- 내 규 명: 경기아트센터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운영내규
- 추진목적
가. 공정거래CP 확대과제를 중심으로 자율준수관리자 선임, 협의체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나. 공정거래 관련 규정에 대한 임직원 접근성 향상을 위해 기존 운영지침을 폐지하고 신규 운영내규 제정
- 주요내용

- 제6조(자율준수관리자 선임)
- 자율준수관리자는 사장 또는 사장이 추천한 자로 (대사회가 최종 선임)
- 제11조(협의체의 구성), 제12조(협의체의 운영)
- 자율준수관리자를 위원장으로 하고 사원차장, 실장, 문부장을 위원으로 하는 자율준수협의체 구성
- 공정거래CP 제도, 정책 및 법규 위반의 판단에 애로된 사항 등 협의 진행
- 제20조(사전입업협의제도), 제22조(내부고발시스템)
- 주관부서가 아닌 부서에서 일상감사, 익명신고 등 공정거래 관련 사전입업 협의 및 내부고발 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 그 검토결과를 자율준수관리자에게 보고하도록 함

■ 참고문헌: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공정거래위원회령, 2024. 2. 29.)

- 발상감사 의견
가. 발상감사 검토의견 “특이사항 없음” (발시일: 2024. 11. 26.)
나. 권고의견을 반영하여 아래와 같이 발부내용을 수정함

III. 내규 경기아트센터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운영내규

경기아트센터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운영내규

제정 2024. 12. 5.
개정 2024. 12. 26.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내규는 경기아트센터(이하 “아트센터”라 한다)와 소속 직원의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를 위해 각종 활동 및 절차, 운용조직 등을 정한 것으로서, 아트센터의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아트센터와 소속 직원을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개정 2024. 12. 26.>

제2조(적용범위) 이 내규는 아트센터의 모든 직원 및 그 직원이 수행하는 업무 관련 일체의 행위에 적용되며, 공정거래 관련 법규 또는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내규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24. 12. 26.>

제3조(용어의 정의) 이 내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Compliance Program, 이하 “공정거래CP”라 한다)은 아트센터가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를 위해 자체적으로 제정·운영하는 교육, 감독 등의 내부 준법시스템을 말한다.
- “공정거래 관련 법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공정거래위원회의 소관 법규를 말한다.
- “자율준수관리자”는 공정거래CP 운영을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 “공정거래CP 주관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는 공정거래CP 운영의 실무를 전담하고 자율준수관리자를 보좌하는 부서를 말한다.
- “자율준수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공정거래CP 운영과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및 예방을 위한 주요 사안을 심의하는 조직체를 말한다.

제2장 운영조직 및 역할

제1절 사장

제4조(사장의 의무) ① 사장은 공정거래CP 제도가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자율준수관리자

[CP 운영내규 제정 요청 협조문]

[공정거래 CP 운영내규]

02 CP 운영내규를 통한 권한과 책임의 부여

- CP 운영내규에는 관련 법규, 자율준수관리자, 주관부서, 자율준수협의체 등을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내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Compliance Program, 이하 “공정거래CP”라 한다)은 아트센터가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를 위해 자체적으로 제정·운영하는 교육, 감독 등의 내부 준법시스템을 말한다.
2. “공정거래 관련 법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규를 말한다.
3. “자율준수관리자”는 공정거래CP 운영을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4. “공정거래CP 주관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는 공정거래CP 운영의 실무를 전담하고 자율준수관리자를 보좌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자율준수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공정거래CP 운영과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및 예방을 위한 주요 사안을 심의하는 조직체를 말한다.

[공정거래 CP 운영내규 제3조]

- CP 운영내규에는 **사장의 의무와 권한**을 포함하여 CP 제도가 기관 정책의 최우선 과제이며, 그 운영 및 제도개선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1절 사장

제4조(사장의 의무) ① 사장은 공정거래CP 제도가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자율준수관리자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공정거래CP 제도가 기업 운영의 최우선 정책임을 보장한다.

② 사장은 공정거래CP 제도 운영 및 제도개선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율준수관리자와 주관부서에 인적, 물적 자원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③ 사장은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및 자율준수 문화 저해 행위 등 공정거래CP 제도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에 대해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

④ 사장은 공정거래 자율준수 의지를 직원에게 수시로 전달하고 직원이 스스로 준수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한다. <개정 2024. 12. 26.>

제5조(사장의 권한) ① 사장은 공정거래CP 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최고 의사 결정권한을 지닌다.

② 사장은 자율준수관리자를 임명한다.

③ 사장은 공정거래CP 제도의 구축과 운영을 위해 예산과 자원을 배분할 수 있다.

④ 사장은 공정거래CP 제도 운영에 관한 역할과 책임을 직원에게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6.>

[공정거래 CP 운영내규 제4조, 제5조]

- CP 운영내규에는 **자율준수관리자와 주관부서의 역할**을 포함하여 자율준수관리자와 주관부서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제2절 자율준수관리자

제6조(자율준수관리자의 임명)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경영기획실장으로 한다.

② 삭제 <2024. 12. 26.>

③ 자율준수관리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장이 그 직무를 대신하거나 새로운 자율준수관리자를 사장이 임명할 수 있다.

제7조(자율준수관리자의 권한) 자율준수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닌다.

1. 공정거래CP 및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점검 및 조사권
2. 위 제1호에 해당하는 직원에 대한 시정 요구 권한
3. 위 제1호에 해당하는 직원 중 중대한 법 위반 행위자에 대한 인사위원회 회부 요구 권한
4. 기타 공정거래CP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

제8조(자율준수관리자의 역할)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공정거래CP 운영 관련 예산 편성 및 변경 요구
 2. 사장의 자율준수 의지 및 공정거래 CP 기준과 절차의 대내·외 공표
 3. 자율준수편람의 제·개정
 4. 공정거래CP 교육계획 수립 및 시행
 5. 내부감시체계의 운영
 6. 자율준수협의체의 운영
 7. 직원의 공정거래CP 준수 여부와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점검 및 조사
 8. 위 제7호에 따라 확인된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위반한 직원에 대한 제재
 9. 공정거래CP 우수활동자에 대한 선정 및 인센티브 제도 구축
 10. 공정거래CP 관련 효과성 평가 및 다음연도 CP 운영계획에 반영
- ② 자율준수관리자는 공정거래 문화를 확산하고 공정거래CP 제도를 고도화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다.

제9조(주관부서의 역할) ① 주관부서는 자율준수관리자의 업무수행을 보좌하고, 자율준수관리자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한다.

② 주관부서는 업무추진 현황을 자율준수관리자에게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보고하며, 공정거래CP 운영에 중대한 변화나 영향을 끼칠 사안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보고할 수 있다.

제10조(신분보장 및 독립성) ① 아트센터는 공정거래CP 업무수행의 객관성, 독립성 확보를 위해 자율준수관리자 및 주관부서에 인사상의 불이익을 부과하여서는 안 된다.

② 자율준수관리자는 공정거래CP 운영에 독립적이며,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의 위험성이 있는 업무를 직접 담당하여서는 안 된다.

[공정거래 CP 운영내규 제6조~제10조]

- CP 운영내규에는 **직원의 의무사항**을 포함하여 전직원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교육 이수 및 공정거래 관련 사항을 이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4절 직원

제13조(직원의 의무) ① 직원은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자율준수편람을 숙지한다.

② 직원은 자율준수관리자가 부여한 공정거래CP 교육을 충실히 이수한다.

③ 직원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자율준수관리자의 사전 검토를 받는다.

④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사실을 인지한 직원은 신속하게 해당 사실을 자율준수관리자에게 보고한다.

[공정거래 CP 운영내규 제13조]

II

C1. CP의 도입 및 운영방침의 수립

평가 지표	C1.3 CP 운영에 관한사항의 회사 내 · 외부 공시 · 공표	항목별 국지가중치	0.135
		지표별 국지가중치	0.135
세부 측정 지표	C1.3.1 CP 운영에 관한 사항이 내용, 방법, 주체 등에 제한없이 공시 · 공표되고 있는가?(예: 홈페이지, SNS, 동영상 사이트, 내부공시 등) C1.3.2 CP 운영에 대한 사항과 개정된 CP 운영기준 및 절차가 기관의 임직원들에게 올바르게 전달되고 있는가?(배포, 교육, 전달수준 확인)		
지표 관리 목표	C1.3.1 CP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양한 방법으로 대내외 공시 · 공표한다. C1.3.2 CP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임직원들에게 전달하고, 측정가능한 방법을 통하여 전달 수준을 확인한다.		
주요 실적	24.09.11 사무직원 대상 CP 교육 시행 [3회]		
	24.12.03 관리자 대상 CP 특별교육 시행 [1회, 사장 참석]		
	24.12.27 홈페이지 “공정거래” 메뉴 신설 및 공시		
	24.12.30 홈페이지 “자율준수관리자 인사말” 신설		
	24.12.31 CP 운영내규 · 편람 등 임직원 배포 및 알림		

평가
지표

C1.3 CP 운영에 관한사항의 회사 내·외부 공시·공표

세부
측정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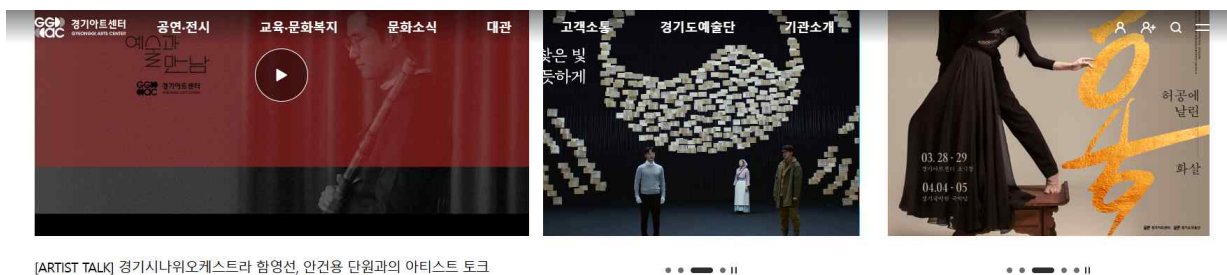
C1.3.1 CP 운영에 관한 사항이 내용, 방법, 주체 등에 제한없이 공시·공표되고 있는가(예: 홈페이지, SNS, 동영상 사이트, 내부공시 등)

01 홈페이지 “공정거래” 신설 및 운영현황 공시

- 경기아트센터는 2024년 홈페이지에 “공정거래” 메뉴를 신설하고 CP 운영의 투명성 제고 및 CP 제도의 대외영향력 확대를 위해 홈페이지에 CP 운영현황을 공시하고 있습니다.

○ 홈페이지 CP 공시 현황

연번	공시일자	공시제목
1	2023. 12. 15.	경기아트센터 공정거래 CP 운영지침 제정
2	2023. 12. 19.	기관장 공정거래 CP 도입 선포식 개최
3	2024. 12. 03.	공정거래 CP 관리자 특별교육 진행
4	2024. 12. 03.	기관장 공정거래 자율준수 선언식 개최
5	2024. 12. 05.	경기아트센터 공정거래 CP 운영내규 제정
6	2024. 12. 26.	경기아트센터 공정거래 CP 운영내규 개정
7	2024. 12. 30.	2024년 경기아트센터 공정거래 CP 편람



[ARTIST TALK] 경기시나리오케스트라 함영선, 안건용 단원과의 아티스트 토크

[홈페이지 “공정거래” 메뉴 신설]

02 자율준수관리자 인사말 신설

- 자율준수관리자 인사말을 신설하여 기관의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제도에 대한 소개 및 기관의 실천의지를 대외 표명하였습니다.



재단법인 경기아트센터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홈페이지 공정거래 항목 및 자율준수관리자 인사말 신설(안)

1. 관련근거
가. 『경기아트센터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운영내규』 제15조, 제27조
나. 재무회계법-2265호(2024. 10. 22.) 「2024년 경기아트센터 공정거래CP 운영계획(안)」

2. 추진목적: 공정거래CP 관련 활동을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하여 기관에 긍정문화를 확산
하고 공정거래CP 운용 현황에 대한 대외연계력 확대

3. 추진개요
가. 추진일정: 2024년 12월 내
나. 추진내용

① 홈페이지 “공정거래” 항목 신설
- 2022-2024년 공정거래 CP 관련 활동 게시(운영내규 및 지침, 선언식, 문합 등)
② 홈페이지 “자율준수관리자 인사말” 신설
- 자율준수관리자의 실천의지를 담은 메시지를 통해 적극적인 활동 및 자정 노력
※ 별첨문서인 “자율준수관리자 인사말(안)” 참조

다. 협결사항: 홈페이지 주관부서와 신설발안을 적극 협의하여 연내 시행 추진

붙임 1. 자율준수관리자 인사말(안) 1부,
2. 경기아트센터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운영내규, 241226 1부,
3. 2024년 경기아트센터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운영계획(안) 1부, 끝.

주최

문서 관리

주요

이: 함

주요

박민제

서명

서순기

주최

주요

이: 함

[홈페이지 “공정거래” 메뉴 및 “자율준수관리자 인사말” 신설]

공정과 상생, 공연예술이 되는 곳, 경기아트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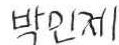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경기아트센터 자율준수관리자 박민제입니다.

경기아트센터는 불공정행위를 사전에 관리하고 협력사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임직원이 자율적으로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공정문화를 확산하고 예방체계를 구축하여 미래의 불확실한 위험 요소에 대비하고자 하는 경기아트센터의 내부준법시스템입니다.

경기아트센터는 협력사에 공정거래의 기회를 부여하고, 상호존중 문화를 기반으로 협력사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경기아트센터 임직원 모두는 경기도를 대표하는 공연예술 기관의 구성원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경영기획실장 박민제



[홈페이지 “자율준수관리자 인사말”]

평가
지표

C1.3 CP 운영에 관한사항의 회사 내 · 외부 공시 · 공표

세부
측정
지표C1.3.2 CP 운영에 대한 사항과 개정된 CP 운영기준 및 절차가 기관의
임직원들에게 올바르게 전달되고 있는가?(배포, 교육, 전달수준
확인)

01 모든 이해관계자에 대한 투명한 공시 · 공표

- 경기아트센터는 CP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내 게시판 및 협조문, 홈페이지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공시 · 공표하여 CP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기아트센터
GYEONGGI ARTS CENTER

공연·전시

교육·문화복지

문화소식

대관

고객소통

경기도예술단

기관소개

홈 > 경영철학 > 공정거래 > 공정거래공시 >

제목

검색

번호	제목	첨부	등록일자	조회수
7	2024년 경기아트센터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편람		2024-12-30	39
6	경기아트센터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운영내규 개정(2024. 12. 26.)		2024-12-26	58
5	경기아트센터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운영내규 제정(2024. 12. 5.)		2024-12-05	44
4	2024년 경기아트센터 공정거래 자율준수 기관장 선언식 개최		2024-12-03	52
3	2024년 경기아트센터 공정거래CP 관리자 특별교육 진행		2024-12-03	34
2	2023년 경기아트센터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도입 기관장 선포식 개최		2023-12-19	54
1	경기아트센터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운영지침 제정(2023. 12. 15.)		2023-12-15	52

2024년 경기아트센터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편람

작성자 | 재무회계팀 등록일 | 2024-12-30 조회수 | 38 제공부서 |

경기아트센터는 공정거래 법규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고 임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공정거래CP 운용현황 및 주요 위반사례를 담은 편람을 제작하였습니다.
경기아트센터는 앞으로도 공정거래CP 제도 및 관련 법규에 대한 인식을 점차 확대하여
공정거래CP를 선도하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첨부서식

File | 2024년 경기아트센터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편람.pdf Download

[홈페이지 CP 공시 현황]

02 CP 교육을 통한 CP 운영기준 및 절차 안내

- CP 운영기준 및 절차에 대한 내용을 교육과정에 포함하여 임직원의 CP 제도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사무직원과 관리자 교육을 구분하여 교육 실효성을 향상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 (사무직원 대상) CP교육 현황

회차	일자	시간	장소	교육내용	이수자
1	24.09.11	14:30~15:00	아트센터 컨벤션홀	① CP 추진배경	93명
2	24.09.12	14:30~15:00	아트센터 컨벤션홀	② CP 운영기준 및 의의	
3	24.09.25	15:30~16:00	국악원 2강습실	③ CP 운영방향 등	



[사무직원 대상 CP 교육 (아트센터)]



[사무직원 대상 CP 교육 (국악원)]

- (관리자 대상) CP교육 현황

회차	일자	시간	장소	교육내용	이수자
1	24.12.03	10:00~11:30	아트센터 회의실	① CP 의의 ② CP 운영기준 ③ CP 도입 필요성 등	21/25명 (84%)



[관리자 대상 CP 교육 (아트센터)]

II

C2. 최고경영진의 지원

평가 지표	C2.1 자율준수관리자의 임명	항목별 국지가중치	0.326
		지표별 국지가중치	0.423
세부 측정 지표	C2.1.1 최고이사결정기구(이사회, 이사회가 없는 기관의 경우에는 최고경영자)가 CP 관리자를 임명하였는가? C2.1.2 임명된 CP 관리자는 CP의 기획, 감독, 성과보고 등과 같은 책임과 권한을 부여받고 독립성을 인정받고 있는가? C2.1.3 CP 관리자의 임명사실 및 역할 등에 관한 사항이 임직원들에게 명확히 공표되었는가?[예: 공표사실 E-mail 통지 및 발령사실 통보 등]		
지표 관리 목표	C2.1.1 내부 규정에 따라 최고경영자가 자율준수관리자를 임명하도록 한다. C2.1.2 내부 규정에 자율준수관리자의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고 업무 수행에 신분보장과 독립성을 인정받도록 한다. C2.1.3 자율준수관리자 임명사실 및 역할 등에 관한 사항을 임직원에게 명확히 공표한다.		
주요 실적	24.12.05	운영내규 제7조, 제8조 자율준수관리자 권한 등 부여	
	24.12.05	운영내규 제10조 자율준수관리자 신분보장 및 독립성 부여	
	24.12.05	운영내규 제11조, 제12조 자율준수협의체 신설 [심의기관]	
	24.12.30	자율준수관리자 임명 [경영기획실장]	
	24.12.31	자율준수관리자 임명 사실 알림 [협조문]	

평가
지표

C2.1 자율준수관리자의 임명

세부
측정
지표

C2.1.2 임명된 CP 관리자는 CP의 기획, 감독, 성과보고 등과 같은 책임과 권한을 부여받고 독립성을 인정받고 있는가?

01 자율준수관리자의 책임과 권한 부여

- 경기아트센터는 CP 운영내규 제7조, 제8조에 따라 자율준수관리자의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여 자율준수관리자의 역할을 명확히하고 CP 제도 발전 및 운영을 내부 규정을 통해 이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자율준수관리자의 권한) 자율준수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닌다.

1. 공정거래CP 및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점검 및 조사권
2. 위 제1호에 해당하는 직원에 대한 시정 요구 권한 <개정 2024. 12. 26.>
3. 위 제1호에 해당하는 직원 중 중대한 법 위반 행위자에 대한 인사위원회 회부 요구 권한 <개정 2024. 12. 26.>
4. 기타 공정거래CP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

제8조(자율준수관리자의 역할)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공정거래CP 운영 관련 예산 편성 및 변경 요구
 2. 사장의 자율준수 의지 및 공정거래 CP 기준과 절차의 대내·외 공표
 3. 자율준수편람의 제·개정
 4. 공정거래CP 교육계획 수립 및 시행
 5. 내부감시체계의 운영
 6. 자율준수협의체의 운영
 7. 직원의 공정거래CP 준수 여부와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점검 및 조사 <개정 2024. 12. 26.>
 8. 위 제7호에 따라 확인된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위반한 직원에 대한 제재 <개정 2024. 12. 26.>
 9. 공정거래CP 우수활동자에 대한 선정 및 인센티브 제도 구축
 10. 공정거래CP 관련 효과성 평가 및 다음연도 CP 운영계획에 반영
- ② 자율준수관리자는 공정거래 문화를 확산하고 공정거래CP 제도를 고도화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다.

[CP 운영내규 제7조, 제8조]

02 자율준수관리자의 신분보장과 독립성 인정

- 경기아트센터는 CP 운영내규 제10조에 따라 자율준수관리자의 신분보장과 독립성을 인정하여 공정거래 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인사상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업무 수행의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0조(신분보장 및 독립성) ① 아트센터는 공정거래CP 업무수행의 객관성, 독립성 확보를 위해 자율준수관리자 및 주관부서에 인사상의 불이익을 부과하여서는 안 된다.
② 자율준수관리자는 공정거래CP 운영에 독립적이며,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의 위험성이 있는 업무를 직접 담당하여서는 안 된다.

[CP 운영내규 제10조]

03 자율준수관리자의 인사정보 표시

- 경기아트센터는 자율준수관리자 임명 사실을 임직원이 상시 확인할 수 있도록 그룹웨어 인사정보(담당업무)에 명시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박민제 관리1급 1000. 경기아트센터 2024A10000. 사장 > 2024A12000. 경영기획실 (실장)
근무정보	
직급	111. 관리1급
직책	111. 실장
직무	관리내역코드도움
담당업무	경영기획실 총괄, 자율준수관리자
① 하위사업	

[그룹웨어 자율준수관리자 인사정보]

평가
지표

C2.1 자율준수관리자의 임명

세부
측정
지표

C2.1.3 CP 관리자의 임명사실 및 역할 등에 관한 사항이 임직원들에게 명확히 공표되었는가?(예: 공표사실 E-mail 통지 및 발령사실 통보 등)

01 자율준수관리자 임명 사실 알림 및 역할 공표

- 경기아트센터는 자율준수관리자 임명 사실을 협조문을 통해 전직원에게 알리고 관련 규정과 편람을 함께 공유하여 기관의 자율준수관리자 역할을 명확히 공표하였습니다.

문서번호	협 조 문	결재 (발신)	주임	필장
재무회계팀-2962	(내선 225 / 주임 문 한)	문 한	이 용	전날 12/31
시행일자	2024.12.31.	결재 (수신)		
수 신	수신자 함조			
발 신	재무회계팀			
제 목	공정거래 자율준수관리자 임명 알림 및 편람, 운영내규 공유			

1. 관련근거

- 가. 「경기아트센터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운영내규」 제6조, 제16조
나. 재무회계팀-2961호(2024. 12. 30.), 재무회계팀-2962호(2024. 12. 30.)

2. 위와 관련하여 경기아트센터 공정거래 자율준수관리자 임명을 전직원에게 알려드리며, 공정거래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주요 위반 사례를 담은 내부 편람 및 공정거래CP 운영에 관한 운영내규를 다음과 같이 공유하오니 확인하시어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경기아트센터 자율준수관리자 임명

소속	직위	성명	임명일	비고
경영기획실	실장	박연재	24.12.30.	-

나. 내부 편람 및 운영내규 공유

구분	주요내용
편람	공정거래CP 제로 소개, 공정거래 법규 위반 주요 사례
운영내규	경기아트센터 공정거래CP 제로 운영 기준

※ 자세한 내용은 별도문서 참조

- 붙임 1. 2024년 경기아트센터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편람 1부,
2. 경기아트센터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운영내규_241226 1부, 끝.

재무회계팀장

수신자 감사실장, 감사팀장, 경영기획실장, 전문위원, 경영혁신TF, 기획조정팀장, 경영지원팀장, 재무회계팀장, 안전실장, 사무처장, 공연사업본부장, 커뮤니케이션팀장, 공연기획팀장, 부대기술팀장, 경기도 부들만 공연활성화TF, 예술안전본부장, 예술안전운영팀장, 국악운영팀장, 경기도국악, 경기도부들만, 경기시나리오제스트림, 경기문화재단, 장애인오케스트라운영팀장, 대외협력본부장, 대외사업팀장, 경기발스앙상블, 창작사업팀장

[협조문 “자율준수관리자 임명 알림 및 편람, 운영내규 공유”]

II

C2. 최고경영진의 지원

평가 지표	C2.2 예산과 인력의 지원	항목별 국지가중치	0.326
		지표별 국지가중치	0.577
세부 측정 지표	C2.2.1 CP 운영을 위해 필요한 인력과 예산이 기관으로부터 충분히 지원 · 집행되었는가? C2.2.2 CP 운영을 위한 전담조직을 구성하였거나 이를 전담할 수 있는 부서를 지정하고 있는가?		
지표 관리 목표	C2.2.1 CP 운영을 위해 필요한 인력과 예산이 자율준수관리자 및 CP 전담부서에 명확히 구분되어 지원 · 집행되도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인사부서에 예산을 활용하도록 한다. C2.2.2 CP 운영을 위한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자율준수관리자의 지시 · 통제 받도록 한다.		
주요 실적	24.12.05 자율준수관리자 및 전담부서 지정을 위한 “운영내규” 제정		
	24.12.05 공정거래 심의를 위한 “자율준수협의체” 신설		
	24.12.31 자율준수관리자 임명 [경영기획실장]		

평가
지표

C2.2 예산과 인력의 지원

세부
측정
지표

C2.2.1 CP 운영을 위해 필요한 인력과 예산이 기관으로부터 충분히 지원 · 집행되었는가?

01 CP 운영을 위한 전담인력 확보

- 경기아트센터는 전담인력이 2023년 총괄 팀장, 담당자 2명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2024년 자율준수관리자를 임명하여 자율준수관리자, 총괄 팀장, 담당자 총 3명으로 전담인력이 +1명 증가하였습니다.

○ CP 전담현황

(2024. 12. 31. 기준)

구 분	소속	직위	성명	임명(담당)일
자율준수관리자	경영기획실	실장	박민제	2024. 12. 30.
주관부서 총괄	재무회계팀	팀장	이O왕	2023. 11. 14.
주관부서 담당자	재무회계팀	주임	문O한	2023. 11. 14.

02 공정거래 CP 제도 활성화를 위한 예산 확보

- 경기아트센터는 2024년 출연금 예산 감액으로 인하여 CP 별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인사부서의 관서운영비, 교육비 등을 활용하여 CP 제도 구축 및 활성화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사용하였습니다.

○ 출연금수익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변동액	2024년 (당기)	2023년 (전기)
출연금수익	▽ 338,612	39,810,441	40,149,053

- 2025년에는 CP 별도 예산을 확보하여 CP 제도가 기관에 장기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 또한, 경기아트센터는 「업무분장 내규」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라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운영에 관한 전담조직을 재무회계팀으로 지정하고 CP 운영 내규 제8조, 제9조에 따라 자율준수관리자와 주관부서의 역할을 명시하여 그 책임과 권한을 규정화하고 있습니다.

III. 내규

업무분장 내규

업무분장 내규

3. 재무회계팀

- 가. 법인 결산 및 회계감사 업무
- 나. 수입·지출업무 및 자금관리에 관한 업무
- 다. 각종 세무신고(부가가치세 및 원천세, 법인세 등)
- 라. 공사·용역·물품계약 등 지출원인행위 업무
- 마. 아트센터의 재산(임대업체 관리 포함) 및 물품 관리 업무
- 바. 아트센터 자금관리에 관한 업무
- 사. 법인카드 관리
- 아. 임대(입주)시설 관련 업무
- 자. 국내외 출장 여비 지출
- 차. 지방재정공제회 관련 업무
- 카. 상품권 관리운영
- 타.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운영
- 파. 법정세무회계 및 기타 신고 사무(예술고용보험 신고, 신원재정보증보험 등)

[업무분장 내규 제3조제2항제3호]

제8조(자율준수관리자의 역할)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공정거래CP 운영 관련 예산 편성 및 변경 요구
 2. 사장의 자율준수 의지 및 공정거래 CP 기준과 절차의 대내·외 공표
 3. 자율준수편람의 제·개정
 4. 공정거래CP 교육계획 수립 및 시행
 5. 내부감시체계의 운영
 6. 자율준수협의체의 운영
 7. 직원의 공정거래CP 준수 여부와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점검 및 조사
 8. 위 제7호에 따라 확인된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위반한 직원에 대한 제재
 9. 공정거래CP 우수활동자에 대한 선정 및 인센티브 제도 구축
 10. 공정거래CP 관련 효과성 평가 및 다음연도 CP 운영계획에 반영
- ② 자율준수관리자는 공정거래 문화를 확산하고 공정거래CP 제도를 고도화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다.

제9조(주관부서의 역할) ① 주관부서는 자율준수관리자의 업무수행을 보좌하고, 자율준수관리자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한다.

- ② 주관부서는 업무추진 현황을 자율준수관리자에게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보고하며, 공정거래CP 운영에 중대한 변화나 영향을 끼칠 사안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보고할 수 있다.

[CP 운영내규 제8조, 제9조]

○ 경기아트센터 조직도



02 공정거래 심의를 위한 자율준수협의체 신설

- 경기아트센터는 CP 운영내규 제11조, 제12조에 따라 공정거래 CP 운영과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및 예방활동에 관한 주요 사안을 심의하는 자율준수협의체를 신설하여 공정거래 CP 제도 발전 및 공정거래 위반으로부터 임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별도 기구를 구성하였습니다.

제3절 자율준수협의체

제11조(협의체의 구성) ① 아트센터는 공정거래CP 운영과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및 예방활동에 대한 주요 사안을 심의하는 협의체를 조직할 수 있다.

② 협의체의 위원장은 자율준수관리자로 한다. 단, 자율준수관리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율준수관리자가 사전에 지명한 자가 위원장을 수행한다.

③ 협의체는 자율준수관리자를 포함하여 본부장급 이상으로 총 6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4. 12. 26.>

④ 협의체의 간사는 주관부서의 부서장으로 하고 운영은 주관부서가 한다.

제12조(협의체의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며 협의체 운영을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안건의 당사자 또는 관련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회의안건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관련부서에 요구할 수 있다.

③ 협의체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사안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⑤ 협의체는 아트센터와 소속 직원을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4. 12. 26.>

1. 공정거래CP 운영계획 및 운영결과에 관한 사항
2. 공정거래CP 제도와 정책에 관한 사항
3.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의 판단이 어려운 사항
4. 공정거래CP 관련 리스크 점검 및 효과성평가에 관한 사항
5. 공정거래CP 우수활동자 선정 및 인센티브에 관한 사항

[CP 운영내규 제11조, 제12조]

II

D1. 자율준수편람

평가 지표	D1.1 내용의 충실성	항목별 국지가중치	0.061
		지표별 국지가중치	0.440
세부 측정 지표	D1.1.1 CP 운영기준(자율준수편람 등)에 해당 부문이 준수하여야 하는 공정거래 법규 및 필수 법규의 개요와 제재기준이 소개되어 있는가? D1.1.2 CP 운영기준(자율준수편람 등)에 임직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례/판례, 행동지침, 질의응답 등이 수록되어 있는가? D1.1.3 CP 운영기준(자율준수편람 등)이 각 업무 또는 부문별로 구분되고, 각 분야별 자율점검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이 제공되어 있는가?		
지표 관리 목표	D1.1.1 자율준수편람에 우리 기관이 준수하여야 하는 공정거래 법규 및 필수 법규에 대한 개요와 제재 기준을 포함한다. D1.1.2 자율준수편람에 임직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례/판례, 행동지침, 질의응답 등을 수록한다. D1.1.3 자율준수편람이 각 업무 또는 부문별로 구분되고, 각 분야별 자율점검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공한다.		
주요 실적	24.12.20 부서별 효과성평가 시행 (부서별 자율점검)		
	24.12.30 경기아트센터 자율준수편람 제작		
	24.12.31 경기아트센터 자율준수편람 전직원 배포 (협조문)		

제2절 | 주요 법령 및 조문별 업무가이드

1981년 이후 현재까지 공공기관의 법위반 사례를 분석하여 법위반 가능성이 높은 법령 및 행위유형을 정리하였습니다. 법령에 대한 자세한 해석 및 예시, 법위반 사례는 4장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업무상 유의사항(Do&Don't)
공정거래법 (불공정 거래행위)	[Don't] - 사실상[고] 합리적인 기준없이 거래대상자를 선정하여서는 안 됩니다. - 다른 목적(예컨대 판매촉진) 달성을 위해 거래를 중단하거나 거래량을 현저히 감소시키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경쟁사업자와 거래한다는 등의 사유로 거래를 거절하여서는 안 됩니다. [Do] -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더라도 거래상대방이 불합리하다고 주장하는 경우 CD관리부서와 협의를 거쳐 업무를 처리하기 바랍니다. - 거래를 거절할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그 사유가 거래거절이 위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될 정도로 충분한 것인지 CD관리부서와 사실 여부를 거쳐야 합니다. - 문서로 접수된 거래계약 요청을 거절하거나 기존의 거래를 중단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적으로 적시한 문서로 하고, 거래상대방에게 설명을 하여야 합니다. - 거래를 중단할 경우에는 거래 상대방이 선금결제 확보 등 준비를 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을 주고 사전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전사 공통	[Don't] - 공공기관은 독·과점적 대규모 발주자 또는 수요자로서 거래상 지위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그 지위를 이용하여 각종 공사채, 물품구매, 용역 발주과정에서 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특히 거래상대방에게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서 경제적 이익(예컨대 경표, 불이익배당행위, 부당한 거래중단 또는 경쟁사업자 배제) 같은 행위를 하지 않도록 주의 하여야 합니다.
② 거래상 지위남용(일반)	[Don't] - 공공기관은 독·과점적 대규모 발주자 또는 수요자로서 거래상 지위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그 지위를 이용하여 각종 공사채, 물품구매, 용역 발주과정에서 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특히 거래상대방에게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서 경제적 이익(예컨대 경표, 불이익배당행위, 부당한 거래중단 또는 경쟁사업자 배제) 같은 행위를 하지 않도록 주의 하여야 합니다.
③ 구입장제 (거래상대방에게 자기의 상품·용역의 구입을 강제하는 행위)	[Don't] - 어떤 상황에서도 합리적이고 명확한 근거없이 거래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상품·용역을 구입하도록 하여서는 안 됩니다. [Do] - 거래상대방이 상품·용역을 주문할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근거를 남겨두어야 합니다. 서면은 원칙적으로 거래 계약 또는 통지서 거래상대방에게 교부되어야 합니다.

구분	업무상 유의사항(Do&Don't)
발주 부서	가격단합 [Don't] - 사업자는 과당 경쟁금하나 정부고가격의 준수 등 명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경쟁사업자간에 일괄가격 이하로 응찰하지 않도록 함하거나 어떤 형태로든 가격과 관련된 합의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공공기관의 발주 관련 입찰원들이 응찰자들의 과당경쟁 방지 등의 명분으로 가격과 관련된 지정을 제시하거나 응찰자들간의 합의를 유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입찰단합 [Do] - 공공기관은 입찰에 참여하는 사업자들이 단합하지 않도록 입찰의 전 과정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사업자들에게 "입찰단합 방지를 위한 유의사항" 및 "자진신고제도"에 대해 알려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Don't] - 공공기관의 입찰원이 입찰단합에 관여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입찰 단합을 교사하거나 방조한 행위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입찰단합은 경성카드면 유행이기 때문에 단합의 외형만 갖추더라도 단합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단합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정보교관행위 [Don't] - 공공기관의 입찰원이 어느 기업과 비밀에 부치고 경쟁의 핵심요소인 가격인상 계획이나 인상내역 같은 민감한 정보를 입수한 경우 이를 그 기업의 경쟁사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됩니다. (가격, 판매조건, 이익률, 판매량, 시장점유율, 판매구역뿐만 아니라 매출, 영업지원비, 홍보 및 판촉 계획, 신제품 출시 계획 등이 모두 경쟁핵심 요소에 포함). 사업자에게 단합이 발생한 경우 냉조행위로 추정될 위험이 있습니다. [Do] - 사업자간 모임에 불가피하게 참석할 경우 접촉 경위나 모임의 성격, 대화내용 등을 명확히 기록하여 근거를 남겨두어야 합니다.
계약 부서 / 발주 부서 / 시설 관리 부서	약관법 (불공정 약관조항 사용금지) 약관의 명시·실명외무 개별약정 우선원칙 및 해석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Don't] - 관치적으로 약관의 내용보다 고객에게 불리한 내용이 개별약관은 제정 하여서는 안 됩니다. - 약관의 해석과 관련된 분쟁 발생시 공공기관에게 유리한 해석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작성자가 불이익의 원칙). [Don't] - 공공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약관과 관련하여 고객의 권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는 내용은 계약체결시에 설명을 하거나 고객이 쉽게 인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게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약관의 내용과 다른 약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그 내용이 거래상대방에게 약관의 내용보다 불리하거나 유리할 경우 그 근거를 반드시 검토하여 문서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자율준수편람 “주요 법령 및 조문별 업무가이드”]

제23조(직원 제재)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공정거래CP 운영과정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확인하였을 경우, 해당 직원에 대한 징계 및 전보 등 제재조치를 인사위원회에 요구한다.

1. 직원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행위임을 인지하였음에도 자율준수관리자와 협의없이 업무를 강행한 경우
 2. 직원의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행위로 인하여 아트센터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과징금, 검찰 고발 및 그에 준하는 처분을 받았거나, 법원의 결정으로 인하여 아트센터에 손해배상 등 금전적 피해를 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위 제1호 또는 제2호 행위로 인해 제재조치를 받은 이후에도 동일하거나 유사한 위반 행위를 반복하는 과정이 자율준수관리자로부터 확인된 경우
- ② 자율준수관리자는 직원이 위 제1항 이외의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행위를 한 경우 또는 공정거래CP 활동에 불성실하게 참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원에게 경고하고 그 사실을 해당 직원의 상급자에게 통지한다.
- ③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자에 대한 제재절차, 방법, 기준 등 이 내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경기아트센터 상벌규정」 및 「경기아트센터 임직원 행동강령」에 따른다.

[자율준수편람 “공정거래 관련 법규”]

평가
지표

D1.1 내용의 충실성

세부
측정
지표

D1.1.2 CP 운영기준(자율준수편람 등)에 임직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례 /판례, 행동지침, 질의응답 등이 수록되어 있는가?

01 주요 위반사례 소개 및 업무가이드 수록

- 경기아트센터는 자율준수편람에 공정거래 관련 법규 주요 위반사례 및 업무가이드를 수록하여 임직원이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공정거래 위반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 업무수행 단계별 이행방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자율준수편람 목차

구분	제목	페이지
-	경기아트센터 자율준수 선언문	-
제1장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소개	1
제2장	아트센터의 CP	6
제3장	업무가이드(Do&Don't)	15
	- 거래단계별 업무가이드(계약/이행/대금지급/계약종료)	15
	- 주요 법령 및 조문별 업무가이드	20
제4장	행위별/부서별 공정거래 관련 법규 및 위반 주요 사례	25
	- [전사공통] 불공정거래행위(공정거래법)	26
	- [발주부서] 부당한 공동행위(공정거래법)	58
	- [계약/발주/시설관리부서] 불공정 계약행위(약관법)	75
	- [계약/발주부서]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하도급법)	100
	- [사업부서] 부당한 표시·광고행위(표시광고법)	129
첨부1	공정거래위원회 및 사건처리 절차에 대한 이해	135
	- 공정거래위원회 사건처리 절차	136
	-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유형	136
첨부2	경기아트센터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운영내규	137

04. 행위별/부서별 공정거래 관련 법규 및 위반 주요 사례

제1절 | 불공정거래행위(공정거래법)

일러두기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규정이 많아 참혹한 불공정거래행위는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거래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힘을 남용할 경우에 해당되기 쉬운 행위 유형입니다. 소위 “갑론과 직결”인 행위유형이라는 점에서 공공기관의 임직원들은 불공정거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합니다.

불공정거래행위 중 공공기관의 업무와 관련이 되는 행위 유형은 “거래상 지위 남용”이고 실제 공정위에서 법사제 후 공공기관에 대해 적용한 법규 중 대표적인 행위 유형입니다. 다만 실제 법처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주의할 필요가 있는 것은 법위반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에서 하기는 것이라 여기에서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전반을 다루고 있습니다.

공정거래법에 규정된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에 해당한다고 곧바로 법위반은 아니나 단속위반에 대해 별도로 심사를 하게 됩니다(공정위에 신고가 되거나 적권조사가 이루어진 경우 법위반의 혐의를 받게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거래상대방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는 판단을 제기할 경우에는 반드시 CP주권부서와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1. 개요

1.1 개념

불공정거래행위(Unfair Business Practices)라 한은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합니다.

일정한 행위 유형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제10호까지 거래거절, 차별적 취급, 거래상 지위남용, 부당한 지원 등 9가지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 세부유형(20가지) 및 기준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거래의 개념	불공정거래행위에서의 거래란 동상의 매매와 같은 개별적인 계약체제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넓은 의미로서 사업활동을 위한 수단 일련 또는 거래실사를 뜻하는 것(대법원 2003주 10299)입니다.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	경쟁에 약영향을 미치거나 공정한 경쟁의 기반이 되는 사업자의 자율적 의사결정을 억압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의미

[자율준수편람 “공정거래 관련 주요 위반사례”]

03. 업무가이드(Do&Don't)

제1절 | 거래단계별 업무 가이드

일러두기

업무 가이드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의 일부 근거에 대해서는 이 편람 제4장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정거래 관련 연도 이슈에 대해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거나 기준에 대한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CP주권부서와 협의하여 업무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용어설명] 수탁사의 고객

공공기관의 거래상대방은 다음 크게 두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 * 수탁사: 공공기관의 사업,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
 - * 고객: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인쇄, 시설이용, 각종 지원사업 등)를 이용하는 자
- 지원사업과 관련된 계약의 경우 지원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사업자는 수탁사에 해당되고, 지원사업의 수탁자는 고객에 해당합니다.

1. 계약체결단계

공공기관의 계약체결은 입찰에 의한 것과 수의계약에 의한 것이 있습니다. 계약체결단계에서는 입찰을 실시할 경우에 특히 주의할 행위와 수의계약 시 주의할 내용 그리고 공통적인 주의사항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1 입찰에 의한 경우

업무가이드	관련법규 (참조페이지)
- 입찰을 실시할 경우 입찰에 참여한 사업자들이 나열 거처, 낙찰자를 입찰으로 결정하는 행위(입찰결과통지)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입찰 및 입찰으로 판단될 경우 계약무효 및 손해배상 등의 문제가 있다는 점을 사전에 명시적으로 공지하고 계약내용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사업자에게 입찰을 가능케 하기 위해 물리력을 세우도록 권유하는 것으로 오인될 표현을 하거나 관련 사업자와 접촉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입찰단합 (p.79) 입찰단합 (p.79)

제3절 | 불공정 계약 행위(약관법)

일러두기

공공기관의 경우 수탁사, 고객과의 거래에 적용되는 계약조항은 대부분 미리 마련해 둔 표준 약항에 의하기 때문에 약관변상 약관에 해당합니다. 실제 공정위 적용사례도 많은 법규이고 계속 개선해 왔기 때문에 불공정약관조항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외부 환경의 변화에 따라 약항에는 불공정하지 않다고 판단된 조항도 현재 시점에서는 불공정한 것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특정 거래에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불공정 소지가 없는지 미리 점검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은 사용하고 있는 약항에 대해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특약 체결사에는 불공정 계약조항이 사용되지 않도록 약관변의 관점에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1. 약관법 개요

1.1 약관의 개념 및 규제 이유

해설

약관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합니다(법 제2조 제1호). 실무상 “약관”이란 명칭이 붙은 경우도 있지만 이러한 명칭이 아니더라도 반복적인 계약에 사용할 목적으로 사업자가 미리 준비해 둔 계약내용이 있으면 약관법상의 약관 개념에 해당됩니다.

약관은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한다는 점에서 작성자의 이익이 과도하게 반영될 위험이 있고, 특히 약관이 사용되는 거래가 각종 보험, 여객 및 화물 운송, 전기 및 전화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제공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아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1.2 약관법의 규제 체계

해설

약관법은 불공정약관이 작성되고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계약에 포함되지 않도록 편집단계에서 통제하고, 편집이 되어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가 된 경우에는 해석을 통해 불공정성을 제거합니다.

한편 약관의 내용이 불공정하여 그 효력을 부인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구체적 분쟁에서는 법원이 해당 약관을 심사하여 무효로 선언하게 되고 공정위에서는 구체적 분쟁과 관련없이 약관의 내용만 심사하여 불공정하다고 판단되면 당해 약관의 사용을 중지하도록 사업자에게 권고 또는 명령을 하게 됩니다.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

경쟁에 약영향을 미치거나 공정한 경쟁의 기반이 되는 사업자의 자율적 의사결정을 억압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의미

- * 계약이행단계에서는 거래상 지위남용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 * 거래상 지위남용행위는 소위 “갑질”에 해당하는 것으로 거래상대방의 불이익이 공공기관의 지위 남용에 기인한 경우에는 해당될 수 있는 행위입니다.
- * 하도급법에서 정하고 있는 원사업자의 준수 의무 및 금지행위는 위탁업무에 있어 공정한 거래의 기준을 제시한 것이므로 공공기관이 하도급법상 원사업자가 아니더라도 이를 위반할 경우 거래상 지위 남용에 해당될 여지가 있다는 점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업무가이드	관련법규 (참조페이지)
* 약관의 내용을 고객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여서는 안 됩니다.	약관 해석원칙 (p.92)
* 약관의 내용에 해석의 여지가 있을 때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합니다.	약관 해석원칙 (p.92)
* 입찰입찰(예컨대 카페, 식당 등)과 판매하는 물품의 종류, 가격, 서비스 등에 대해 사전에 협의한 내용과 달리 관여하여서는 안 됩니다.	경쟁간섭 (p.61)
* 예산사정 등의 이유로 당초 계약물량(과입찰)을 줄여야 할 경우 수탁사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불이익 제공 (p.55)
* 시설공사에 대한 설계변경을 하면서 계약금액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 예산상의 이유로 변경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불이익 제공 (p.55)
*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수탁사의 요청이 없이도 계약 변경을 하여야 합니다.	불이익 제공 (p.55)
* 공공기관의 사정으로 선시공을 지시하고 계약은 사후에 체결하면서 기공일은 계약체결일로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 입찰금액에 지급률에 따라 상당기간 동안 거래상대방에게 공사진척도에 비해 기공료를 늦게 지급하면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불이익 제공 (p.55)
* 납품물량에 따라 납품일이 다음에도 불구하고 최종납품분을 기준으로 입찰금액으로 지체금전을 부과하는 등 과도하게 지체금전을 부과하여서는 안 됩니다.	불이익 제공 (p.55)
* 공사시공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시공업체에게 전적으로 책임지우는 등 손해배상책임을 부당하게 전가하여서는 안 됩니다.	불이익 제공 (p.55)

3. 대금지급단계

- * 공공기관은 실제 계약 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비록 예산관련하여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를 반영해 주어야 합니다.
- * 과오납으로 인하여 거래상대방에 대해 부당이익환수를 해야 할 일이 있더라도 하도급법상의 직접 지급의무가 발생한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지급한 후 부당이익환수는 별개의 절차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자율준수편람 “거래단계별 업무가이드”]

평가
지표

D1.1 내용의 충실성

세부
측정
지표

D1.1.3 CP 운영기준(자율준수편람 등)이 각 업무 또는 부문별로 구분되고, 각 분야별 자율점검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이 제공되어 있는가?

01 분야별 자율점검을 위한 업무가이드 수록

- 경기아트센터는 자율준수편람에 공통사항, 발주부서, 계약부서, 시설관리부서 등 분야별로 유의해야할 사항을 수록하여 업무 수행 중에 공정거래 관련 사항을 자율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03. 업무가이드(Do&Don't)

제1절 | 거래단계별 업무 가이드

일러두기

업무 가이드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의 법적 근거에 대해서는 이 편람 제4장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정거래와 관련된 이슈에 대해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거나 기준에 대한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CP주관부서와 협의하여 업무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용어설명] 수탁사와 고객

공공기관의 거래상대방은 다음 크게 두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 * 수탁사: 공공기관의 사업,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
- * 고객: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임대차, 시설이용, 각종 지원사업 등)를 이용하는 자

지원사업과 관련한 계약의 경우 지원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사업자는 수탁사에 해당되고, 지원사업의 수행자는 고객에 해당됩니다.

1 계약체결단계

공공기관의 계약체결은 입찰에 의한 것과 수의계약에 의한 것이 있습니다. 계약체결단계에서는 입찰을 실시할 경우에 특히 주의할 행위와 수의계약 시 주의할 내용 그리고 공통적인 주의사항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1 입찰에 의한 경우

업무가이드	관련법규 (참조페이지)
* 입찰을 실시할 경우 입찰에 참여한 사업자들이 낙찰 가격, 낙찰자 등을 입찰으로 결정하는 행위(입찰금환급금)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경 및 담합으로 판단될 경우 계약무효 및 손해배상 등의 불이익이 있다는 점을 사전에 명시적으로 공지하고 계약내용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사업자에게 입찰을 가능케 하기 위해 물리적으로 세우도록 권유하는 것으로 오인될 표현을 하거나 관련 사업자와 접촉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입찰단함 (p.79) 입찰단함 (p.79)

- * 계약이행단계에서는 거래상 지위남용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 * 거래상 지위남용행위는 소위 "갑질"에 해당하는 것으로 거래상대방의 불이익이 공공기관의 지위 남용에 기인한 경우에는 해당될 수 있는 행위입니다.
- * 하도급법에서 정하고 있는 원사업자의 준수 의무 및 금지행위는 위탁업무에 있어 공정한 거래의 기준을 제시한 것이므로 공공기관이 하도급법상 원사업자가 아니더라도 이를 위반할 경우 거래상 지위 남용에 해당될 여지가 있다는 점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업무가이드	관련법규 (참조페이지)
* 약관의 내용을 고객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여서는 안 됩니다.	약관 해석원칙 (p.92)
* 약관의 내용에 해석의 여지가 있을 때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합니다.	약관 해석원칙 (p.92)
* 임금결제(예컨대 카페, 식당 등)가 관여하는 물품의 종류, 가격, 서비스 등에 대해 사전에 합의한 내용과 달리 관여하여서는 안 됩니다.	경쟁간접 (p.61)
* 예산사정 등의 이유로 당초 계약물량(과업량)을 줄여야 할 경우 수탁사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불이익 제공 (p.55)
* 시설공사에 대한 설계변경을 하면서 계약금액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 예산상의 이유로 변경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불이익 제공 (p.55)
*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수탁사의 요청이 없어도 계약 변경을 하여야 합니다.	불이익 제공 (p.55)
* 공공기관의 사정으로 전시공을 저지하고 계약은 사후에 체결하면서 기성고는 계약체결일로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 입찰적으로 지급함에 따라 상당기간 동안 거래상대방에게 공사진척도에 비해 가성고를 낮게 지급하면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불이익 제공 (p.55)
* 납품물량에 따라 납품일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최종납품분을 기준으로 입찰적으로 지체상금을 부과하는 등 과다하게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안 됩니다.	불이익 제공 (p.55)
* 공사시공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시공업체에게 전적으로 책임자주는 등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관가하여서는 안 됩니다.	불이익 제공 (p.55)

3 대금지급단계

- * 공공기관은 실제 계약 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비록 예산관련하여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를 반영해 주어야 합니다.
- * 파오납으로 인하여 거래상대방에 대해 부당이익환수를 해야 할 일이 있더라도 하도급법상의 직접 지급의무가 발생한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지급한 후 부당이익환수는 별개의 절차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자율준수편람 “거래단계별 업무가이드”]

02 효과성평가를 통한 부서별 리스크 자율진단 시행

- 효과성평가는 CP 운영내규 제25조에 따라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운영내규와 편람을 통해 평가 기준을 안내하고 협조문을 통해 부서별 세부적인 참여 방법을 설명하였습니다.
- 효과성평가는 총 7일간 진행되어 발생가능성, 심각도를 상/중/하 3단계로 구분하고 최종적인 리스크 정도를 자체적으로 진단하도록 하였습니다.

제25조(효과성 평가)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공정거래CP를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공정거래CP 운영에 대한 효과성 평가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 점검하고 그 결과를 활용하여 개선 및 발전방향을 도모한다.

② 효과성 평가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평가한다.

1. 공정거래CP에 대한 직원의 이해 및 인식 수준
2. 연간 공정거래CP 운영계획 대비 실제 시행 성과
3. 내부감시체계 운영성과
4. 공정거래CP 관련 교육성과
5. 공정거래 관련 법 위반 행위 발생 빈도 및 영향
6. 공정거래CP 운영에 대한 직원의 만족도
7. 공정거래CP 규정 및 자율준수편람 등 기준과 절차의 제·개정을 통한 제도개선 성과
8. 공정거래CP 관련 예산 및 인력의 적정성

③ 자율준수관리자는 효과성 평가의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CP 등급 평가를 신청하여 평가등급을 취득하거나 외부 전문가에게 효과성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CP 운영내규 제25조]

6. 해당 부서는 업무 중 발생할 수 있는 **공정거래 리스크**를 아래 서식에 맞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개]

주요업무	공정거래 리스크	이해관계자	발생가능성 [상/중/하]	발생시 심각도 [상/중/하]	리스크 정도 [상/중/하]

※ 6번 설문은 아트센터에 발생 우려가 있는 공정거래 리스크를 사전에 파악하고자 함이며, 최종 리스크 정도는 발생가능성과 발생시 심각도를 자체적으로 고려하여 상/중/하 중 하나를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 제출 전 체크박스를 다시 한 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과성평가 설문지 “공정거래 리스크 자율진단”]

문서번호	협 조 문 (내선 225 / 주임 등 한)	결재 (발신)	주임	팀장		
재무회계팀-2831 7		결재 (수신)	문 한	이: '왕 전결 12/20		
시행일자	2024.12.20.					
수 신	수신자 참조					
발 신	재무회계팀					
제 목	2024년 경기아트센터 공정거래CP 효과성평가 부서별 설문 참여 요청					

1. 관련근거

- 가. 「경기아트센터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운영내규」 제25조
나. 재무회계팀-2831호(2024. 12. 20.) 「2024년 경기아트센터 공정거래CP 효과성평가 시행계획(안)」

2. 위 근거에 따라 2024년 경기아트센터 공정거래CP 효과성평가를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자 하오니 각 부서에서는 설문에 참여하여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추진목적: 부서별 종합적인 의견을 수렴하여 공정거래 리스크 예방 및 개선방향 모색
나. 참여방법: 붙임문서인 "설문지"를 부서별로 작성하여 기한 내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
- 제출기한: 2024. 12. 26.(목) 18:00 까지 / 담당자 이메일: mkh@ggac.or.kr

다. 설문내용

연번	질문	설문방법	비고
1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제도에 대한 인지 정도	5점척도	-
2	현재 아트센터내 공정거래 관련 위반 행위의 발생 정도	5점척도	-
3	2024년 공정거래CP 교육의 만족도 정도 - 재무회계팀 조직역량 강화교육 중 CP (9.11, 9.12, 9.25) / 관리자 특별교육(12.3)	5점척도	-
4	공정거래CP의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만족도 정도	5점척도	-
5	위의 설문 또는 공정거래CP 운영 관련 개선사항	서술식	-
6	부서별 공정거래 리스크 진단	별도양식	-

붙임 설문지, 2024년 공정거래CP 효과성평가 1부, 끝.

재무회계팀장

수신자 감사팀장, 전문위원 경영혁신TF, 기획조정팀장, 경영지원팀장, 재무회계팀장, 안전시설팀장, |
커뮤니케이션팀장, 공연기획팀장, 무대기술팀장, 경기도 무용단 공연활성화TF,
예술단운영팀장, 국악운영팀장, 경기도국단, 경기도무용단, 경기시나리오케스트라,
경기필하모닉, 장애인오케스트라운영팀장, 대외사업팀장, 경기팝스앙상블, 정책사업팀장

[협조문 “효과성평가 부서별 설문 참여 요청”]

II

D1. 자율준수편람

평가 지표	D1.2 활용 편의성	항목별 국지가중치	0.061
		지표별 국지가중치	0.372
세부 측정 지표	D1.2.1 임직원들이 CP 운영기준(자율준수편람 등)을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접근하여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 활용 여부를 점검하고 있는가?		
지표 관리 목표	D1.2.1 임직원들이 자율준수편람을 시간과 장소의 제약없이 접근하여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활용여부를 점검한다.		
주요 실적	24.12.30 자율준수편람 홈페이지 공시		
	24.12.31 자율준수편람 전직원 공유 (내부 협조문)		

평가
지표

D1.2 활용 편의성

세부
측정
지표

D1.2.1 임직원들이 CP 운영기준(자율준수편람 등)을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접근하여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 활용 여부를 점검하고 있는가?

01 내부 협조문을 통한 자율준수편람 전직원 배포

- 경기아트센터는 자율준수편람 및 운영내규를 내부 협조문을 통해 배포하여 전직원이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공유하였습니다.

문서번호	협 조 문 (내선 225 / 주임 문 한)	결재 (발신)	주임	팀장	
재무회계팀-2962		문: 한	이: 왕	준: 12/31	
시행일자	2024.12.31.	결재 (수신)			
수 신	수신자 참조				
발 신	재무회계팀				
제 목	공정거래 자율준수관리자 임명 알림 및 편람, 운영내규 공유				

1. 관련근거

- 가. 『경기아트센터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운영내규』 제6조, 제16조
나. 재무회계팀-2961호(2024. 12. 30.), 재무회계팀-2962호(2024. 12. 30.)

2. 위와 관련하여 경기아트센터 공정거래 자율준수관리자 임명을 전직원에게 알려드리며, 공정거래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주요 위반 사례를 담은 내부 편람 및 공정거래CP 운영에 관한 운영내규를 다음과 같이 공유하오니 확인하시어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경기아트센터 자율준수관리자 임명

소속	직위	성명	임명일	비고
경영기획실	실장	박민재	24.12.30.	-

나. 내부 편람 및 운영내규 공유

구분	주요내용
편람	공정거래CP 제도 소개, 공정거래 법규 위반 주요 사례
운영내규	경기아트센터 공정거래CP 제도 운영 기준

※ 자세한 내용은 붙임문서 참조

- 붙임 1. 2024년 경기아트센터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편람 1부,
2. 경기아트센터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운영내규_241226 1부, 끝.

재무회계팀장

수신자 감사실장, 감사팀장, 경영기획실장, 전문위원 경영혁신TF, 기획조정팀장, 경영지원팀장,
재무회계팀장, 안전시설팀장, 사무처장, 공연사업본부장, 커뮤니케이션팀장, 공연기획팀장,
무대기술팀장, 경기도 무용단 공연활성화TF, 예술단본부장, 예술단운영팀장,
국악운영팀장, 경기도국단, 경기도무용단, 경기시나리오케스트라, 경기발하모닉,
장래인오케스트라운영팀장, 대외협력본부장, 대외사업팀장, 경기합스양상블, 정책사업팀장

[협조문 “자율준수편람 및 운영내규 공유”]

02 자율준수편람 홈페이지 공시

- 임직원을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가 시간과 장소의 제약없이 접근하여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자율준수편람을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자율준수편람 공시”]

03 자율준수편람 활용여부 점검

- 경기아트센터는 자율준수편람을 2024. 12. 30. 최초 제작하여 임직원에게 배포하였고, 활용여부 점검은 2025년 효과성평가와 함께 진행될 예정입니다.

II

D1. 자율준수편람

평가 지표	D1.3 지속적 개선 여부	항목별 국지가중치	0.061
		지표별 국지가중치	0.188
세부 측정 지표	D1.3.1 CP 운영기준[자율준수편람 등]이 해당 부문이 준수하여야 하는 공정거래 법규 및 필수 법규, 관련 정책의 최근 변경사항을 지속적으로 반영하여 개정되었는가?		
지표 관리 목표	D1.3.1 자율준수편람은 기관이 준수하여야 하는 공정거래 법규 및 필수 법규, 관련 정책의 최근 변경사항을 지속적으로 반영하여 개정한다.		
주요 실적	24.12.30 2024년 자율준수편람 제작 [최초 도입]		

평가
지표

D1.3 지속적 개선 여부

세부
측정
지표

D1.3.1 CP 운영기준(자율준수편람 등)이 해당 부문이 준수하여야 하는
공정거래 법규 및 필수 법규, 관련 정책의 최근 변경사항을
지속적으로 반영하여 개정되었는가?

01 자율준수편람 활용을 위한 전직원 배포

- 경기아트센터는 2024년에 자율준수편람을 최초 도입하여 최근 공정거래 법규 및 필수 법규, 관련 정책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 제작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부터 자율준수편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최근 법규 및 정책에 관한 사항이 지속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 자율준수편람 현황

연번	일 자	제 목	비 고
1	2024. 12. 30.	2024년 공정거래 CP 자율준수편람	최초 도입

2 우리 기관의 공정거래 리스크: 공정거래법, 약관법, 하도급법, 표시광고법

공정위는 당초 경쟁당국으로서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1981년 4.1일 설립되었으나 그 이후 중소기업보호 및 소비자보호 관련 업무까지 담당하고 있습니다. 공정위 소관 법률은 아래 표 8에 열거된 것과 같이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약관법, 표시광고법, 대규모유동법 등 총 13개 법률이 있으며 그 중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것은 주로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약관법입니다(<http://www.ftc.go.kr>).

[표 7] 공정위 소관 법률의 유형

구 분	해당 법률	공공기관 적용 여부
독과점규제 및 경쟁보호	공정거래법	일부 적용
	하도급법	일부 적용
	대규모유동법	해당 없음
	가맹사업법	해당 없음
중소기업보호	채권자법	해당 없음
	소비자기본법	해당 없음(규제법률 아님)
	표시광고법	일부 적용
	약관법	적용
소비자보호	방문판매법	해당 없음
	전자거래법	해당 없음
	전자상거래법	해당 없음
	제조물책임법	해당 없음
	생협법	해당 없음(규제법률 아님)

* 대규모유동법의 경우에는 사업목적 및 사업의 양태에 따라 표지광고법이 적용가능성이 있으나 실제 사례도 본 센터 공공기관에 공공기관에는 해당이 없어 이 관할에서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찾아서 하는 내용 위주로 정리함.

예시 지참물자·출원기관과 관련한 공정거래 법규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41조 제1항 공공기관의 경우 문화, 예술, 장학,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국정의 처리와 관련하여 수행할 수 있는 사업 또는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을 활용하고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수 입과 관련된 사항을 수행합니다.
- 「의사채권으로 설립된 출연기관의 경우에는 법률에 의해 영리를 목적으로 할 수 없고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에서 그 본점에 반하지 않는 정도의 영리 활동만 가능하므로 13개 공정거래 법규 중 일부 법률 또는 일부 규정은 적용됩니다.
- 대규모유동법, 가맹사업법, 채권자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 전자상거래법 등은 사업자가 해당 법률 또는 사업목적에 따라 준수해야 하는 내용이 없으며 소비자기본법, 제조물책임법, 생협법은 규제법률이 아니므로 해당이 없습니다.

[표 8] 공공기관의 주요 공정거래 리스크

항 목	공정거래 리스크 내용
입찰단합 (공정거래법)	• 경쟁입찰이 가능하도록 등기하도급 요구하거나 특정 업체만 낙찰이 가능하도록 물품의 사용을 독점하는 등 입찰단합의 교차·병조치가 적용될 가능성이 존재함
거래상 지위남용 (공정거래법)	• 거래상대방에 대한 일방적인 계약조건 설정, 계약내용의 변경,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내용을 요구하는 경우 등은 거래상 지위남용에 해당될 수 있음
하도급법	•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할 상황이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규정이 미비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 공공기관의 발주자의 가능성이 존재함. • 최근 거래상대방의 범위만으로 인해 브랜드에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아 공급망관리자가 주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거래상대방의 하도급법 위반으로 공공기관의 평판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음
약관법	• 공공기관의 경우 약관에 의한 거래가 많아 불공정 약관조항이 포함되지 않도록 계약 관련 부서에서 주의를 기울여야 함 • 개별약관의 경우 등 명칭을 불문하고 기본계약서의 내용과 다르거나 추가하는 약정이 약관의 내용보다 거래상대방에게 불리하거나 불공정 경우에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될 수 있음
표시광고법	• 물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표시광고 시 거짓에 해당하는 내용이나 과장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오인을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함. • 거짓이나 과장에 대해 공공기관이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면제되지 않으므로 표시 광고 시 증빙을 확인하여야 함

1981년 공정거래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공정위가 공공기관(주로 공기업)을 대상으로 행정처분을 발한 건수(259건) 중 약 50%가 "거래상 지위 남용(129건)"에 해당하고 그 다음이 "불공정약관조항(54건)"으로 약 21%에 달하고 있습니다. 사건 수는 적지만 최근 입찰단합과 관련하여 표시행위나 문제된 건도 있으며 하도급법 위반 건도 발생하고 있습니다(공정위 온라인사건처리시스템의 의결서 검색 결과). 그 외 표시 광고법 위반 사건도 존재합니다.

특히 입찰단합 및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와 관련하여 발주자로서 공공기관의 책임(입찰단합에 관여하지 않도록 주의하거나 불공정하도급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탁자의 하도급거래를 감시)를 강조하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는 점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이 편람은 공공기관의 범위내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업무가이드를 제시하고 관련 관련 법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예시, 그리고 실제 적용 사례를 충실하게 수록하였습니다.

1) 공정거래법의 적용

공정거래법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법에 규정된 규제 내용은 크게 시장구조 개선을 위한 규제와 거래행태 개선을 위한 규제

[자율준수편람 "최근 공정거래 관련 법규"]

공정위 및 사건 처리 절차에 대한 이해

1 개요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등 위반사건에 대해 심판기능을 수행하는 중앙행정부서의 하나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위원들의 합의로 운영되는 합의제 행정기관입니다.

공정위는 심결을 위해 위원 전원(9명)으로 구성되는 전원회의와 상임위원 1인을 포함한 위원 3인으로 구성되는 소회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표 26] 전원회의와 소회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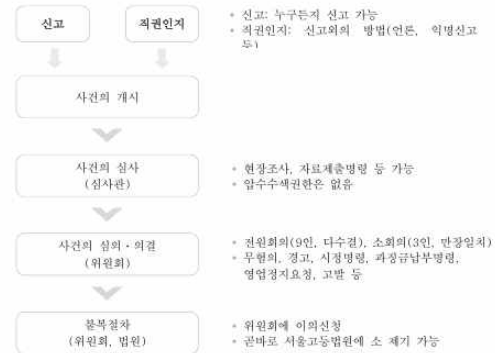
	전원회의	소회의
의장	위원장	상임위원(주심위원)
의결정족수	계적위원 과반수의 찬성	구성위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
소관사항	- 법규 등 이해·개정 - 이의신청의 회결 - 소회의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건 -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중요사건 (공정거래법 제37조의 3)	- 일반사건 - 승인·인정·인가사건 - 경쟁장치의 결정 - 과태료 - 관계기관에 협조요청 사항 (고발,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영업정지요청, 약관법상 사정요청)

[표 27] 용어해설

용어	설명
심결	공정위가 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심의하고 의결하는 일련의 심판과정
심사관	신고 또는 직권으로 인지된 내용에 대해 조사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한 후에 그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당해 인지내용이 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공무원을 말하며, 심사관은 공정위 소속 4급 이상인 직원 중에서 사무처장이 지명하는 직원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국장과 지방사무소장이 심사관이 됩니다.
폐심원	법 위반의 혐의가 있는 사업자(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서 당해 행위가 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 공정위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 및 당황으로 판단될 경우 제1무효 및 손해배상 등의 불이익이 있다는 점을 사건에 명시적으로 공지하고 계약내용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필문담당 (p.79)
입찰에 참여하는 사업자에게 입찰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물자비를 세우도록 권유하는 것으로 오인될 표현을 하거나 관련 사업자와 접촉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입찰담당 (p.79)

2 공정위 사건처리 절차



3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유형

공정거래법규 위반시 범위한 사업자에 대한 제재는 행정적 제재(시정조치와 과징금 납부 명령), 형사적 제재(징역과 벌금) 그리고 민사적 제재(손해배상책임)의 3가지 유형이 적용됩니다. 다음은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유형입니다.

제재유형	내용
행정적 제재	- 시정조치: 법 위반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 기타 시정에 필요한 조치 - 과징금은 법위반 유형에 따라 관련매출액의 2~20%에서 부과하되 과징금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5~20억원 내에서 부과
형사적 제재	- 법위반 유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부당한 공동행위, 부당지권행위 등) 및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 벌금(불공정거래행위, 시정조치불이행 등) - 양벌규정(제70조)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행위자 외에도 법인 또는 개인도 처벌 가능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 엄밀한 의미에서 제재는 아니지만, 법적 책임의 하나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묻게 될 경우가 많음 - 공정거래법상 손해배상제도는 무과실책임과 손해배상액 예정제도(손해액을 특정하지 못하더라도 손해배상을 법원이 정할 수 있는 제도)의 특성이 있으며 담합의 경우 3배 이하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됨

[자율준수편람 “공정거래위원회 및 사건 처리절차”]

II

D2. 교육훈련 프로그램

평가 지표	D2.1 정기 CP교육	항목별 국지가중치	0.124
		지표별 국지가중치	0.171
세부 측정 지표	D2.1.1 조직의 CP 교육계획에 계층(예: 신입, 중간관리자, 임원), 부서 [예: 해당 업계가 준수하여야 하는 공정거래 법규 및 필수 법규 위반 가능성이 큰 부서 및 낮은 부서], 관련성(예: CP 위반 여부) 별로 차별화된 교육 체계가 마련되어 있는가? D2.1.2 CP 교육계획 수립 시 이전에 시행한 교육의 효과성평가 결과 및 임직원 VOC, 해당 부문이 준수하여야 하는 공정거래 법규 및 필수 법규 개정사항 방향 등을 충실히 반영하였는가? D2.1.3 조직이 수립한 CP 교육 계획에 따라 충실히 수행되었는가?(교육 완료보고서, 출석부 등 교육수행 기록 포함)		
지표 관리 목표	D2.1.1 CP 교육계획은 부문·계층별 특성을 반영하여 교육대상 및 과정을 구분하여 수립한다. D2.1.2 CP 교육계획 수립 시 효과성평가 결과 및 임직원 VOC, 공정 거래 관련 법규 개정사항을 충실히 반영한다. D2.1.3 수립된 CP 교육계획에 따라 충실히 수행한다.		
주요 실적	24.07.11 CP 담당자 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 교육 참여 [4회] 24.09.11 사무직원 대상 CP 교육 실시 [3회] 24.11.06 경기도 공정경제과 CP 설명회 [2회] 24.12.03 관리자 대상 CP 교육 실시 [1회, 사장 포함]		

평가
지표

D2.1 정기 CP교육

세부
측정
지표

D2.1.1 조직의 CP 교육계획에 계층(예: 신입, 중간관리자, 임원), 부서
[예: 해당 업계가 준수하여야 하는 공정거래 법규 및 필수 법규
위반 가능성이 큰 부서 및 낮은 부서], 관련성(예: CP 위반 여부)
별로 차별화된 교육 체계가 마련되어 있는가?

01 계층별 차별화된 교육계획 수립

- 경기아트센터는 2023년 CP 교육결과의 시사점을 반영하여 CP 교육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2024년에는 전직원 교육을 공정거래 대상자 집중교육으로 변경하여 진행하였습니다.
- 또한, 교육대상자를 계층화(사무직원, 관리자)하여 교육과정을 계층별 차별화된 교육내용으로 구성함으로써 교육 효과를 향상하고자 했습니다.
 - (사무직원 대상) CP 교육은 CP 운영기준과 공정거래 법규 관련 실무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 및 향후 기관의 CP 운영방향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관리자 대상) CP 교육은 CP 전문가를 초청하여 기관의 CP 제도 도입의 필요성 및 유용성, CP 운영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중심으로 구성하여 CP 제도의 점진적 발전과 관심을 제고하기 위한 자리로 진행되었습니다.
- CP 교육현황

연번	일자	대상	시간	방식	장소	기관(강사)	이수자
1	23.11.16	전직원	1시간	비대면	사이버교육	GSEEK	351/374명(94%)
2	24.09.11	사무직원	30분	대면	센터 컨벤션	CP담당자	93명
3	24.09.12	사무직원	30분	대면	센터 컨벤션	CP담당자	
4	24.09.25	사무직원	30분	대면	국악원	CP담당자	
5	24.12.03	관리자	1.5시간	대면	센터 회의실	이O길	21/25명(84%)

02 CP 담당자 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 교육 및 설명회 참여

- 경기아트센터는 CP 담당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경기도 공정경제과가 주관하는 **컨설팅 교육(4회차)** 및 **설명회**에 참석하여 공정거래 CP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점검을 통해 CP 제도를 정비하고자 지속해서 노력했습니다.
- CP 담당자 교육현황

연번	일자	대상	시간	방식	장소	기관(강사)	참석자
1	24.07.11	CP담당자	3시간	비대면	공연본부 회의실	이O길 이O정	이O왕 문O한
2	24.07.25	CP담당자	3시간	비대면	공연본부 회의실	이O길 이O정	문O한
3	24.10.29	CP담당자	3시간	비대면	아트센터 회의실	이O길	이O왕 문O한
4	24.11.05	CP담당자	3시간	비대면	아트센터 회의실	이O길	이O왕 문O한
5	24.11.06	CP담당자	2.5시간	비대면	R&D센터 대교육실	공정경제과	이O왕 문O한
6	24.12.10	경평담당자 CP담당자	2시간	비대면	R&D센터 대교육실	공정경제과	최O레 문O한

- (컨설팅교육) 경기도 공정경제과가 주관하는 **컨설팅교육 4회차**에 참여하여 공정거래 CP 담당자의 역량 강화 및 공정거래CP 제도 전반에 대한 점검을 통한 시스템 정비

회차	일자	시간	장소	교육내용	교육진행자	참석자
1	24.07.11	13:00~16:00 (3시간)	공연사업본부 회의실	① CP제도 설명 ② CP 운영현황 점검	이 길 이 정	이 왕 문 한
2	24.07.25	13:00~16:00 (3시간)	공연사업본부 회의실	① 24년 운영계획 점검 ② 공정거래 리스크맵	이 길 이 정	문 한
3	24.10.29	13:00~16:00 (3시간)	아트센터 회의실	① 리스크 점검 ② 운영내규 검토	이 길	이 왕 문 한
4	24.11.05	15:00~18:00 (3시간)	아트센터 회의실	① 운영내규 최종점검 ② 협의체 운영방향	이 :길	이 왕 문 한



[1회차 교육]



[2회차 교육]



[3회차 교육]



[4회차 교육]

[내부 결재문서 “CP 컨설팅 교육”]

○ (CP설명회) 경기도 공정경제과가 주관하는 설명회 2회차에 참여하여 경기도와
유관기관의 공정거래CP 제도 운영방안 및 발전방향 모색

회차	일자	시간	장소	교육내용	교육진행자	참석자
1	24.11.06	14:00~16:30 (2시간 30분)	경기R&D센터 대교육실	① CP 제도 및 등급평가 ② CP 우수사례 공유	경기도 공정경제과	이 왕 문 한
2	24.12.10	13:30~15:30 (2시간)	경기R&D센터 대교육실	① 경영평가 증빙방안 ② 표준편람 소개	경기도 공정경제과	최 래 문 한



[1회차 설명회 <공공기관 부서장 대상>]



[2회차 설명회 <경영평가 담당자 대상>]

[내부 결재문서 “경기도 공정경제과 CP 설명회”]

평가
지표

D2.1 정기 CP교육

세부
측정
지표

D2.1.2 CP 교육계획 수립 시 이전에 시행한 교육의 효과성평가 결과 및 임직원 VOC, 해당 부문이 준수하여야 하는 공정거래 법규 및 필수 법규 개정사항 방향 등을 충실히 반영하였는가?

01 교육실효성 향상을 위한 집중교육 실시

- 경기아트센터 2024년 CP 교육은 2023년 시사점을 반영하여 전직원 교육을 공정거래 대상자 집중교육으로 변경하고, 교육 대상자를 사무직원과 관리자로 계층화하여 교육과정에 대상자별 차별화를 두었습니다.

3 향후계획

- ☐ 공정거래 내부감시체계 구축을 위한 일상감사 등 도입 방안 검토
- ☐ 내부감시체계 구축 이후, 자율준수관리자 임명
- ☐ 유관기관 사례를 참고하여 기관 실정에 맞는 운영지침 수립
- ☐ CP 전직원 교육을 공정거래 대상자 집중 교육으로 변경하는 방안 검토

[2023년 CP 운영 결과보고 “향후계획”]

- ③ (자율준수관리자 임명) 최고 의사결정기구(이사회)가 기관의 최고경영자를 자율준수관리자로 임명하여 공정거래 CP 운영의 실효성 제고(11월 예정)
- ④ (CP 편람 제작·활용) 경기도 CP 편람을 임직원에게 배포·공유하여 공정거래 CP 제도에 대한 임직원 이해 제고 및 내부 협조 강화(11~12월 예정)
- ⑤ (자율준수교육 실시) 전직원 CP 내부교육 및 기관장을 포함한 부서장 이상의 별도 교육을 실시하여 공정거래 CP 제도의 인식 확대(9~10월 예정)
- ⑥ (내부감시체계 구축) 자율준수관리자를 중심으로 자율준수 협의체를 구축하여 자율점검 체크리스트 등의 내부 리스크 평가 및 관리를 통해 내부감시체계 정비(10~12월 예정)

[2024년 CP 운영계획 “자율준수교육”]

02 사무직원 대상 CP 담당자 직접 교육 실시

- 사무직원 대상 CP 교육은 교육과정을 실무적인 방향으로 재구성하여 교육 효과를 향상하기 위해 CP 담당자가 직접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 교육내용은 CP 운영기준과 공정거래 법규 관련 실무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 및 자율준수협약체 등 향후 기관의 CP 추진방향을 중심으로 구성하였습니다.

2024년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교육자료

1 공정거래 CP 개요

□ 공정거래 CP 란?

- 공정거래 관련 법규준수를 위해 기관 스스로 교육, 감독 등을 하는 내부준법시스템

① 공정거래법	② 하도급법	③ 약관법	④ 표시광고법	⑤ 할부거래법
⑥ 방문판매법	⑦ 전자상거래법	⑧ 대금모요통법	⑨ 가맹사업법	⑩ 대리점법
⑪ 소비자기본법	⑫ 생협법	⑬ 제조물책임법	⑭ 기타	

○ 전사적 리스크 관리체계 구축



[2024년 CP 교육자료 “사무직원 대상”]

03 관리자 대상 CP 전문가 교육 실시

- 관리자 대상 CP 교육은 교육과정을 CP 제도 도입의 필요성 및 유용성과 CP 운영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중심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또한, CP 제도의 점진적인 발전과 관심으로 제고하고, 교육내용의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 CP 전문가를 초청하여 CP 교육을 별도로 진행하였습니다.

문서번호	협 조 문 (내선 225 / 주임 문 한)	결재 (발신)	주임	팀장	실장	
재무회계팀-2543 2		결재 (수신)	문 한	이 왕	박민제	전달 11/29
시행일자	2024.11.29.					
수 신	수신자 참조					
발 신	재무회계팀					
제 목	2024년 공정거래 CP 관리자 특별교육 및 자율준수 선언식 참석 요청					

재무회계팀-2543호(2024. 11. 28.)와 관련하여 2024년 공정거래 CP 관리자 특별교육 및 자율준수 선언식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자 하오니 부서장 이상의 관리자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추진목적: 관리자의 공정거래CP 제도에 대한 이해 제고 및 기관장 선언을 통한 중요성 인식 확대
2. 추진개요

가. 공정거래CP 관리자 특별교육

- 교육일시 및 장소: 2024. 12. 3.(화) 10:00~11:30 (1시간 30분) / 경기아트센터 회의실
※ 12월 1주차 확대간담회의 이후 진행
- 교육대상: 26명(부서장 이상의 관리자, 사장 및 대적자 포함)
- 교육강사: 이준길 강사(길버트 컨설파이언스 파트너, 법무법인 지평 공정거래팀 그룹 총)
- 교육내용: 공정거래CP 제도 개념 및 8대과제 운영의 필요성 등

나. 2024년 기관장 자율준수 선언식 개최

- 행사일시 및 장소: 2024. 12. 3.(화) 11:30 / 경기아트센터 회의실
- 참석대상: 사장 및 부서장 이상의 관리자
- 선언내용: 불임문서인 "자율준수 선언문" 참조

붙임 2024년 경기아트센터 공정거래 자율준수 선언문_241203 1부. 끝.

경 영 기 획 실 장

수신자 사장실, 감사실장, 감사팀장, 경영기획실장, 전문위원 경영혁신TF, 기획조정팀장, 경영지원팀장, 안전시설팀장, 사무처장, 공연사업본부장, 커뮤니케이션팀장, 공연기획팀장, 무대기술팀장, 경기도 무용단 공연활성화TF, 예술단본부장, 예술단운영팀장, 국악운영팀장, 경기도국단, 경기도무용단,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 경기필하모닉, 장애인오케스트라운영팀장, 대외협력본부장, 대외사업팀장, 정책사업팀장

[협조문 “공정거래 CP 관리자 특별교육 참석 요청”]

평가
지표

D2.1 정기 CP교육

세부
측정
지표

D2.1.3 조직이 수립한 CP 교육 계획에 따라 충실히 수행되었는가?(교육 완료보고서, 출석부 등 교육수행 기록 포함)

01 사무직원 대상 CP 교육결과

○ 사무직원 대상 CP 교육은 직원의 근무지와 근무 스케줄을 고려하여 수원, 용인을 나누어 총 3회차로 진행되었으며, 93명이 이수하였습니다.

○ 교육 이수현황

회차	일자	대상	시간	방식	장소	기관(강사)	이수자
1	24.09.11	사무직원	30분	대면	센터 컨벤션	CP담당자	93명
2	24.09.12	사무직원	30분	대면	센터 컨벤션	CP담당자	
3	24.09.25	사무직원	30분	대면	국악원	CP담당자	

5 자율준수교육 실시

○ (사무직원 대상) CP담당자가 직접 교육하는 3회차 대면교육을 시행하여 공정거래 CP 제도에 대한 임직원 이해 제고 및 중요성 인식 확대

회차	일자	시간	장소	교육내용	교육진행자	이수자
1	24.09.11	14:30~15:00 (30분)	아트센터 컨벤션홀	① CP 추진배경 ② CP 정의 및 의의 ③ 운영방향 및 협조 등	정 한 (CP담당자)	93명
2	24.09.12	14:30~15:00 (30분)	아트센터 컨벤션홀			
3	24.09.25	15:30~16:00 (30분)	국악원 2강습실			



[1, 2회차 교육 <아트센터>]



[3회차 교육 <국악원>]

[내부 결재문서 “사무직원 대상 CP 교육결과”]

02 관리자 대상 CP 교육결과

- 관리자 대상 CP 교육은 CP 전문가를 초청하여 사장 및 부서장 이상의 관리자가 참석하는 특별교육을 시행하여 21명(84%)이 이수하였습니다.
- 교육 이수현황

회차	일자	대상	시간	방식	장소	기관(강사)	이수자
1	24.12.03	관리자	1.5시간	대면	센터 회의실	이O길	21/25명(84%)

- (관리자 대상) 경기아트센터 사장 및 부서장 이상의 관리자가 참여하는 특별교육을 시행하여 관리자 관점으로 재구성한 별도교육 실시

회차	일자	시간	장소	교육내용	교육진행자	이수자
1	24.12.03	10:00~11:30 (1시간 30분)	아트센터 회의실	① CP 역사와 의의 ② CP 도입 필요성 ③ CP 도입 유용성 등	이 O길 (CP전문가)	21/25명 (84%)



[관리자 특별교육]



[관리자 특별교육]

[내부 결재문서 “관리자 대상 CP 교육결과”]

II

D2. 교육훈련 프로그램

평가 지표	D2.2 법위반 가능성이 큰 부서나 관련자에 대한 집중교육	항목별 국지가중치	0.124
		지표별 국지가중치	0.384
세부 측정 지표	D2.2.1 CP 교육계획에 미이수자 및 CP 위반자에 대한 보수교육 또는 특별교육을 반드시 시행하도록 정하고 있는가? D2.2.2 해당 부문이 준수하여야 하는 공정거래 법규 및 필수 법규 위반 가능성이 큰 부서나 CP 위반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 활용 되는 교재가 최신 법 위반사례 및 사전예방 방법 등을 충실히 포함하고 있는가? D2.2.3 해당 부문이 준수하여야 하는 공정거래 법규 및 필수 법규 위반 가능성이 큰 부서와 CP 위반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후 교육 이해도 등을 측정하였는가?(예: 시험, 인터뷰 등)		
지표 관리 목표	D2.2.1 내부규정 또는 CP 교육계획에 교육 미이수자와 CP 위반자에 대해 보수교육 또는 특별교육 시행하도록 정한다. D2.2.2 기관이 준수하여야 하는 공정거래 법규 및 필수 법규 위반 가능성이 큰 부서 및 CP 위반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자료에 최신 법 위반사례 및 사전예방 방법 등을 충실히 포함하도록 한다. D2.2.3 기관이 준수하여야 하는 공정거래 법규 및 필수 법규위반 가능성이 큰 부서와 CP 위반자를 대상으로 CP교육을 별도로 시행 하고, 교육대상자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주요 실적	24.09.11 사무직원 대상 CP 교육 실시 [3회] 24.12.03 관리자 대상 CP 교육 실시 [1회, 사장 포함] 24.12.20 공정거래 CP 부서별 효과성평가 시행		

평가
지표

D2.2 범위반 가능성이 큰 부서나 관련자에 대한 집중교육

세부
측정
지표

D2.2.1 CP 교육계획에 미이수자 및 CP 위반자에 대한 보수교육 또는 특별교육을 반드시 시행하도록 정하고 있는가?

01 미이수자 및 CP 위반자에 대한 보수교육

- 경기아트센터는 CP 운영내규 제17조제4항에 따라 미이수자에 대해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보수교육을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024년에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자가 발생하지 않아 위반자를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교육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제4절 자율준수교육 실시

제17조(자율준수교육)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공정거래CP 교육을 실시한다. 단, 교육효과 향상을 위해 교육 대상자를 사장과 관리자 또는 발주, 구매, 계약 등 공정거래 관련 법규와 밀접한 자로 한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6.>

② 자율준수관리자는 공정거래CP 연간 교육계획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수립한다.

1. 교육의 취지 및 목적
2. 교육 대상자
3. 교육 전담강사
4. 교육내용
5. 교육방법(온라인/오프라인)
6. 교육 효과성평가 방법 및 후속조치 방안
7. 연간 교육일정

③ 주관부서는 공정거래CP 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며 교육 전담부서에 업무협조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교육 전담부서는 부득이한 사정을 제외하고는 주관부서의 업무협조 및 지원 요청에 응해야 한다.

④ 자율준수관리자는 교육 미이수자에 대해 보강 교육을 명령할 수 있으며, 명령을 받은 자는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보강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⑤ 자율준수관리자는 공정거래CP 교육의 효과성을 평가하고, 확인된 문제점을 다음연도 교육 계획에 반영한다.

⑥ 공정거래CP 교육에 대해 이 내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자율준수관리자가 별도로 정하고 주관부서가 시행한다.

[CP 운영내규 제17조]

평가
지표

D2.2 범위반 가능성이 큰 부서나 관련자에 대한 집중교육

세부
측정
지표

D2.2.2 해당 부문이 준수하여야 하는 공정거래 법규 및 필수 법규 위반 가능성이 큰 부서나 CP 위반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 활용되는 교재가 최신 법 위반사례 및 사전예방 방법 등을 충실히 포함하고 있는가?

01 최근 위반사례를 반영한 교육교재 활용

- 교육교재에 최근 공정거래 관련 위반사례를 수록하여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에 대한 중요성 및 자율준수 인식을 확대하고자 했습니다.

사회 사회일반

'6조원대 담합' 현대제철에 벌금 2억원...임원은 법정구속

아로마센스오일 사례

아로마센스오일의 허위·과장광고(식품위생법 위반)건에서 서울북부지법은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실효적으로 구축한다면, '행위자(개인)'의 위법행위가 인정되더라도 '법인'은 그에 대한 형사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다고 판시

- (개인) 다단계 판매사원의 허위·과장광고 책임
- (법인) 다단계 판매업체의 책임 면제: 판매원의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인정
 - 회사 설립 초기부터 허위·과장광고의 금지를 회사홈페이지, 회원수첩, 안내문 판권)등에 적시
 - 허위·과장광고 시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서약서 및 신청서 징구
 - 회사의 윤리강령으로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공 식입장, 처리절차, 관련법령 제시
 - 자율시정기간을 운영하면서 판매원들의 블로그 및 홈페이지 광고내용 조사, 시정조치 실시
 - 매주 정기적으로 판매원들에게 허위·과장광고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윤리강령교육 실시

〈주요시사점〉

- 위법행위 유형(허위·과장광고)의 명확화
- 법적 위험의 정의(제재, 절차, 관계법령)
- 위법행위 예방(윤리강령, 교육 훈련, 서약서)
- 위반행위에 대한 대응(자율시정기간, 조치)

[관리자 대상 특별교육 교육교재]

평가
지표

D2.2 범위반 가능성이 큰 부서나 관련자에 대한 집중교육

세부
측정
지표

D2.2.3 해당 부문이 준수하여야 하는 공정거래 법규 및 필수 법규 위반 가능성이 큰 부서와 CP 위반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후 교육 이해도 등을 측정하였는가(예: 시험, 인터뷰 등)

01 교육과정에 대한 효과성평가 시행

- CP 효과성평가에 전부서가 참여하여 공정거래 CP 교육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고 3.9점(5.0 만점)을 기록하였습니다.
- 아울러, 공정거래CP 제도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내부 직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2025년 CP 교육에는 중장기 교육계획을 수립함과 동시에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직원의 교육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⑧ CP 효과성평가

- 연간 공정거래CP 운영에 대한 부서별 설문조사를 시행하여 전직원의 의견 청취를 통해 공정거래 CP 제도 및 운영에 대한 점진적 발전방향 모색 신규

연번	설문지	측정점수	측정방법	참여부서
1	공정거래 CP제도에 대한 인지 정도	3.6	5점척도 (5 높음) (1 낮음)	17/17 (100%)
2	아트센터의 공정거래 위반 행위발생 정도	2.2		
3	공정거래CP 교육의 만족도 정도	3.9		
4	공정거래CP 제도 운영에 대한 만족도 정도	4.1		
5	공정거래CP 운영 관련 개선사항 또는 바라는 점	-	서술식	7
서술 내용	① 부서별 공정거래 공정거래 세부 실천방안을 마련하여 교육 및 홍보 활성화 요청			
	② 공정거래CP 제도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필요			
	③ 공정거래CP 관련자료와 교육에 대해 지속적 안내 및 피드백 요청			
	④ 지속적, 체계적 교육 필요			
	⑤ 계약시 공정성을 유지하며 신뢰 강화 필요			
	⑥ 공정거래는 공공성을 증대하는 기반으로 늘 긴장을 통한 점검 필요			
	⑦ CP문화확산을 위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련 교육 및 모니터링 실시 요청			

[내부 결재문서 “CP 효과성평가”]

II

D2. 교육훈련 프로그램

평가 지표	D2.3 최고경영자 및 임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	항목별 국지가중치	0.124
		지표별 국지가중치	0.274
세부 측정 지표	D2.3.1 CP 교육계획에 최고경영자 및 임원이 CP와 관련한 교육(회의, 세미나, 워크숍 등도 포함)에 반드시 참여하도록 정하고 그에 따라 임원이 CP와 관련한 교육에 참여한 사실이 있는가?		
지표 관리 목표	D2.3.1 CP 교육계획에 최고경영자를 교육대상자로 선정하고 반드시 참여하도록 정한다.		
주요 실적	24.11.28 관리자 특별교육 교육계획 수립 [대상자 사장 포함]		
	24.12.05 관리자 특별교육 결과보고 [사장 교육이수]		

평가
지표

D2.3 최고경영자 및 임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

세부
측정
지표

D2.3.1 CP 교육계획에 최고경영자 및 임원이 CP와 관련한 교육(회의, 세미나, 워크숍 등도 포함)에 반드시 참여하도록 정하고 그에 따라 임원이 CP와 관련한 교육에 참여한 사실이 있는가?

01 최고경영자가 참여하는 CP 교육계획 수립

- 경기아트센터는 관리자 특별교육에 사장이 반드시 참석하도록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공정거래 CP 제도에 대한 중요성 및 기관의 인식을 확대하고자 노력했습니다.

- ① (CP 기준과 절차 마련) 2024년 CP 운영방안을 전면 재편함에 따라 기존 운영지침을 보완한 신규 운영내규를 제정하여 임직원이 공정거래 관련 내부규정을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추진(10~11월 예정)
- ② (최고경영자 자율준수 의지) 기관 홈페이지에 “공정거래” 메뉴를 신설하고 기관장 CP 도입지원 및 자율준수 의지를 담은 인사말 등 CP 관련 활동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기관의 CP 활동에 대한 대외영향력 확대(10~11월 예정)
- ③ (자율준수관리자 임명) 최고의사결정기구(이사회)가 기관의 최고경영자를 자율준수관리자로 임명하여 공정거래 CP 운영의 실효성 제고(11월 예정)
- ④ (CP 편람 제작·활용) 경기도 CP 편람을 임직원에게 배포·공유하여 공정거래 CP 제도에 대한 임직원 이해 제고 및 내부 협조 강화(11~12월 예정)
- ⑤ (자율준수교육 실시) 전직원 CP 내부교육 및 기관장을 포함한 부서장 이상의 별도 교육을 실시하여 공정거래 CP 제도의 인식 확대(9~10월 예정)
- ⑥ (내부감시체계 구축) 자율준수관리자를 중심으로 자율준수 협의체를 구축하여 자율점검 체크리스트 등의 내부 리스크 평가 및 관리를 통해 내부감시체계 정비(10~12월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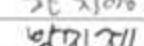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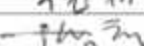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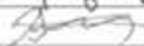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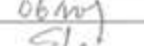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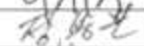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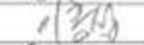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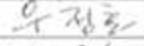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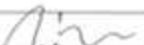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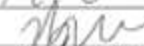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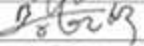
[2024년 CP 운영계획 “자율준수교육”]

02 최고경영자의 적극적인 CP 교육 참여

- 관리자 특별교육에 최고경영자가 적극적으로 참석함으로써 CP 제도 발전 및 활성화 의지를 대내외 표명하고 공정문화에 대한 인식을 확대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2024년 공정거래CP 관리자 특별교육 이수자 명단

- ☐ 교육일시: 2024. 12. 3.(화) 10:00-11:30(1시간 30분)
- ☐ 교육장소: 경기아트센터 회의실
- ☐ 교육강사: 이준길

연번	부서명	직책	성명	서명	비고
1	경기아트센터	사장	서준기		
2	사무처	사무처장	김영		
3	감사실	실장	한영		
4	경영기획실	실장	박재		
5	공연사업본부	본부장	우철		
6	예술단본부	본부장	김수		
7	대외협력본부	본부장	박찬		
8	감사팀				
9	경영혁신TF	팀장	김수		
10	기획조정팀	팀장	임미		
11	경영지원팀	팀장	신원		
12	재무회계팀	팀장	이왕		
13	안전시설팀	팀장	정근		
14	커뮤니케이션팀	팀장	이섭		
15	공연기획팀	팀장	우호		
16	무대기술팀	팀장	정현		
17	공연활성화TF	팀장	조주		
18	예술단운영팀	팀장	이린		
19	국악운영팀	팀장	심온		
20	경기도국단	기획실장	김강		
21	경기도무용단	기획실장	김화		
22	경기시나위	기획실장	송석		
23	경기말하오너	기획실장	이현		
24	장예인오케스트라	팀장직대	이영		
25	대외사업팀	팀장	최원		
26	정책사업팀	팀장	신호		

[관리자 특별교육 이수자 명단]

II

D2. 교육훈련 프로그램

평가 지표	D2.4 CP 교육훈련의 효과성평가	항목별 국지가중치	0.124
		지표별 국지가중치	0.171
세부 측정 지표	D2.4.1 CP 관련 교육의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한 절차와 지표(예: 참석률, 학습자 만족도, 이수율, 불만건수, 학습 성과의 달성 정도 등)가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고, 교육의 효과성이 평가되고 있는가?		
지표 관리 목표	D2.4.1 CP 교육의 효과성평가를 하는 절차를 마련하여 학습자 만족도, 개선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한다.		
주요 실적	24.12.05	효과성평가의 정기적 시행을 위한 “효과성평가” 규정화	
	24.12.20	2024년 공정거래CP 효과성평가 시행	

평가
지표

D2.4 CP 교육훈련의 효과성평가

세부
측정
지표

D2.4.1 CP 관련 교육의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한 절차와 지표(예: 참석률, 학습자 만족도, 이수율, 불만건수, 학습 성과의 달성 정도 등)가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고, 교육의 효과성이 평가되고 있는가?

01 효과성평가의 정기적 시행을 위한 규정화

- 경기아트센터는 CP 운영내규 제정을 통해 제25조 효과성평가 부분을 신설하여 효과성평가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화하였습니다.
- 또한, 효과성평가의 평가항목을 지정하여 동일한 항목에 대한 누적된 데이터를 수집하여 직전년도와의 비교하여 성장 추이를 비교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제25조(효과성 평가)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공정거래CP를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공정거래CP 운영에 대한 효과성 평가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 점검하고 그 결과를 활용하여 개선 및 발전방향을 도모한다.

② 효과성 평가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평가한다.

1. 공정거래CP에 대한 직원의 이해 및 인식 수준
2. 연간 공정거래CP 운영계획 대비 실제 시행 성과
3. 내부감시체계 운영성과
4. 공정거래CP 관련 교육성과
5. 공정거래 관련 법 위반 행위 발생 빈도 및 영향
6. 공정거래CP 운영에 대한 직원의 만족도
7. 공정거래CP 규정 및 자율준수편람 등 기준과 절차의 제·개정을 통한 제도개선 성과
8. 공정거래CP 관련 예산 및 인력의 적정성

③ 자율준수관리자는 효과성 평가의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CP 등급 평가를 신청하여 평가등급을 취득하거나 외부 전문가에게 효과성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CP 운영내규 제25조]

02 교육 만족도 및 자율 서술을 통한 효과성평가 시행

- 경기아트센터는 2024. 12. 20.~12. 26. 총 7일간 전부서를 대상으로 효과성 평가를 시행하여 교육만족도를 5점 척도로 설문 조사하였습니다. 또한, 자율 서술부분을 신설하여 교육 뿐만 아니라 공정거래 CP 운영 전반에 대한 개선 사항 및 직원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했습니다.

문서번호	협 조 문 (내선 225 / 주임 : 변한)	주임	팀장		
재무회계팀-2831 7		결재 (발신)	변한	이왕	
		결재 (수신)	전결 12/20		
시행일자	2024.12.20.				
수신	수신자 참조				
발신	재무회계팀				
제목	2024년 경기아트센터 공정거래CP 효과성평가 부서별 설문 참여 요청				

1. 관련근거

- 가. 「경기아트센터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운영내규」 제25조
나. 재무회계팀-2831호(2024. 12. 20.) 「2024년 경기아트센터 공정거래CP 효과성평가 시행계획(안)」

2. 위 근거에 따라 2024년 경기아트센터 공정거래CP 효과성평가를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자 하오니 각 부서에서는 설문에 참여하여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추진목적: 부서별 종합적인 의견을 수렴하여 공정거래 리스크 예방 및 개선방향 모색
나. 참여방법: 불임문서인 "설문지"를 부서별로 작성하여 기한 내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
- 제출기한: 2024. 12. 26.(목) 18:00 까지 / 담당자 이메일: mkh@ggac.or.kr

다. 설문내용

연번	질문	설문방법	비고
1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제도에 대한 인지 정도	5점척도	-
2	현재 아트센터내 공정거래 관련 위반 행위의 발생 정도	5점척도	-
3	2024년 공정거래CP 교육의 만족도 정도 - 재무회계팀 조직역량 강화교육 중 CP (9.11, 9.12, 9.25) / 관리자 특별교육(12.3)	5점척도	-
4	공정거래CP의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만족도 정도	5점척도	-
5	위의 설문 또는 공정거래CP 운영 관련 개선사항	서술식	-
6	부서별 공정거래 리스크 진단	별도양식	-

붙임: 설문지_2024년 공정거래CP 효과성평가 1부, 끝.

재무회계팀장

수신자: 감사팀장, 전문위원 경영혁신TF, 기획조정팀장, 경영지원팀장, 재무회계팀장, 안전시설팀장, 커뮤니케이션팀장, 공연기획팀장, 무대기술팀장, 경기도 무용단 공연활성화TF, 예술단운영팀장, 국악운영팀장, 경기도국단, 경기도무용단, 경기시나리오케스트라, 경기필하모닉, 장애인오케스트라운영팀장, 대외사업팀장, 경기광스양성불, 정책사업팀장

[협조문 “효과성평가 부서별 참여 요청”]

2024년 경기아트센터 공정거래CP 효과성평가

「경기아트센터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운영내규」 제25조에 따라 공정거래CP 운영에 관한 종합적인 의견을 수렴하는 효과성평가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전무서는 다음의 설문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점 척도로 설문결과를 산출하여 5번이 가장 높음에 해당(체크박스 선택 / 중복선택 불가)

□ 부서명:

0000팀

1. 해당 부서는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제도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

- ☐ ① 전혀 모른다 ☐ ② 잘 모른다 ☐ ③ 보통이다 ☐ ④ 잘 안다 ☐ ⑤ 매우 잘 안다

2. 해당 부서는 현재 아트센터에 공정거래 관련 위반 행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있는 경우 4~5번]

-

- ☐ ① 매우 아니다 ☐ ② 아니다 ☐ ③ 보통이다 ☐ ④ 그렇다 ☐ ⑤ 매우 그렇다

3. 해당 부서는 2024년 공정거래CP 교육이 CP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 ☐ ① 전혀 도움되지 않았다 ☐ ② 도움되지 않았다 ☐ ③ 보통이다 ☐ ④ 도움되었다 ☐ ⑤ 매우 도움되었다

4. 해당 부서는 아트센터의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운영에 전반적으로 만족하십니까?

-

- ☐ ① 매우 불만족한다 ☐ ② 불만족한다 ☐ ③ 보통이다 ☐ ④ 만족한다 ☐ ⑤ 매우 만족한다

5. 해당 부서는 위의 설문 또는 공정거래CP 운영과 관련하여 개선을 바라는 점을 자유롭게 서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해당 부서는 업무 중 발생할 수 있는 공정거래 리스크를 아래 서식에 맞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개]

주요업무	공정거래 리스크	이해관계자	발생가능성 [상/중/하]	발생시 심각도 [상/중/하]	리스크 정도 [상/중/하]

※ 6번 설문은 아트센터에 발생 우려가 있는 공정거래 리스크를 사전에 파악하고자 함이며, 최종 리스크 정도는 발생가능성과 발생시 심각도를 자체적으로 고려하여 상/중/하 중 하나를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효과성평가 설문지]

II

01. 사전감시체계

평가 지표	01.1 위험평가(Risk Assessment)	항목별 국지가중치	0.125
		지표별 국지가중치	0.229
세부 측정 지표	01.1.1 CP 관련 위험성 평가[예: 회사의 업무사항을 조사하여 법 위반 행위의 가능성이 농후한 취약분야를 식별하고 법 위반행위 가능성을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는 사전예방 행위] 기준을 마련하고 평가결과를 최소 2단계(상, 하)로 구분하고 있는가? 01.1.2 CP 관련 위험성 평가 결과 중간 이상인 위험성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를 수행하였는가?		
지표 관리 목표	01.1.1 CP 관련 위험성 평가 기준을 별도로 마련하고, 위험성 평가 결과를 3단계(상, 중, 하)로 구분한다. 01.1.2 CP 관련 위험성 평가 결과 중간 이상인 위험성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를 수행한다.		
주요 실적	24.11.12 인권경영 개선과제를 반영한 “인권존중의무 이행서약서” 시행 24.12.05 공정거래 CP 운영내규 “위험평가” 신설 24.12.20 2024년 공정거래CP 효과성평가 [위험평가] 시행		

평가
지표

01.1 위험평가(Risk Assessment)

세부
측정
지표

01.1.1 CP 관련 위험성 평가[예: 회사의 업무사항을 조사하여 법 위반 행위의 가능성이 농후한 취약분야를 식별하고 법 위반행위 가능성을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는 사전예방 행위] 기준을 마련하고 평가결과를 최소 2단계(상, 하)로 구분하고 있는가?

01 위험평가에 대한 내부기준 마련

- 경기아트센터는 CP 운영내규 제19조에 따라 위험평가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사장에게 보고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또한, 위험평가에 대한 평가방법과 내용을 제시하여 기관의 위험평가에 대한 절차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1차평가: 주관부서가 요청하는 방법에 따라 부서별로 관련 실태를 조사하여 관련자료 제출
 - 2차평가: 1차평가 및 내부 제보 등을 통해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가능성이 있는 행위에 대한 심층조사 실시

제19조(위험 평가)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행위 발생 등을 확인하기 위한 위험 평가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② 위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실시한 뒤 그 결과를 사장에게 보고한다.

1. 주관부서가 요청하는 방법에 따라 부서별로 공정거래 관련 실태를 조사하여 관련자료 제출
2. 위 제1호 및 내부 제보 등을 통해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가능성이 있는 행위 심층조사

③ 위험 평가의 결과보고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실시 회차 및 기간
2. 시행의 주체
3. 대상부서(선정기준 포함)
4. 평가 결과
5. 문제점 등에 대한 조치방안

[CP 운영내규 제19조]

02 3단계(상, 중, 하)로 구분한 위험평가 시행

- 설문조사 및 자료제출에 대한 내부직원의 피로도를 고려하여 2024년에는 효과성평가에 위험평가를 포함하여 시행하였으며, 위험평가는 부서별로 자체적으로 진단하여 3단계(상, 중, 하)로 평가하도록 하였습니다.

6. 해당 부서는 업무 중 발생할 수 있는 **공정거래 리스크**를 아래 서식에 맞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개]

주요업무	공정거래 리스크	이해관계자	발생가능성 [상/중/하]	발생시 심각도 [상/중/하]	리스크 정도 [상/중/하]

※ 6번 설문은 아트센터에 발생 우려가 있는 공정거래 리스크를 사전에 파악하고자 함이며, 최종 리스크 정도는 발생가능성과 발생시 심각도를 자체적으로 고려하여 상/중/하 중 하나를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과성평가 설문지 “위험평가 부분”]

- 위험평가 조사결과

연번	공정거래 리스크	종합위험도
1	수년간 누적 데이터에 따른 1개 업체와의 수의계약	하
2	불공정 수의계약	하
3	부당한 조건 강요	중
4	위탁용역사의 역량 및 편의 등에 따른 선호 발생	하
5	계약업체의 부당한 대금관리 및 기술 유용	하
6	독점 행위	중
7	대관 정보 제공시, 정보 불균형으로 인한 형평성	상
8	유지보수 비용절감, 불리한 계약조건 부여	상
9	불공정 수의계약	하
10	독점	하
11	수의계약에 해당하지 않는 단체(공연예술 업체 미보유)	상
12	개별약정은 약관 내용보다 불리하게 적용되지 않도록 관리	상
13	회사 규정에 따라 3회 이상 계약금지	하
14	불공정 계약체결	하
15	독점	하
16	공연단체 선정심사 및 운용업체 선정입찰	중
17	불공정 계약체결	하

○ (리스크 진단) 부서별 공정거래 리스크 진단을 자체적으로 실시하여 기관에 발생할 수 있는 공정거래 리스크를 사전에 파악하고 리스크 정도에 따른 개선방향 모색

연번	부서명	주요업무	공정거래 리스크	가능성	심각도	종합
1			수년간 누적 데이터 필요에 따른 1개 업체와의 수의계약	하	하	하
2			불공정 수의계약	하	하	하
3			부당한 조건 강요	중	중	중
4			위탁용역사의 역량 및 편의 등에 따른 선호 발생	하	하	하
5			계약업체의 부당한 대금관리 및 기술 유용	하	하	하
6			독점행위	하	하	하
7			대관 정보 제공시, 정보 불균형으로 인한 형평성	하	중	중
8			유지보수 비용절감, 불리한 계약조건 부여	하	상	상
9			불공정 수의계약	하	하	하
10			독점	하	하	하
11			수의계약에 해당하지 않는 단체(공연예술 업체 미보유)	하	상	상
12			개별약정은 약관 내용보다 불리하게 적용되지 않도록 관리	하	상	상
13			회사 규정에 따라 3회 이상 계약금지	하	하	하
14			불공정 계약체결	하	하	하
15			독점	하	하	하
16			공연단체 선정심사 및 운용업체 선정입찰	중	중	중
17			불공정 계약체결	하	하	하

[내부 결재문서 “위험평가”]

평가
지표

01.1 위험평가(Risk Assessment)

세부
측정
지표

01.1.2 CP 관련 위험성 평가 결과 중간 이상인 위험성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를 수행하였는가?

01 2025년 운영계획에 위험평가 경감조치 반영

- 경기아트센터는 2024년에 CP 8대과제를 도입하고, 효과성평가와 위험평가를 최초로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에 중간 이상의 위험성을 운영계획에 반영하여 경감조치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02 인권경영 개선과제 지속적 관리 시행

- 경기아트센터 공정거래를 위한 인권경영의 개선과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근로자 및 협력사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서번호	협조문	과제 (발신)	담당	진행
경아협-2024	(내선 430 / 과장 위) (4)	과제 (발신)	유 목	한: 양
시행일자	2024.11.12.	과제 (수신)	내: 양	진: 양
수신	수신자 검토			
발신	감사함			
제 목	2024년 인권경영향상거요고시 개선 과제 관리카드 결산 및 증빙자료 제출 요청			

- 관련 근거
 - 가. 감사원-130호(2024.1.18, 2023년 경기아트센터 인권경영평가 연구용역 결과보고)
 - 나. 감사원-1550호(2024.8.27, 2023년 인권경영향상거요고시 개선 과제 공유 및 관리카드 제출 요청)
- 2023년 인권경영향상거요고시 개선 과제 관리카드 결산 및 증빙자료 제출을 아래와 같이 요청합니다.
 - 가. 개선과제: 3개 분야 6개 과제(담당부서 불일치 문서 참조)
 - 나. 제출기한: ~2024. 11. 19.(화) 18시까지
 - 다. 제출방법: 관리카드 및 증빙자료 협조문 제출(실/본부장 결재)
 - 라. 기타사항
 - 1) 서식 일의 수정 금지
 - 2) 미준료한 경우 진행 중인 사항까지 표기 및 진행 중인 상황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

붙임: 2023년 인권경영향상거요고시 개선과제 관리카드 3부, 4부.

감사실장

수신처: 경영지원팀, 재무회계팀, 운영기획팀

2023년 인권경영평가 개선과제 관리카드

분야	지침사-협력사에게 의한 경제노동 차별	관리카드 번호	문서번호
개선과제	개선과제	개선과제	개선과제
○ 불특정 다수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불특정 다수 인권경영 자율점검표 또는 '인권경영 준수' 확인서 등을 자율적으로 실시			
○ 인권경영 자율점검표 또는 '인권경영 준수' 확인서를 통해			
· 불특정 다수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조치함.			
· 근로자 권리보호 위한 서약 내용 포함			
○ 해당 내용			
향후 계획			
○ 인권경영 준수 확인서(인) 확립: 2024년 9월			
○ 유관 계약 조항 대체: '인권경영 자율점검표' 도입: 2024년 12월(예정)			
담당자 (직책)	부서: 재무회계팀	담당: 한 임 부장, 나 김 대리(011-230-3223, 3224)	

[인권경영 개선과제 관리]

- 아울러, 인권경영 개선과제를 2024년부터 실질적으로 반영하여 계약 필수 서류에 “인권존중의무 이행서약서”를 추가함으로써 협력사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권존중의무 이행서약서

계약명 : 0

당사는 「기업 활동과 관련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보호」가 인권경영 및 ESG경영의 중요한 요소를 깊이 인식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고 보호하는 경영활동에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귀 기관에서 발주하는 위 계약 참여에 동의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제1조(차별금지) 종업원을 고용함에 있어 인종, 종교, 장애, 성별, 출신지,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습니다.

제2조(노동권존중) 근로자의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하고 존중하겠습니다.

제3조(강제노동금지)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도 이용하지 않습니다.

제4조(아동노동금지) 15세 이하 아동의 고용과 노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합법적으로 연소자에게 노동시킬 경우에는 교육기회의 보장과 안전에 대한 배려를 하겠습니다.

제5조(안전권존중) 근로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환경을 제공하고 위험한 작업환경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안전장구와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제6조(사고시 조치) 작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나 질병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제7조(지역주민보호) 기업활동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현지주민의 생명권, 거주이전의 자유, 안전에 대한 권리, 재산소유권 등을 존중하고 보호하겠습니다.

제8조(환경보호) 심각한 환경훼손과 환경재해를 방지, 완화, 통제할 수 있도록 적절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제9조(이해관계자보호)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보건과 안전에 위배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10조(징검 및 사정조치 시 협조의무) 기관에서 당사의 인권보호 준수 여부를 점검할 때 적극 협조하고, 점검결과 인권침해 사실이 드러나거나 인권침해로 인하여 중단과 업무수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 기관의 시정조치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위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켜겠습니다.

1900년 1월 0일

서약자

업제명 : 0

대표자 : 0 (인)

경기아트센터 귀하

협력회사 인권존중 자율점검표

재단법인 경기아트센터(이하 아트센터)는 아트센터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있어 사회적 책임경영의 원칙과 이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트센터는 협력회사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존중하며, 협력회사가 아트센터의 사회적 책임경영 원칙과 이념에 부합할 수 있도록 인권존중의무 이행서약서를 성실히 이행하고 준수사항을 권고드립니다.

본 점검표는 각 협력회사가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적절히 준수하고 있는지 스스로 진단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각 항목의 준수 여부에 대해서 예, 아니오로 표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항목	주요 내용	준수여부
차별금지	우리회사는 종업원을 고용함에 있어, 인종, 종교, 장애, 성별, 출신지,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습니다.	[] 예 [] 아니오
노동권 존중	우리회사는 근로자의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하고 존중한다.	[] 예 [] 아니오
강제노동금지	우리회사는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도 이용하지 않습니다.	[] 예 [] 아니오
아동노동금지	우리회사는 관련 적용 법규에 따라 15세 미만인 자의 고용과 노동을 금지한다.	[] 예 [] 아니오
안전권존중	우리회사는 근로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환경을 제공하고 위험한 작업환경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안전장구 제공 및 교육을 실시한다.	[] 예 [] 아니오
사고시 조치	우리회사는 산업재해 및 질병을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제도와 절차를 갖 추고 있다.	[] 예 [] 아니오
환경보호	우리회사는 환경관련 적용법규를 성실히 준수한다.	[] 예 [] 아니오

1900년 1월 0일

서약자

업제명 : 0

대표자 : 0 (인)

경기아트센터 귀하

[인권존중의무 이행서약서]

II

01. 사전감시체계

평가 지표	01.2 사전업무 협의제도	항목별 국지가중치	0.125
		지표별 국지가중치	0.367
세부 측정 지표	01.2.1 해당 부문이 준수하여야 하는 공정거래 법규 및 필수 법규 위반 소지가 있는 행위를 검토할 때 CP 관리자 또는 감사실 등 타 전문 감독부서와 미리 협의를 거치는 사전 업무협의제도가 구축되어 있는가? 01.2.2 사전업무협의제도의 운영과 관련된 기록을 관리하고 있는가?(예: 회의록, 의사결정보고서, 업무체크리스트 등) 01.2.3 사전업무협의제도를 활용하여 임직원의 해당 부문이 준수하여야 하는 공정거래 법규 및 필수 법규 위반 행위를 미리 예방한 사례가 있는가?		
지표 관리 목표	01.2.1 기관의 준수하여야 하는 공정거래 법규 및 필수 법규 위반 소지가 있는 행위를 검토할 때 감독부서와 미리 협의를 거치는 사전 업무협의제도를 구축한다. 01.2.2 사전업무협의제도 운영과 관련된 기록을 관리한다. 01.2.3 사전업무협의제도를 활용하여 임직원의 해당 업계가 준수하여야 하는 공정거래 법규 및 필수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사전예방 활동을 충실히 이행한다.		
주요 실적	24.12.05 공정거래 심의를 위한 “자율준수협의체” 신설		
	- 공정거래 사전업무협의를 위한 일상감사 실시		

평가
지표

01.2 사전업무 협의제도

세부
측정
지표

01.2.1 해당 부문이 준수하여야 하는 공정거래 법규 및 필수 법규 위반 소지가 있는 행위를 검토할 때 CP 관리자 또는 감사실 등 타 전문 감독부서와 미리 협의를 거치는 사전 업무협의제도가 구축되어 있는가?

01 공정거래 심의를 위한 자율준수협의체 신설

- 경기아트센터는 CP 운영내규 제11조, 제12조에 따라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및 예방활동에 대한 주요사안을 심의하는 자율준수협의체를 신설하여 그 구성 및 운영방안을 규정화하고 있습니다.

제3절 자율준수협의체

제11조(협의체의 구성) ① 아트센터는 공정거래CP 운영과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및 예방 활동에 대한 주요 사안을 심의하는 협의체를 조직할 수 있다.

② 협의체의 위원장은 자율준수관리자로 한다. 단, 자율준수관리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율준수관리자가 사전에 지명한 자가 위원장을 수행한다.

③ 협의체는 자율준수관리자를 포함하여 본부장급 이상으로 총 6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4. 12. 26.>

④ 협의체의 간사는 주관부서의 부서장으로 하고 운영은 주관부서가 한다.

제12조(협의체의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며 협의체 운영을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안건의 당사자 또는 관련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회의안건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관련부서에 요구할 수 있다.

③ 협의체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사안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⑤ 협의체는 아트센터와 소속 직원을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4. 12. 26.>

1. 공정거래CP 운영계획 및 운영결과에 관한 사항
2. 공정거래CP 제도와 정책에 관한 사항
3.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의 판단이 어려운 사항
4. 공정거래CP 관련 리스크 점검 및 효과성평가에 관한 사항
5. 공정거래CP 우수활동자 선정 및 인센티브에 관한 사항

[CP 운영내규 제11조, 제12조]

02 공정거래 사전업무협의를 위한 일상감사 실시

- 경기아트센터는 「경기아트센터 내부감사 규정」 제33조에 따라 일상감사의 범위를 정하고 있으며, 제34조에 따라 사장이 최종 결재권자인 경우에는 최종 결재에 앞서, 다른 경우에는 결재 후 일상감사를 받도록하고 있습니다.
- 일상감사 대상사업 범위

분야	대상사업 범위
1 주요 정책의 집행업무	- 기관의 주요 역점시책, 핵심사업 추진 및 변경
2 예산관리 업무	- 예산의 이용·전용 및 이월, 결산에 관한 사항 - 예비비 집행(단, 재해복구 사업비는 제외)
3 인사 업무	- 인사위원회 심의 안건 - 급여 및 복리후생의 지급기준
4 계약 업무	-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의 제계약 (단,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26조, 제27조에 의한 수의계약 제외) - 자산매각 - 그 밖에 일상감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 계약 업무
5 기타	- 규정·내규·지침 등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 소송 및 중재 등에 관한 사항 - 예산집행 또는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는 외부기관과의 협약·협약, 양해각서 체결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기관장 또는 감사부서의 장이 사전 예방적 감사가 필요하다고 선정한 사항

제33조(일상감사 범위) ① 일상감사업무의 업무범위는 <별표1>과 같다.

②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상감사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일상감사에 회부할 수 있다.

제34조(일상감사의 시기) ① 일상감사를 요하는 사항은 사장이 최종결재권자인 경우에는 최종 결재에 앞서, 기타의 경우에는 최종결재권자의 결재 후 감사인에게 내용을 검토받아야 하며, 검토에 필요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안건내용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기에 회부할 수 없을 때에는 적어도 시행 전까지 객관적으로 타당한 입증자료에 의하여 사후 일상감사를 받아야 하며 이 때에 감사 결재란 상단에 주서로 사후처리 대상임을 표시한다.

③ 이사회 부의 안건 및 제위원회 개최에 관한 사항으로서 별표 1호에 정한 일상감사 해당 사항인 경우에는 개최에 앞서 안건내용 1부를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일상감사를 받은 업무 중 시행상 변경사유가 생길 경우에는 지체없이 감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경기아트센터 내부감사 규정 제33조, 제34조]

<별표 1> <개정 2024. 9. 11.>

일상감사 대상사업 범위

분야	대상사업 범위
1. 주요 정책의 집행업무	• 기관의 주요 역점시책, 핵심사업 추진 및 변경 (집행부서의 장이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뢰한 경우) - 기관장의 중대한 결정이 필요한 사업
2. 예산관리 업무	• 예산의 이용·전용 및 이월, 결산에 관한 사항 • 예비비 집행(단, 재해복구 사업비는 제외)
3. 인사 업무	• 인사위원회 심의 안건 • 급여 및 복리후생의 지급기준
4. 계약 업무	• 추정가격 2천만 원 이상의 제계약 (단,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 25조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26조, 제27조에 의한 수의계약 제외) • 자산매각 • 그밖에 일상감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 계약 업무
5. 기타	• 규정·내규·지침 등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 소송 및 중재 등에 관한 사항 • 예산집행 또는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는 외부기관과의 협약·협 의, 양해각서 체결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기관장 또는 감사부서의 장이 사전 예방적 감사가 필 요하다고 선정한 사항

[경기아트센터 내부감사 규정 별표1]

평가
지표

01.2 사전업무 협의제도

세부
측정
지표

01.2.2 사전업무협의제도의 운영과 관련된 기록을 관리하고 있는가?(예: 회의록, 의사결정보고서, 업무체크리스트 등)

01 공정거래 관련 문서의 기록 및 보관

- 경기아트센터는 CP 운영내규 제26조에 따라 공정거래 관련자료는 전 부서가 보관하게 되어 있으며, 관련자료를 명시하여 문서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제26조(문서관리) ① 주관부서는 공정거래CP 운영에 관한 문서 일체를 자율준수관리자의 책임 하에 분류하고 보관한다.

② 아트센터의 전 부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정거래 관련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1. 배포된 자율준수편람
2. 체결된 계약서 및 부속서류
3. 외부 당사자와 작성한 합의서, 약정서 등
4. 공정거래위원회 및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 공정거래 관련 법규와 관련된 문서 일체

③ 이 내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경기아트센터 문서규정」에 따른다.

[CP 운영내규 제26조]

02 일상감사의 기록 및 보관

- 「경기아트센터 내부감사 규정」 제39조제1항에 따라 일상감사는 연도별로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건별로 처리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39조(일상감사의 기록) ① 일상감사 접수는 연도별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건별로 처리상황을 (별지 11호 서식)에 따라 기록한다.

② 의견서를 발행한 경우 주요 사항을 (별지 11호 서식)에 기록하고 발행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경기아트센터 내부감사 규정 제39조]

<별지 제11호 서식>일상감사일지

일 상 감 사 일 지

				(협의체 구성 관련 내용 보완 요청)		
일상-187-1127	2024년 경기도 장애인 오케스트라 창단식 추진계획 일상감사 의뢰(정정)	장애인오케스트라운영팀	· 사업 추진 내용의 타당성 · 사업 추진의 합목적성	· 검토 완료 · 특이사항 없음 · 향후 의뢰 시 권고 내용 첨언	김주리	한지양
일상-188-1127	2024 경기도무용단 레퍼토리 시즌 [세종] 무대세트 제작	경기도 무용단공연 활성화팀	· 관련 법령 및 제 규정 부합 여부	· 검토 완료 · 특이사항 없음 (사업자등록증 보완 후 진행하였음)	유태욱	한지양
일상-189-1127	<2025 경기아트센터 신년음악회>	공연기획팀	· 사업 추진 내용의 타당성 · 사업 추진의 합목적성	· 검토 완료 · 특이사항 없음 (사업총예산 및 '25년 예상 소요 예산 추가 기재 요망)	유태욱	한지양
일상-190-1127	<경기 풍류 시리즈: 十二잡가> 추진 계획(안)	경기문화재단 오케스트라	· 사업 추진 내용의 타당성 · 사업 추진의 합목적성	· 검토 완료 · 특이사항 없음 (공연제작사세 지급 내규 4조 3항 1호 근거 사장 승인 후 진행 강조)	유태욱	한지양
일상-191-1203	[재의뢰]경기도국악원 대연습실 내부환경 개선 전기공사	국악운영팀	· 관련 법령 및 제 규정 부합 여부	· 검토 완료 · 특이사항 없음 (계약방법 및 예산 증액으로 재의뢰된 건)	유태욱	한지양
일상-192-1204	2024년 예산(관서운영비, 명예퇴직금) 증액	기획조정팀	· 추진 내용의 타당성 · 추진의 합목적성	· 검토 완료 · 특이사항 없음	김주리	한지양

[일상감사 일지]

평가
지표

01.2 사전업무 협의제도

세부
측정
지표

01.2.3 사전업무협의제도를 활용하여 임직원의 해당 부문이 준수하여야 하는 공정거래 법규 및 필수 법규 위반 행위를 미리 예방한 사례가 있는가?

01 일상감사를 통한 공정거래 위반 행위 사전예방

- 경기아트센터는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의 계약 건에 대해 일상감사를 실시하여 근로자 및 협력사에 대한 불공정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고 있습니다.
- 실제로 제작비 산출근거 및 계약방식에 대한 일상감사를 통해 발주부서에 사업계획에 대한 수정을 요청하여 불공정거래를 예방한 사례가 있습니다.

<별지 제9호 서식> 의견서

일 상 감 사 의 의 견 서			
제 목			
관제부서	사전 번호	2024-일상-29-0531	
	필수 일자	2024. 5. 31.	
상기 사항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의견을 통지함 2024년 6월 5일 경기아트센터 감사실장 원 : 양 (인)			
<u>검 토 의 견</u> · 제작비 대비 수입목표가 낮은 관계로 제작비 산출근거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작비 항목당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별도로 작성하여 일상 감사를 다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작비-인건비-재료비의 경우 1인 계약이 대다수로 확인되는 바, '23.9. 개정된 회계 규정 "제108조의5(계약의 자격조건)" 과의 준동이 우려되므로 해당 조항을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일상감사 의견서]

II

01. 사전감시체계

평가 지표	01.3 직접보고체계	항목별 국지가중치	0.125
		지표별 국지가중치	0.208
세부 측정 지표	01.3.1 CP 관리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에게 해당 부문이 준수하여야 하는 공정거래 법규 및 필수 법규 위반 행위 발견 시 최고경영진에 독립적으로 보고할 수 있는 책임 및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가?		
지표 관리 목표	01.3.1 CP 관리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에게 기관이 준수하여야 하는 공정거래 법규 및 필수 법규 위반 행위 발견 시 최고경영진에게 독립적으로 보고할 수 있는 책임 및 권한을 부여한다.		
주요 실적	24.12.05 내부규정을 통한 직접보고체계 구축		

평가
지표

01.3 직접보고체계

세부
측정
지표

01.3.1 CP 관리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에게 해당 부문이 준수하여야 하는 공정거래 법규 및 필수 법규 위반 행위 발견 시 최고경영진에 독립적으로 보고할 수 있는 책임 및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가?

01 내부규정을 통한 직접보고체계 구축

- 경기아트센터는 CP 운영내규 제21조에 따라 자율준수관리자 또는 주관부서가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행위를 확인하였을 경우, 그 시급성 및 중요도를 감안하여 사장에게 직접 보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21조(직접보고체계) ① 주관부서는 직원의 명백한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행위를 확인하였을 경우 그 시급성 및 중요도를 감안하여 유관부서에 관련 사실을 공유하거나 협조를 구하지 않고 사장에게 직접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6.>
② 사장은 위 제1항에 따른 보고결과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문제점 해결 등을 위한 조치를 취한다.

[CP 운영내규 제21조]

- 또한, 감사인도 「경기아트센터 내부감사 규정」 제7조에 따라 감사의 독립 원칙에 의해 직접보고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제7조(감사의 독립원칙) ① 감사실은 사장의 지시사항을 제외하고 아트센터의 집행기관과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② 감사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독립성 저해요인이 있는 경우 당해 감사에 관여할 수 없다.
1. 감사인이 감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혈연 등 개인적인 연고나 경제적 이해관계로 인해 감사계획, 감사실시 및 감사결과의 처리 과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감사인이 감사대상 업무의 수행이나 의사결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③ 감사인이 감사의 독립성이나 감사활동의 공정한 수행을 방해하는 청탁이나 압력 등이 있는 경우 감사실장은 사장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한 후, 사장 지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경기아트센터 내부감사 규정 제7조]

II

01. 사전감시체계

평가 지표	01.4 내부고발시스템	항목별 국지가중치	0.125
		지표별 국지가중치	0.196
세부 측정 지표	01.4.1 임직원이 해당 부문이 준수하여야 하는 공정거래 법규 및 필수 법규 위반 행위를 확인한 경우 이를 고발할 수 있는 내부고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가? 01.4.2 내부고발시스템은 임직원이 내부 및 외부에서 상시 접근 가능하고 고발 요건에 제한이 없는가? 01.4.3 내부고발시스템이 내부고발자에 대한 권리 보호(보복금지, 익명성 등) 및 불이익 없음을 투명하게 보장하고 있는가? 01.4.4 내부고발시스템에 독립성, 중립성, 객관성, 익명성을 보장할 수 있는 조사원으로 조사팀을 구성하고 조사 권한을 부여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가? 01.4.5 내부고발시스템에 따른 조사팀의 업무 경과 및 조사결과가 이사회 등 최고 의사결정기구에 주기적으로 보고되도록 정하고 있는가? [예: 이사회 보고안건, 정기 경영회의 보고안건 등]		
지표 관리 목표	01.4.1 임직원이 기관이 준수하여야 하는 공정거래 법규 및 필수 법규 위반 행위를 확인한 경우 이를 고발할 수 있는 내부고발시스템을 운영한다. 01.4.2 내부고발시스템은 임직원이 내부 및 외부에서 상시 접근 가능하고 고발 요건에 제한이 없다. 01.4.3 내부고발시스템이 내부고발자에 대한 권리보호(보복금지, 익명성 등) 및 불이익 없음을 투명하게 보장한다. 01.4.4 내부고발시스템에 독립성, 중립성, 객관성, 익명성을 보장할 수 있는 조사원으로 조사팀을 구성하고 조사권한을 부여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한다. 01.4.5 내부고발시스템에 따른 조사팀의 업무 경과 및 조사결과를 이사회 등 최고 의사결정기구에 주기적으로 보고한다.		
주요 실적	24.04.26	경기아트센터 익명신고 헬프라인 시스템 운영지침 제정	
	24.12.20	익명신고 시스템 헬프라인 “공정거래” 항목 신설	

평가
지표

01.4 내부고발시스템

세부
측정
지표

01.4.1 임직원이 해당 부문이 준수하여야 하는 공정거래 법규 및 필수 법규 위반 행위를 확인한 경우 이를 고발할 수 있는 내부고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가?

01 내부규정을 통한 내부고발시스템 구축

- 경기아트센터 CP 운영내규 제22조와 「경기아트센터 내부감사 규정」 제51조에 따라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행위를 제보하기 위한 내부고발시스템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22조(내부고발시스템)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행위를 제보하기 위한 내부고발시스템을 설치한다. 단, 신고체계의 일원화를 위해 주관부서가 아닌 부서의 익명신고 등 내부고발시스템을 활용하는 경우 그 시행부서는 공정거래 관련 제보내용을 자율준수관리자에게 보고한다.

② 자율준수관리자는 제보자가 보복, 차별, 인사상의 불이익 등을 받지 않도록 철저히 보호하며, 자율준수관리자 및 주관부서는 제보 사실의 처리 목적 이외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비밀을 보장한다.

③ 자율준수관리자는 직원이 제보한 내용이 공정거래 관련 예방활동에 기여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 내규 제24조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6.>

[CP 운영내규 제22조]

제51조(익명제보신고) ① 감사실장은 아트센터 임직원의 규정위반, 「임직원 행동 강령위반」 및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기타 관계 법령에 저촉하는 행위를 예방하고 개선하기 위한 익명제보신고 제도를 운용할 수 있다.

② 감사실장은 다음의 경우 종결 처리한다.

1. 제보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2. 종결된 사안에 대한 반복 민원
3. 이미 수사·감사 등이 진행되고 있는 사안
4. 언론 등의 매체에 공개된 사안
5. 제보자가 제보를 취하한 경우
6. 감사실 규정이나 권한 밖의 사안
7. 입증할 방법이나 증거 없이 의혹을 제기한 사안

③ 감사실장은 제보자가 제보를 취하 하더라도 그 내용이 중대한 공익침해, 부패행위, 경영 질서 문란 등의 행위로 판단되고 그 증거를 확보한 경우 조사할 수 있다.

[경기아트센터 내부감사 규정 제51조]

02 익명신고 “헬프라인” 공정거래 공익제보 강화

- 경기아트센터는 익명신고 “헬프라인” 을 현재 운영중이며, 2024년에 “공정거래” 신고항목을 신설하여 공정거래에 대한 공익 제보 시스템을 강화하였습니다.

조직명	경기아트센터		
신고유형	☐ 1. (공익) 영리 행위 등 행동강령 위반 + ☐ 2. (공익) 청탁금지법 및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 ☒ 3. (공익) 공정거래 위반 - (신고사항)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행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관련근거) 경기아트센터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운영내규 제22조 ☐ 4. (공익) 소극행정 + ☐ 5. (공익) 기타 공익침해 + ☐ 6. (고충) 인권침해 + ☐ 7. (고충) 직장 내 괴롭힘·갑질 + ☐ 8. (고충) 성희롱·성폭력 및 스토킹 + ☐ 9. (고충) 기타 고충 + ☐ 10. 개선 건의 및 미답 사례, 직원 칭찬 +		

[익명신고 시스템 헬프라인 “공정거래” 신고항목 신설]

평가
지표

01.4 내부고발시스템

세부
측정
지표

01.4.2 내부고발시스템은 임직원이 내부 및 외부에서 상시 접근 가능하고 고발 요건에 제한이 없는가?

01 상시 접근이 가능한 익명신고 시스템 “헬프라인”

- 익명신고 “헬프라인”은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손쉽게 접근이 가능하며 모든 이해관계자가 공정거래 관련 사항에 대해 익명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경기아트센터 Gyeonggi Arts Center	공연·전시	교육·문화복지	문화소식	대관	고객소통	경기도예술단	기관소개
공연·전시일정	교육 강좌 소개	새소식	시설안내	공연리뷰	경기도극단	조직도	
예매안내	아트센터 교육신청	사업공고	대관신청	자주묻는질문	경기도무용단	사전정보공표	
이벤트	국악원 교육신청	예술과만남	대관공고	익명신고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	경영공시	
	문화복지공연 소개	보도자료	대관규정	고객의 소리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		
	문화복지공연 신청		대관료	공연장안내	경기팝스앙상블		
				오시는 길	경기리베라오케스트라		

익명신고 헬프라인



경기아트센터는

윤리·인권경영과 반부패 실천을 위해 **익명 신고시스템 헬프라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기아트센터는 임직원의 부패·청탁·위법행위·인권침해 등 경기아트센터 경영이념과 사회질서를 저해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 제보를 받고 있으며, 제보 내용의 기밀성과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독립된 외부 전문회사 "레드위슬"을 통해 익명신고를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헬프라인은 경기아트센터 임직원, 협력업체 등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헬프라인으로 신고한 후 **고유번호**와 **비밀번호**를 통해 헬프라인 담당자와 익명으로 소통 및 처리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헬프라인 안내



[홈페이지 “익명 신고 시스템 헬프라인”]

평가
지표

01.4 내부고발시스템

세부
측정
지표

01.4.3 내부고발시스템이 내부고발자에 대한 권리 보호(보복금지, 익명성 등) 및 불이익 없음을 투명하게 보장하고 있는가?

01 공익 제보자 보호를 위한 조치

- 경기아트센터는 CP 운영내규 제22조에 따라 자율준수관리자는 제보자가 보복, 차별, 인사상의 불이익 등을 받지 않도록 철저히 보호해야 하며, 자율준수관리자 및 주관부서는 제보 사실의 처리 목적 이외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비밀을 보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22조(내부고발시스템)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행위를 제보하기 위한 내부고발시스템을 설치한다. 단, 신고체계의 일원화를 위해 주관부서가 아닌 부서의 익명신고 등 내부고발시스템을 활용하는 경우 그 시행부서는 공정거래 관련 제보내용을 자율준수관리자에게 보고한다.

② 자율준수관리자는 제보자가 보복, 차별, 인사상의 불이익 등을 받지 않도록 철저히 보호하며, 자율준수관리자 및 주관부서는 제보 사실의 처리 목적 이외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비밀을 보장한다.

③ 자율준수관리자는 직원이 제보한 내용이 공정거래 관련 예방활동에 기여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 내규 제24조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6.>

[CP 운영내규 제22조]

- 또한, 「경기아트센터 내부감사 규정」 제12조제2항에 따라 감사인은 직무상 알게 된 일체의 기밀을 정당한 이유 없이 공개 또는 누설하거나 도용하지 않도록 되어 있어, 제보자의 익명성을 빈틈없이 보호하고 있습니다.

제12조(감사인의 준수사항) ① 감사인은 감사를 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감사인은 관계 법규, 규정 등을 근거로 하여 사실과 증거에 따라 공정하게 감사하여야 한다.
2. 감사인은 직무상 알게 된 일체의 기밀을 정당한 이유 없이 공개 또는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경기아트센터 내부감사 규정 제12조]

평가
지표

01.4 내부고발시스템

세부
측정
지표

01.4.4 내부고발시스템에 독립성, 중립성, 객관성, 익명성을 보장할 수 있는 조사원으로 조사팀을 구성하고 조사 권한을 부여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가?

01 자율준수관리자의 독립적인 조사권 부여

- CP 운영내규 제7조제2호에 따라 자율준수관리자는 공정거래CP 및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점검 및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니고 있으며, 이 조사권은 제10조에 따라 **업무수행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제7조(자율준수관리자의 권한) 자율준수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닌다.

1. 공정거래CP 및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점검 및 조사권
2. 위 제1호에 해당하는 직원에 대한 시정 요구 권한
3. 위 제1호에 해당하는 직원 중 중대한 법 위반 행위자에 대한 인사위원회 회부 요구 권한
4. 기타 공정거래CP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

제10조(신분보장 및 독립성) ① 아트센터는 공정거래CP 업무수행의 객관성, 독립성 확보를 위해 자율준수관리자 및 주관부서에 인사상의 불이익을 부과하여서는 안 된다.

② 자율준수관리자는 공정거래CP 운영에 독립적이며,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의 위험성이 있는 업무를 직접 담당하여서는 안 된다.

[CP 운영내규 제7조, 제10조]

02 감사인의 독립성 부여 및 전문가 구성

- 「경기아트센터 내부감사 규정」 제7조제1항에 따라 감사인은 독립원칙에 의해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감사의 독립성이나 감사 활동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청탁, 압력 등이 있는 경우 사장은 「경기아트센터 내부감사 규정」 제7조제3항에 따라 공정한 사건조사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사장은 조사 과정에 중립성, 객관성 등이 필요한 경우 「경기아트센터 내부감사 규정」 제17조에 따라 상급 감사기구 또는 외부 전문가 등에게 감사를 의뢰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7조(감사의 독립원칙) ① 감사실은 사장의 지시사항을 제외하고 아트센터의 집행기관과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② 감사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독립성 저해요인이 있는 경우 당해 감사에 관여할 수 없다.

1. 감사인이 감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혈연 등 개인적인 연고나 경제적 이해관계로 인해 감사계획, 감사실시 및 감사결과의 처리 과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감사인이 감사대상 업무의 수행이나 의사결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③ 감사인이 감사의 독립성이나 감사활동의 공정한 수행을 방해하는 청탁이나 압력 등이 있는 경우 감사실장은 사장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한 후, 사장 지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7조(감사대행 실시) 사장은 감사사항의 성질,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상급 감사기구 및 외부 전문가 등에게 감사를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경기아트센터 내부감사 규정 제7조, 제17조]

평가
지표

01.4 내부고발시스템

세부
측정
지표

01.4.5 내부고발시스템에 따른 조사팀의 업무 경과 및 조사결과가 이사회 등 최고 의사결정기구에 주기적으로 보고되도록 정하고 있는가?
[예: 이사회 보고안건, 정기 경영회의 보고안건 등]

01 익명신고 “헬프라인” 처리절차에 대한 규정화

- 경기아트센터는 「경기아트센터 익명신고 헬프라인 시스템 운영지침」을 제정하여 내부고발시스템에 대한 처리절차를 규정화하고 있으며, 제보 내용 및 조사결과를 사장에게 직접 보고하여 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경기아트센터 익명신고 헬프라인 시스템 운영지침

제정 2024. 4. 26.
일부개정 2024. 12. 2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신뢰, 공정, 보호의 원칙을 바탕으로 제정된 경기아트센터(이하 “아트센터”라 한다) 익명 신고시스템 헬프라인(이하 “헬프라인”이라 한다)에 대한 세부적인 업무처리 지침을 규정함으로써 헬프라인 신고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건전한 조직체제를 확립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아트센터 헬프라인을 통하여 접수되는 신고 사항에 대하여 접수부터 검토, 처리, 종료까지 업무처리에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헬프라인 시스템”이라 함은 아트센터와 독립된 제3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익명보상 신고 시스템을 말한다.
2. “관리자”라 함은 헬프라인을 통해 들어온 신고의 접수 및 해문 등 전반적인 관리·통괄하는 자를 말한다.
3. “담당자”라 함은 각 신고에 대하여 제정, 조사 및 답변으로 관리자가 지명하는 자를 말한다.
4. “검토 및 선별”이라 함은 신고된 내용에 대해 분류, 입사조치, 우선순위 지정 등을 위해 이루어지는 평가를 말하며, 우선순위에 따라, 신뢰도평가, 피해회복평가 등이 이에 해당한다.
5. “이해관계자”라 함은 신고 및 조사처리 과정에 관련된 모든 관계자를 의미하며 신고자, 피신고자, 목격자, 협력원, 근로자, 대표, 협력업체, 제3자, 조직 전체 등이 될 수 있으며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6. “위해행위”라 함은 신고자나 이해관계자에게 해를 가할 수 있는 직접적·간접적 부차위(갑질 등) 행위 또는 이에 대한 실질적 위협행위를 말한다.

제4조(관리자 및 담당자 지정) ① 관리자는 감사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② 관리자는 각 신고별로 부서별 처리 권한, 해당 부서 내 업무분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임자와 판단되는 자를 담당자로 지명한다.
③ 헬프라인의 로그인 정보는 감사업무 담당 부서 이외에 공유를 금한다.

제2장 처리절차 등

제5조(기본원칙) 접수된 신고는 신뢰, 공정, 보호의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1. 접수된 신고는 상호 신뢰의 원칙에 따라 처리되어야 하며, 신고자에게 처리 과정에 대한 신뢰를 주기 위해 헬프라인을 통해 적절한 피싱이 이루어져야 한다.
2. 모든 신고에 대한 처리는 공정한 처리절차에 따라 진행 및 종료되어야 한다.
3. 접수 및 처리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원과 접수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모든 처리절차에서 보호되어야 한다.

제6조(신고분류 및 세부신고유형) ① 헬프라인에서 접수하는 신고문구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익제보(이하 “공익”이라 한다)
 2. 고충신고(이하 “고충”이라 한다)
- ② 헬프라인 세부신고유형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성하며, 필요시 사상의 경계를 작한 후 신규 항목 및 삭제할 수 있다.
1. (공익) 형리 행위 등 행동강령 위반
 2. (공익) 불합금지법 및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3. (공익) 부정거래 위반
 4. (공익) 소극행정
 5. (공익) 기타 공익침해
 6. (고충) 인권침해

[경기아트센터 익명신고 헬프라인 시스템 운영지침]

II

02. 제재 및 인센티브 시스템

평가 지표	02.1 인사제재 시스템	항목별 국지가중치	0.145
		지표별 국지가중치	0.584
세부 측정 지표	02.1.1 해당 부문이 준수하여야 하는 공정거래 법규 및 필수 법규 위반 임직원에 대한 인사제재 유형 및 정도 등에 대한 명문화된 규정이 있는가? 02.1.2 해당 부문이 준수하여야 하는 공정거래 법규 및 필수 법규 위반 행위에 따른 인사제재 및 재발 방지 활동을 한 사례가 있는가?		
지표 관리 목표	02.1.1 해당 업계가 준수하여야 하는 공정거래 법규 및 필수 법규 위반 임직원에 대한 인사제재 유형 및 정도 등에 대한 명문화된 규정을 운영한다. 02.1.2 기관이 준수하여야 하는 공정거래 법규 및 필수 법규 위반 행위에 따른 인사제재 및 재발방지 활동을 실시한다.		
주요 실적	24.12.05 공정거래 법규 위반 직원에 대한 제재 기준 정립		
	- 위반사례 재발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교육 시행		

평가
지표

02.1 인사제재 시스템

세부
측정
지표

02.1.1 해당 부문이 준수하여야 하는 공정거래 법규 및 필수 법규 위반 임직원에 대한 인사제재 유형 및 정도 등에 대한 명문화된 규정이 있는가?

01 공정거래 위반 직원에 대한 제재 기준 정립

- 경기아트센터는 CP 운영내규 제23조에 따라 공정거래 법규를 위반한 직원에 대하여 세부적인 제재 기준을 정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내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경기아트센터 상벌규정」, 「경기아트센터 임직원 행동강령」에 따라 제재기준 및 절차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제23조(직원 제재)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공정거래CP 운영과정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확인하였을 경우, 해당 직원에 대한 징계 및 전보 등 제재조치를 인사위원회에 요구한다.
<개정 2024. 12. 26.>

1. 직원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행위임을 인지하였음에도 자율준수관리자와 협의없이 업무를 강행한 경우 <개정 2024. 12. 26.>
 2. 직원의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행위로 인하여 아트센터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과징금, 검찰 고발 및 그에 준하는 처분을 받았거나, 법원의 결정으로 인하여 아트센터에 손해 배상 등 금전적 피해를 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개정 2024. 12. 26.>
 3. 위 제1호 또는 제2호 행위로 인해 제재조치를 받은 이후에도 동일하거나 유사한 위반 행위를 반복하는 과정이 자율준수관리자로부터 확인된 경우
- ② 자율준수관리자는 직원이 위 제1항 이외의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행위를 한 경우 또는 공정거래CP 활동에 불성실하게 참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원에게 경고하고 그 사실을 해당 직원의 상급자에게 통지한다. <개정 2024. 12. 26.>
- ③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자에 대한 제재절차, 방법, 기준 등 이 내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경기아트센터 상벌규정」 및 「경기아트센터 임직원 행동강령」에 따른다.

[CP 운영내규 제23조]

평가
지표

02.1 인사제재 시스템

세부
측정
지표02.1.2 해당 부문이 준수하여야 하는 공정거래 법규 및 필수 법규 위반
행위에 따른 인사제재 및 재발 방지 활동을 한 사례가 있는가?

01 위반사례 재발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교육 시행

- 경기아트센터는 최근 공정거래 관련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아, 인사제재 및 재발방지 활동을 한 사례가 없습니다. 하지만 경기아트센터는 업무수행 중 위반사례가 발생한 경우 「경기아트센터 상벌규정」에 따라 해당 직원 또는 부서에 적정한 조치를 취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재발방지 교육 시행사진]

II

02. 제재 및 인센티브 시스템

평가 지표	02.2 인센티브 시스템	항목별 국지가중치	0.145
		지표별 국지가중치	0.416
세부 측정 지표	02.2.1 공정거래 법규 준수 및 CP 확산 기여에 대한 포상 또는 시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 사례가 있는가?		
지표 관리 목표	02.2.1 공정거래 법규 준수 및 CP 확산 기여자에 대한 포상 또는 시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주요 실적	24.12.05	CP 운영내규에 따른 공정거래 인센티브 제도 수립	
	24.12.30	CP 확산에 기여한 담당자 사장 표창 수여	

평가
지표

02.2 인센티브 시스템

세부
측정
지표

02.2.1 공정거래 법규 준수 및 CP 확산 기여에 대한 포상 또는 시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 사례가 있는가?

01 공정거래 인센티브 제도 수립

- 경기아트센터는 CP 운영내규 제24조에 따라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예방 및 법률 비용 감소에 기여한 직원에 대하여 공정거래 CP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또한, CP 운영내규 제22조제3항에 따라 제보 내용이 공정거래 관련 예방활동에 기여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22조(내부고발시스템)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행위를 제보하기 위한 내부고발시스템을 설치한다. 단, 신고체계의 일원화를 위해 주관부서가 아닌 부서의 익명신고 등 내부고발시스템을 활용하는 경우 그 시행부서는 공정거래 관련 제보내용을 자율준수관리자에게 보고한다.

② 자율준수관리자는 제보자가 보복, 차별, 인사상의 불이익 등을 받지 않도록 철저히 보호하며, 자율준수관리자 및 주관부서는 제보 사실의 처리 목적 이외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비밀을 보장한다.

③ 자율준수관리자는 직원이 제보한 내용이 공정거래 관련 예방활동에 기여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 내규 제24조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제24조(우수직원 인센티브)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직원의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예방 및 법률 비용 감소에 기여한 직원에 대해 공정거래CP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자율준수관리자는 위 제1항에 따른 인센티브로 다음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격려금 등 포상
2. 자율준수관리자 상장 수여
3. 공정거래 관련 징계결과에 대한 경감조치

③ 기타 인센티브 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이 내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자율준수관리자가 정하고 주관부서가 시행한다.

[CP 운영내규 제22조, 제24조]

02 CP 확산에 기여한 담당자 사장 표창 수여

- 경기아트센터는 공정거래 CP 제도 도입 및 발전에 기여한 CP 담당자의 공로를 인정하여 2024년 적극행정 우수직원으로 선정하고 사장 표창을 수여하였습니다. (수여일: 2024. 12. 30.)

문서번호	협 조 문 (내선 235 / 주임 김 진)	결재 (발신)	주임	담당	담당		
기획조정팀-287 6		결재 (수신)	김 진	임미	임미	12/0	
시행일자	2024.12.09.		과장	담당			
수 신	수신자 참조		전 해	이 웅		12/11	
발 신	기획조정팀						
제 목	2024년 적극행정 우수부서 및 직원 선정을 위한 우수사례 제출 요청						

기획조정팀-2869(2024.12.06., 2024년 적극행정 우수부서 및 직원 선정 계획(안))호에 따라,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아래와 같이 제출 요청드립니다.

1. 2024년 적극행정 우수부서 및 직원 선정 계획 개요

가. 추진 목적

- 1) 소극행정 관행을 타파하고 적극행정 우수부서 및 우수직원에 대한 보상을 수여하여 적극적으로 일하는 문화 정착 및 직원사기 진작

나. 선발 규모

- 1) 적극행정 우수부서 : 2부서(적극행정 우수부서 1, 예산운용 우수부서 1)
 - 2) 적극행정 우수직원 : 1명
- ※ 읍·면·분부별 최소 1개 이상 우수사례 제출

다. 선발 기준

- 1) 적극성, 내·외부 고객채감도, 난이도, 확산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2) 예산운용 우수부서의 경우, 월별 예산 집행 자료를 기반으로 8월 집행계획 대비 11월 집행을 최우수부서 선정

라. 선발 대상

- 1) 제도혁신·관행타파 또는 적극적인 업무 추진으로 성과를 창출한 부서 또는 개인
- 2) 창의적·도전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성과 달성을 위해 노력한 부서 또는 개인
- 3) 업무효율 향상, 신기술 활용, 공공서비스 향상 등 새로운 정책을 발굴한 부서 또는 개인
- 4) 각종 공모사업 추진 및 경기도 위탁사업을 수행하여 성과를 창출한 부서 또는 개인
- 5) 핵심현안, 장기·집단민원 과제해결 등 고객이 공감할 수 있는 사례 우선 선발

[적극행정 우수직원 선정 협조문]



[적극행정 우수직원 표창 수여식]

II

E1. 프로그램 효과성평가와 개선

평가 지표	E1.1 CP 운영의 효과성평가(정기 감사)	항목별 국지가중치	0.084
		지표별 국지가중치	0.504
세부 측정 지표	E1.1.1 CP 운영에 대한 효과성평가 및 감사가 정기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 절차가 충실히 수립되어 있는가? E1.1.2 CP 운영에 대한 효과성평가 및 감사를 수행할 수 있는 인적자원의 자격 및 업무범위 관련 기준이 있는가?(예: 선정 기준, 이해상충 등, 즉 자신의 업무를 스스로 감사하는 것은 안됨) E1.1.3 조직의 정기감사 계획에 해당 부문이 준수하여야 하는 공정거래 법규 및 필수 법규 및 관련 정책, 이전 정기감사 결과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되어 있는가? E1.1.4 정기감사의 수행 기록을 관리하고 있는가? [예: 계획서, 결과 보고서, 감사노트, 인터뷰 명단, 지적사항 등]		
지표 관리 목표	E1.1.1 CP 운영에 대한 효과성평가 및 정기 감사를 운영하고, 연 1회 이상 최고경영진에 대한 보고 절차를 수행한다. E1.1.2 CP 주관부서 담당자의 자격요건(전공, 관련업무 경험, 자격증 보유 등) 및 공정한 업무범위에 대한 기준을 수립하여 관리한다. E1.1.3 CP 운영 관련 감사 계획은 타 감사 사항과 구분하고, 공정거래 관련 법규, 이전 감사결과 등을 반영하여 수립한다. E1.1.4 CP 관련 정기감사의 수행 기록을 타 감사 기록과 구분하고, 계획부터 결과까지의 운영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주요 실적	24.01.22	불합리한 공정거래 제도 개선을 위한 2024년 감사계획 수립	
	25.01.22	효과성평가에 대한 기록 및 결과보고	

평가
지표

E1.1 CP 운영의 효과성평가(정기 감사)

세부
측정
지표

E1.1.1 CP 운영에 대한 효과성평가 및 감사가 정기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 절차가 충실히 수립되어 있는가?

01 정기적 시행을 위한 효과성평가 및 감사계획의 규정화

- 경기아트센터는 CP 운영내규 제25조제1항에 따라 공정거래 CP 운영에 대한 효과성평가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 점검하고 그 결과를 활용하여 개선 및 발전 방향을 도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또한, CP 운영내규 제25조제2항에 따라 효과성평가에 대한 평가항목을 지정하고 평가 데이터를 누적하여 지속적인 점검을 통한 정량적인 측정과 변화 추이 산출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25조(효과성 평가)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공정거래CP를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공정거래CP 운영에 대한 효과성 평가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 점검하고 그 결과를 활용하여 개선 및 발전방향을 도모한다.

② 효과성 평가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평가한다.

1. 공정거래CP에 대한 직원의 이해 및 인식 수준
2. 연간 공정거래CP 운영계획 대비 실제 시행 성과
3. 내부감시체계 운영성과
4. 공정거래CP 관련 교육성과
5. 공정거래 관련 법 위반 행위 발생 빈도 및 영향
6. 공정거래CP 운영에 대한 직원의 만족도
7. 공정거래CP 규정 및 자율준수편람 등 기준과 절차의 제·개정을 통한 제도개선 성과
8. 공정거래CP 관련 예산 및 인력의 적정성

③ 자율준수관리자는 효과성 평가의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CP 등급 평가를 신청하여 평가등급을 취득하거나 외부 전문가에게 효과성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CP 운영내규 제25조]

- 아울러, 「경기아트센터 내부감사 규정」 제15조에 따라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사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15조(감사계획의 수립) ① 감사실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월 이내에 아트센터의 운영방침을 반영한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감사실장이 제1항 연간 감사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자체감사를 시행하는 경우 별도의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감사실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의 감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④ 감사실장은 연간 감사계획에 의거 감사인의 자질 및 업무능률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직무연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경기아트센터 내부감사 규정 제15조]

평가
지표

E1.1 CP 운영의 효과성평가(정기 감사)

세부
측정
지표

E1.1.2 CP 운영에 대한 효과성평가 및 감사를 수행할 수 있는 인적자원의
자격 및 업무범위 관련 기준이 있는가?(예: 선정 기준, 이해상충
등, 즉 자신의 업무를 스스로 감사하는 것은 안됨)

01 독립성 저해 방지 및 감사인의 자격 제한

- 경기아트센터는 CP 운영내규 제10조, 「경기아트센터 내부감사 규정」 제7조에 따라 독립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있는 경우 해당 업무를 직접 담당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또한, 경기아트센터 「경기아트센터 내부감사 규정」 제10조에 따라 감사인의 자격을 다음과 같이 제한하고 있습니다.

감사인의 자격요건

- 1 감사 수행에 필요한 자격증 또는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을 가진 자
- 2 감사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이 있고 근무성적이 양호한 자
- 3 기타 사장이 감사담당 직원으로 적당하고 인정하는 자

※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 자는 감사인이 될 수 없음

- 감봉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근무성적이 불량한 자
- 수습 또는 기간제로 임용중인 자
- 성 비위 전력에 있거나 금품수수·공금횡령 등 부패행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제10조(신분보장 및 독립성) ① 아트센터는 공정거래CP 업무수행의 객관성, 독립성 확보를 위해 자율준수관리자 및 주관부서에 인사상의 불이익을 부과하여서는 안 된다.

② 자율준수관리자는 공정거래CP 운영에 독립적이며,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의 위험성이 있는 업무를 직접 담당하여서는 안 된다.

[CP 운영내규 제10조]

제7조(감사의 독립원칙) ① 감사실은 사장의 지시사항을 제외하고 아트센터의 집행기관과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② 감사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독립성 저해요인이 있는 경우 당해 감사에 관여할 수 없다.

1. 감사인이 감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혈연 등 개인적인 연고나 경제적 이해관계로 인해 감사계획, 감사실시 및 감사결과의 처리 과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감사인이 감사대상 업무의 수행이나 의사결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③ 감사인이 감사의 독립성이나 감사활동의 공정한 수행을 방해하는 청탁이나 압력 등이 있는 경우 감사실장은 사장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한 후, 사장 지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감사인의 자격) ① 감사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자로서 보하여야 한다.

1. 감사 수행에 필요한 자격증 또는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을 가진 자
2. 감사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이 있고 근무성적이 양호한 자
3. 기타 사장이 감사담당 직원으로서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감사인이 될 수 없다.

1. 감봉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근무성적이 불량한 자
3. 수습 또는 기간제로 임용중인 자
4. 성 비위 전력이 있거나 금품수수·공금횡령 등 부패행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경기아트센터 내부감사 규정 제7조, 제9조]

평가
지표

E1.1 CP 운영의 효과성평가(정기 감사)

세부
측정
지표

E1.1.3 조직의 정기감사 계획에 해당 부문이 준수하여야 하는 공정거래 법규 및 필수 법규 및 관련 정책, 이전 정기감사 결과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되어 있는가?

01 불합리한 공정거래 개선을 위한 청렴시민감사관 시행

- 경기아트센터는 2024년 감사계획에 불합리한 공정거래 제도 개선 및 관행, 절차 등을 발굴하고 개선, 시정하기 위한 청렴시민감사관 제도를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책번호	감사항-144	구분	내부
유효일자	2024.01.22.	구분	외부
공정일자	2024.01.22.	구분	내부
공정구분	내부	구분	외부
생존기간	3년	구분	내부

2024년 감사 기본계획(안)

감 사 실

1 감사업무 체계 확립 및 감사인 전문성 강화

- (체계 확립) 예찰 · 컨설팅 · 모니터링(스크린) 기능 강화
 - '사전예방' 활동 강화
 - 연간감사계획 및 감사 가이드라인 사전 홍보, 주요 감사 포인트에 대한 셀프 체크리스트 제작 및 배포
 - 계약실무 등 업무 분야별 매뉴얼 리플렛 제작 및 홍보
 - 업무 효율성 제고
 - 일상감사 지침 및 사무위임전결내규 등 행정업무 프로세스 정비
 - 내부 공유 및 이행현황 점검 등 환류 활동 강화
- ⇒ 예찰, 컨설팅, 모니터링 등을 통해 [감사 적발 사전예방]
- (전문성 강화) 감사 분야별 세부 분임 명확화 및 직무교육 강화
 - 감사실 내 분야별 분임 시행
 - 계약감사(입찰, 수의, 공사, 용역, 구매 등), 직무감찰(경영지원, 재무, 예결산, 공연, 대외사업 등) 전문분야 설정 및 세부 분임
 - 개인별 맞춤형 직무교육 및 자체 워크숍 기획
 - 담당 전문분야 법령·제 규정 스터디 및 맞춤형 직무교육 선행
- ⇒ 내부감사 전문성 강화로 [감사 신뢰도 및 수용도 제고]
- 반부패감사혁신회의체 및 청렴시민감사관 운영
 - (분야) 청렴도평가 결과 연계 기관 부패 취약분야, 사회적 이슈 등
 - (반부패감사혁신회의체) 기관장 주도 반부패·청렴경영 계획 도출
 - 연내 총 2회 실시 예정(1차 회의_3월, 2차 회의_8월 예정)
 - (청렴시민감사관) 불합리한 제도·관행·절차 발굴 및 개선·시정 권고
 - 연내 총 3회 소집 예정(1차_4월, 2차_7월, 3차_9월 예정)

- 4 -

[2024년 경기아트센터 감사계획]

평가
지표

E1.1 CP 운영의 효과성평가(정기 감사)

세부
측정
지표

E1.1.4 정기감사의 수행 기록을 관리하고 있는가? [예: 계획서, 결과 보고서, 감사노트, 인터뷰 명단, 지적사항 등]

01 효과성평가에 대한 기록 및 결과보고

- 경기아트센터는 부서별 효과성평가에 대한 기록을 별도로 보관하고 조사결과 및 차년도 개선과제를 도출하여 최고경영자에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경기아트센터
Gyeonggi Arts Center

목적번호	세무회계영-60
목적일자	2025.01.30
결과일자	2025.01.31
결과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대리	이현	2025.01.22
담당	홍다	2025.01.22

2024년 경기아트센터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운영 결과보고

재무회계팀

B CP 효과성평가

- 연간 공정거래CP 운영에 대한 부서별 설문조사를 시행하여 전직원와 의견 청취를 통해 공정거래 CP 제도 및 운영에 대한 참견제 발진상황 모색

연번	설문지	응답률수	응답방법	참여부서
1	공정거래 CP제도에 대한 인지 정도	3.6		
2	아트센터의 공정거래 위한 문화형성 정도	2.2	5점척도 (1: 불응)	17/17 (100%)
3	공정거래CP 교육의 만족도 정도	3.9	5점척도 (1: 불응)	
4	공정거래CP 제도 운영에 대한 만족도 정도	4.1		
5	공정거래CP 운영 관련 개선사항 또는 바라는 점	-	사실식	?

- (리스크 진단) 부서별 공정거래 리스크 진단을 자율적으로 실시하여 기존에 발생할 수 있는 공정거래 리스크를 사전에 파악하고 리스크 정도에 따른 개선방향 모색

연번	부서명	주요업무	공정거래 리스크	가능성	심각도	종합
1			수년간 누적되어 있음에 따라 1개 업체와의 수의계약	하	하	하
2			불공정 수의계약	하	하	하
3			부당한 조건 검토	중	중	중
4			위탁중역사의 역량 및 관리 등에 따른 선택 불명	하	하	하
5			계약업체의 부당한 대금관리 및 기술 유출	하	하	하
6			독점행위	하	하	하
7			대금 정보 제공시, 정보 불공정으로 인한 청산상	하	중	중
8			무지보수 비불형성, 불리한 계약조건 부여	하	상	상
9			불공정 수의계약	하	하	하
10			독점	하	하	하
11			수의계약에 해당하지 않는 단체 구매에 참여 의무	하	상	상
12			계약대금의 지급 내역보다 불리하게 적용되지 않도록 관리	하	상	상
13			회사 규정에 따라 3회 이상 계약금지	하	하	하
14			불공정 계약제정	하	하	하
15			독점	하	하	하
16			공인단체 선정일시 및 운용업체 선정일정	중	중	중
17			불공정 계약제정	하	하	하

[2024년 경기아트센터 CP 운영결과]

II

E1. 프로그램 효과성평가와 개선

평가 지표	E1.2 프로그램의 지속적 개선 및 경영 에의 반영	항목별 국지가중치	0.084
		지표별 국지가중치	0.496
세부 측정 지표	E1.2.1 CP의 효과성에 대한 평가 및 감사를 충실히 시행(문제 및 원인 분석 등 포함)하였는가? E1.2.2 CP 운영에 대한 효과성평가 및 감사를 통해 발견된 문제점을 시정 조치(제도개선, 인사조치 등) 하였는가? E1.2.3 최고경영진(최고경영자나 임원진 회의)에 CP 운영 관련 효과성 평가 및 감사 결과(시정조치를 포함한다)를 보고하였고, 그 내용이 CP 운영 관련 경영에 충실히 반영되었는가?		
지표 관리 목표	E1.2.1 CP 운영에 대한 효과성평가 또는 정기감사를 연 1회 이상 시행 하며, 점검결과에 따른 원인분석을 통해 개선안을 도출한다. E1.2.2 CP 운영에 대한 효과성평가 및 정기감사를 연 1회 이상 시행 하며, 발견된 문제점에 대한 제도개선 및 후속조치를 실시한다. E1.2.3 CP 효과성평가 및 감사 결과를 최고경영진에게 보고하며, 개선 요구사항 등을 CP 운영에 충실히 반영한다.		
주요 실적	24.12.20 CP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전부서 효과성평가 시행		
	25.01.22 2024년 공정거래 CP 운영 결과보고		

평가
지표

E1.2 프로그램의 지속적 개선 및 경영에의 반영

세부
측정
지표

E.1.2.1 CP의 효과성에 대한 평가 및 감사를 충실히 시행(문제 및 원인분석 등 포함)하였는가?

01 CP 도입 및 운영 개선을 위한 효과성평가 시행

○ 경기아트센터는 기관의 CP 도입 및 운영에 관한 효과성평가를 6항목으로 구분하여 시행하고 점진적 개선방향을 모색하였습니다.

○ 효과성평가 설문지

설문지		설문방법
1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제도에 대한 인지 정도	5점척도
2	현재 아트센터 내 공정거래 관련 위반 행위의 발생 정도	5점척도
3	2024년 공정거래 CP 교육의 만족도 정도	5점척도
4	공정거래 CP의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만족도 정도	5점척도
5	위 설문 또는 공정거래 CP 운영 관련 개선사항	서술식
6	부서별 위험평가(공정거래 리스크진단)	별도양식

재단법인 경기아트센터

수신처: 내부결재
(과목)

제목: 2024년 경기아트센터 공정거래CP 효과성평가 시행계획(안)

1. 배경근거

가. 「공정거래법」 제104조 제1항 제1호(이하 "법"이라 함)에 의거하여, 제105조 제1항 제1호(이하 "CP"라 함)에 따라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도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나. 공정거래법 제104조 제1항 제1호(이하 "법"이라 함)에 의거하여, 제105조 제1항 제1호(이하 "CP"라 함)에 따라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도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2. 시행계획

가. 추진목적: 본 센터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도입을 위한 효과성평가 실시를 통한 CP 운영 개선 및 CP 제도에 대한 인지도 제고

나. 추진일정: 2024. 12. 1. (목)부터 12월 31일까지

다. 추진방법: 설문조사(안) "설문지"를 배포하여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CP 운영 개선 방안 도출

3. 설문지

항목	내용	평가방법	비고
1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제도에 대한 인지 정도	5점척도	-
2	현재 아트센터 내 공정거래 관련 위반 행위의 발생 정도	5점척도	-
3	2024년 공정거래 CP 교육의 만족도 정도	5점척도	-
4	공정거래 CP의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만족도 정도	5점척도	-
5	위 설문 또는 공정거래 CP 운영 관련 개선사항	서술식	-
6	부서별 공정거래 리스크 진단	별도양식	-

붙임: 1. 설문지, 2024년 공정거래CP 효과성평가 1부, 2. 2024년 경기아트센터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운영계획(안) 1부, 3.

과장: [인] 부장: [인] 팀장: [인]

2024. 11. 20. 2024. 11. 20. 2024. 11. 20.

과장: [인] 부장: [인] 팀장: [인]

2024. 11. 20. 2024. 11. 20. 2024. 11. 20.

협조문

수신처: 내부결재
(과목)

제목: 2024년 경기아트센터 공정거래CP 효과성평가 시행계획(안)

1. 배경근거

가. 「공정거래법」 제104조 제1항 제1호(이하 "법"이라 함)에 의거하여, 제105조 제1항 제1호(이하 "CP"라 함)에 따라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도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나. 공정거래법 제104조 제1항 제1호(이하 "법"이라 함)에 의거하여, 제105조 제1항 제1호(이하 "CP"라 함)에 따라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도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2. 시행계획

가. 추진목적: 본 센터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도입을 위한 효과성평가 실시를 통한 CP 운영 개선 및 CP 제도에 대한 인지도 제고

나. 추진일정: 2024. 12. 1. (목)부터 12월 31일까지

다. 추진방법: 설문조사(안) "설문지"를 배포하여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CP 운영 개선 방안 도출

3. 설문지

항목	내용	평가방법	비고
1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제도에 대한 인지 정도	5점척도	-
2	현재 아트센터 내 공정거래 관련 위반 행위의 발생 정도	5점척도	-
3	2024년 공정거래 CP 교육의 만족도 정도	5점척도	-
4	공정거래 CP의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만족도 정도	5점척도	-
5	위 설문 또는 공정거래 CP 운영 관련 개선사항	서술식	-
6	부서별 공정거래 리스크 진단	별도양식	-

붙임: 1. 설문지, 2024년 공정거래CP 효과성평가 1부, 2. 2024년 경기아트센터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운영계획(안) 1부, 3.

과장: [인] 부장: [인] 팀장: [인]

2024. 11. 20. 2024. 11. 20. 2024. 11. 20.

과장: [인] 부장: [인] 팀장: [인]

2024. 11. 20. 2024. 11. 20. 2024. 11. 20.

[2024년 효과성평가 시행계획]

[협조문 "효과성평가 참여 요청"]

평가
지표

E1.2 프로그램의 지속적 개선 및 경영에의 반영

세부
측정
지표

E1.2.2 CP 운영에 대한 효과성평가 및 감사를 통해 발견된 문제점을 시정 조치(제도개선, 인사조치 등) 하였는가?

01 효과성평가에 따른 차년도 개선과제 수립

- 경기아트센터는 2024년에 효과성평가를 처음으로 시행하여 부서별 의견청취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에는 조사결과에 따른 개선과제를 도출하여 문제점을 지속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⑧ CP 효과성평가

○ 연간 공정거래CP 운영에 대한 부서별 설문조사를 시행하여 전직원의 의견 청취를

통해 공정거래 CP 제도 및 운영에 대한 점진적 발전방향 모색 연도

연번	설문지	측정점수	측정방법	참여부서
1	공정거래 CP제도에 대한 인지 정도	3.6	5점척도 (5 높음) (1 낮음)	17/17 (100%)
2	아트센터의 공정거래 위반 행위발생 정도	2.2		
3	공정거래CP 교육의 만족도 정도	3.9		
4	공정거래CP 제도 운영에 대한 만족도 정도	4.1		
5	공정거래CP 운영 관련 개선사항 또는 바라는 점	-	서술식	7
적용 내용	① 부서별 공정거래 공정거래 세부 실천방안을 마련하여 교육 및 홍보 활동에 반영			
	② 공정거래CP 제도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필요			
	③ 공정거래CP 관련자료와 교육에 대해 지속적 검토 및 업데이트 예정			
	④ 지속적, 체계적 교육 필요			
	⑤ 계약서 공정성을 유지하여 신뢰 강화 필요			
	⑥ 공정거래는 공공성을 중대하는 기반으로 늘 긴장을 통한 접근 필요			
	⑦ CP명확화를 위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운영 교육 및 모니터링 실시 예정			

○ (리스크 진단) 부서별 공정거래 리스크 진단을 자체적으로 실시하여 기관에 발생할

수 있는 공정거래 리스크를 사전에 파악하고 리스크 정도에 따른 개선방향 모색

연번	부서명	주요업무	공정거래 리스크	가능성	심각도	종합
1			수년간 누적 데이터 필요에 따른 5개 업체와의 수의계약	하	하	하
2			불공정 수의계약	하	하	하
3			부당한 조건 강요	중	중	중
4			위탁용역사의 역량 및 권의 등에 따른 실패 발생	하	하	하
5			계약업체의 부당한 대금관리 및 기술 유용	하	하	하
6			독점행위	하	하	하
7			대금 정보 제공시, 정보 불균형으로 인한 형평성	하	중	중
8			유지보수 비용절감, 불리한 계약조건 부여	하	상	상
9			불공정 수의계약	하	하	하
10			독점	하	하	하
11			수의계약에 해당하지 않는 단체(공연예술 업체 이외유)	하	상	상
12			개발업장은 하한 내용보다 불리하게 적용되지 않도록 관리	하	상	상
13			회사 규정에 따라 3회 이상 계약금지	하	하	하
14			불공정 계약재결	하	하	하
15			독점	하	하	하
16			공연단체 선정심사 및 공동업체 선정입찰	중	중	중
17			불공정 계약재결	하	하	하

[2024년 효과성평가 설문결과]

02 인권경영 개선과제 지속적 관리 시행

- 경기아트센터 공정거래를 위한 인권경영의 개선과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근로자 및 협력사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서번호	협조문		
2024-008	(내선 43) / (외선 9 14)		
시행일자	2024.11.12.	주요	비고
수신	수신과	내선	외선
발신	2024.11.12.	내선	외선
제목	2024년 인권경영평가보고서 개선 과제 관리카드 결산 및 중점자료 제출		

1. 결산 근거

가. 감사원(2024.1.16. 2023년 결산대상인 인권경영평가 연구용역 결과 보고)

나. 감사원(2024.8.27. 2023년 인권경영평가보고서 개선 과제 목록 및 관리카드 제출 요청)

2. 2023년 인권경영평가보고서 개선 과제 관리카드 결산 및 중점자료 제출을 위해 함의 요청합니다.

가. 개선과제: 3개 분야 5개 과제(담당부서: 행정 부서 참조)

나. 제출기한: 2024. 11. 19 (화) 18시까지

다. 제출방법: 관리카드 및 중점자료 제출문 제출(별첨/본부담 과제)

라. 기타사항

1) 서식 양식: 우측 참조

2) 미흡한 경우: 진행 중인 사항까지도, 미흡한 사항에 대한 중점자료 제출

붙임: 2023년 인권경영평가 개선과제 관리카드 3부, 1부.

감사실장

주인관: 인사팀장, 법무팀장, 기획팀장, 운영팀장

2023년 인권경영평가 개선과제 관리카드			
항목	지점/사업장/사업장	관리카드 번호	관리카드
개선과제			
1. 협력사에 대한 인권경영을 위한 개선과제			
2. 협력사에 대한 인권경영을 위한 개선과제			
3. 협력사에 대한 인권경영을 위한 개선과제			
4. 협력사에 대한 인권경영을 위한 개선과제			
5. 협력사에 대한 인권경영을 위한 개선과제			
6. 협력사에 대한 인권경영을 위한 개선과제			
7. 협력사에 대한 인권경영을 위한 개선과제			
8. 협력사에 대한 인권경영을 위한 개선과제			
9. 협력사에 대한 인권경영을 위한 개선과제			
10. 협력사에 대한 인권경영을 위한 개선과제			
11. 협력사에 대한 인권경영을 위한 개선과제			
12. 협력사에 대한 인권경영을 위한 개선과제			
13. 협력사에 대한 인권경영을 위한 개선과제			
14. 협력사에 대한 인권경영을 위한 개선과제			
15. 협력사에 대한 인권경영을 위한 개선과제			
16. 협력사에 대한 인권경영을 위한 개선과제			
17. 협력사에 대한 인권경영을 위한 개선과제			
18. 협력사에 대한 인권경영을 위한 개선과제			
19. 협력사에 대한 인권경영을 위한 개선과제			
20. 협력사에 대한 인권경영을 위한 개선과제			
21. 협력사에 대한 인권경영을 위한 개선과제			
22. 협력사에 대한 인권경영을 위한 개선과제			
23. 협력사에 대한 인권경영을 위한 개선과제			
24. 협력사에 대한 인권경영을 위한 개선과제			
25. 협력사에 대한 인권경영을 위한 개선과제			
26. 협력사에 대한 인권경영을 위한 개선과제			
27. 협력사에 대한 인권경영을 위한 개선과제			
28. 협력사에 대한 인권경영을 위한 개선과제			
29. 협력사에 대한 인권경영을 위한 개선과제			
30. 협력사에 대한 인권경영을 위한 개선과제			
31. 협력사에 대한 인권경영을 위한 개선과제			
32. 협력사에 대한 인권경영을 위한 개선과제			
33. 협력사에 대한 인권경영을 위한 개선과제			
34. 협력사에 대한 인권경영을 위한 개선과제			
35. 협력사에 대한 인권경영을 위한 개선과제			
36. 협력사에 대한 인권경영을 위한 개선과제			
37. 협력사에 대한 인권경영을 위한 개선과제			
38. 협력사에 대한 인권경영을 위한 개선과제			
39. 협력사에 대한 인권경영을 위한 개선과제			
40. 협력사에 대한 인권경영을 위한 개선과제			
41. 협력사에 대한 인권경영을 위한 개선과제			
42. 협력사에 대한 인권경영을 위한 개선과제			
43. 협력사에 대한 인권경영을 위한 개선과제			
44. 협력사에 대한 인권경영을 위한 개선과제			
45. 협력사에 대한 인권경영을 위한 개선과제			
46. 협력사에 대한 인권경영을 위한 개선과제			
47. 협력사에 대한 인권경영을 위한 개선과제			
48. 협력사에 대한 인권경영을 위한 개선과제			
49. 협력사에 대한 인권경영을 위한 개선과제			
50. 협력사에 대한 인권경영을 위한 개선과제			
51. 협력사에 대한 인권경영을 위한 개선과제			
52. 협력사에 대한 인권경영을 위한 개선과제			
53. 협력사에 대한 인권경영을 위한 개선과제			
54. 협력사에 대한 인권경영을 위한 개선과제			
55. 협력사에 대한 인권경영을 위한 개선과제			
56. 협력사에 대한 인권경영을 위한 개선과제			
57. 협력사에 대한 인권경영을 위한 개선과제			
58. 협력사에 대한 인권경영을 위한 개선과제			
59. 협력사에 대한 인권경영을 위한 개선과제			
60. 협력사에 대한 인권경영을 위한 개선과제			
61. 협력사에 대한 인권경영을 위한 개선과제			
62. 협력사에 대한 인권경영을 위한 개선과제			
63. 협력사에 대한 인권경영을 위한 개선과제			
64. 협력사에 대한 인권경영을 위한 개선과제			
65. 협력사에 대한 인권경영을 위한 개선과제			
66. 협력사에 대한 인권경영을 위한 개선과제			
67. 협력사에 대한 인권경영을 위한 개선과제			
68. 협력사에 대한 인권경영을 위한 개선과제			
69. 협력사에 대한 인권경영을 위한 개선과제			
70. 협력사에 대한 인권경영을 위한 개선과제			
71. 협력사에 대한 인권경영을 위한 개선과제			
72. 협력사에 대한 인권경영을 위한 개선과제			
73. 협력사에 대한 인권경영을 위한 개선과제			
74. 협력사에 대한 인권경영을 위한 개선과제			
75. 협력사에 대한 인권경영을 위한 개선과제			
76. 협력사에 대한 인권경영을 위한 개선과제			
77. 협력사에 대한 인권경영을 위한 개선과제			
78. 협력사에 대한 인권경영을 위한 개선과제			
79. 협력사에 대한 인권경영을 위한 개선과제			
80. 협력사에 대한 인권경영을 위한 개선과제			
81. 협력사에 대한 인권경영을 위한 개선과제			
82. 협력사에 대한 인권경영을 위한 개선과제			
83. 협력사에 대한 인권경영을 위한 개선과제			
84. 협력사에 대한 인권경영을 위한 개선과제			
85. 협력사에 대한 인권경영을 위한 개선과제			
86. 협력사에 대한 인권경영을 위한 개선과제			
87. 협력사에 대한 인권경영을 위한 개선과제			
88. 협력사에 대한 인권경영을 위한 개선과제			
89. 협력사에 대한 인권경영을 위한 개선과제			
90. 협력사에 대한 인권경영을 위한 개선과제			
91. 협력사에 대한 인권경영을 위한 개선과제			
92. 협력사에 대한 인권경영을 위한 개선과제			
93. 협력사에 대한 인권경영을 위한 개선과제			
94. 협력사에 대한 인권경영을 위한 개선과제			
95. 협력사에 대한 인권경영을 위한 개선과제			
96. 협력사에 대한 인권경영을 위한 개선과제			
97. 협력사에 대한 인권경영을 위한 개선과제			
98. 협력사에 대한 인권경영을 위한 개선과제			
99. 협력사에 대한 인권경영을 위한 개선과제			
100. 협력사에 대한 인권경영을 위한 개선과제			

[인권경영 개선과제 관리]

- 아울러, 인권경영 개선과제를 2024년부터 실질적으로 반영하여 계약 필수 서류에 “인권존중의무 이행서약서”를 추가함으로써 협력사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권존중의무 이행서약서	
계약명	0
당사는 「기업 활동과 관련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보호」가 인권경영의 중요한 요소임을 깊이 인식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고 보호하는 경영활동에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국가권에서 발하는 위 계약 함의에 있어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제1조(기본규칙)	중립성을 고수함에 있어 인종, 종교, 장애, 성별, 출신지,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습니다.
제2조(노동권준수)	근로자의 권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하고 존중하겠습니다.
제3조(강제노동금지)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도 이용하지 않습니다.
제4조(아동노동금지)	15세 이하 아동의 고용과 노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합법적으로 연소자에게 노동시킬 경우에는 교육기회의 보장과 안전에 대한 배려를 하겠습니다.
제5조(안전보건)	근로자에게 안전한 작업환경을 제공하고 위험한 작업환경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안전장구와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제6조(사고조사)	직업상에서 발생한 사고나 질병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제7조(지역주민보호)	기업활동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주민의 생명권, 거주자의 자유, 안전에 대한 권리, 재산소유권 등을 존중하고 보호하겠습니다.
제8조(환경보호)	신중한 환경훼손과 환경제약을 방지, 완화, 통제할 수 있도록 적절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제9조(이해관계자보호)	제품과 서비스 제공함에 있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보건과 안전에 위해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10조(합법 및 사정조치 시 협조)	기관에서 당사의 인권보호 준수 여부를 점검할 때 적극 협조하고, 점검결과 인권침해 사실이 드러나거나 인권침해로 인하여 공인과 업무수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 관련 사항조치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위 서약은 상호신임을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켜겠습니다.	
1900년 1월 0일	
서약자	업체명 : 0 대표자 : 0 (인)

경기아트센터 귀하

협력회사 인권존중 자율점검표		
재단법인 경기아트센터(이하 아트센터)는 아트센터의 지속가능경영에 있어 사회적 책임경영의 원칙과 이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트센터는 협력회사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존중하며, 협력회사가 아트센터의 사회적 책임경영 원칙과 이념에 부합할 수 있도록 인권준수의무 이행서약서를 성실히 이행하고 준수사항을 검토하겠습니다.		
본 점검표는 각 협력회사가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적절히 준수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진단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각 항목의 준수 여부에 대해서 예, 아니오로 표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항목	주요 내용	준수여부
자별금지	우리회사는 중립성을 고수함에 있어, 인종, 종교, 장애, 성별, 출신지,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습니다.	[] 예 [] 아니오
노동권 존중	우리회사는 근로자의 권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하고 존중합니다.	[] 예 [] 아니오
강제노동금지	우리회사는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도 이용하지 않습니다.	[] 예 [] 아니오
아동노동금지	우리회사는 관련 적용 법규에 따라 15세 미만인 자의 고용과 노동을 금지합니다.	[] 예 [] 아니오
안전보건	우리회사는 근로자에게 안전한 작업환경을 제공하고 위험한 작업환경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안전장구 제공 및 교육을 실시합니다.	[] 예 [] 아니오
사고조사	우리회사는 산업재해 및 질병을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제도와 절차를 갖췄고 있습니다.	[] 예 [] 아니오
환경보호	우리회사는 환경관련 적용법규를 성실히 준수합니다.	[] 예 [] 아니오
1900년 1월 0일		
서약자	업체명 : 0 대표자 : 0 (인)	

경기아트센터 귀하

[인권존중의무 이행서약서]

평가
지표

E1.2 프로그램의 지속적 개선 및 경영에의 반영

세부
측정
지표

E1.2.3 최고경영진(최고경영자나 임원진 회의)에 CP 운영 관련 효과성 평가 및 감사 결과(시정조치를 포함한대)를 보고하였고, 그 내용이 CP 운영 관련 경영에 충실히 반영되었는가?

01 기관 실정을 반영한 내부감시체계 재정립

- 경기아트센터는 2024년에 CP 8대과제를 처음으로 모두 도입하고 효과성평가를 시행하면서 그 결과를 사장에게 최종보고 하였습니다.
- 2024년에는 우수기관의 CP 제도를 벤치마킹하여 빠른 도입이 가능하였지만, 반대로 기관 실정에 맞지 않아 실질적 운영이 어려운 부분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에는 부서별 전문역량, 인적 자원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CP 제도가 기관 차원의 하나의 유기적인 시스템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내부감시 체계를 재정립하고자 합니다.
- CP 제도 도입현황

2023년	2024년	2025년
8대과제 부분완료	8대과제 완료	CP 제도 고도화
① 운영지침 제정 ② CP 도입 선포식 ③ 전직원 교육 실시	① 운영내규 제정 ② 자율준수 선언식 ③ 자율준수관리자 임명 ④ 자율준수편람 제작 ⑤ 집중교육 실시 ⑥ 내부감시체계 구축 - 위험평가 - 사전업무협의제도 - 직접보고체계 - 내부고발시스템 ⑦ 제재 규정 마련 ⑧ 효과성평가 시행	① 운영내규 개정 - 등급평가 반영 ② 내부감시체계 재정립 - 전문역량 - 인적자원 - 업무효율성 ③ 위험평가 개선 - 개선과제 도출·이행 ④ 효과성평가 강화 - 개선과제 도출·이행 ⑤ 등급평가 추진

III

가점사항

01 2025년 CP등급평가 설명회 참석 [25. 2]

- 경기아트센터는 2025년 CP등급평가 최초 도입을 위해 설명회에 참석하여 2025년 CP 등급평가 주요일정 및 변경사항, 질의응답 시간 등을 가졌습니다.
- 행사일시: 2025. 2. 26.(수) 14:30
- 행사장소: LW 컨벤션 크리스탈홀, 다이아몬드홀
- 행사내용: 2025년 CP 등급평가 주요일정 및 변경사항 안내, 질의응답 등
- 참 석 자: 문O한 (CP 담당자)



[2025년 CP등급평가 설명회 참석사진]